

Territory and Seas

# 영토해양연구

Vol. 23 Summer 20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차례

## 특집주제

박한민 |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7

송취영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51

## 연구논문

유미림 | '리양쿠르 록스' 명칭의 전승과 잔존의 역사적 배경 87

홍성근 |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129

## 자료소개

정영미 | 「秘 다케시마(竹島)」와 1906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 169

조규현 | Archives New Zealand와 ANZUS 조약을 중심으로 본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187

## 서평

이 훈 | 『동해바다 독도 툴아읽기』:

심정보 저, 2021, 민속원 211

석주희 | 『제국의 섬-류큐·센카쿠에 대한 식민지주의와의 투쟁』:

松島泰勝, 2020, 『帝国の島-琉球・尖閣に対する植民地主義と闘う』,

明石書店 229



## 영토·해양 일지

엄태일 | 영토·해양 일지 250

##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칙 258

발행 및 심사규정 260

투고 요령 264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268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280





# 특집주제



- **박한민** |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 **송취영**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 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들어가며
- II. 1870년대 초중반 러시아·조선 관련 일본인들의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 III.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의 블라디보스토크 부임과 울릉도 개척 청원
- IV.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도한과 나가사키 현령의 울릉도 개척 청원서 입수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1870년대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1874년 5월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가 이끄는 일본 병력은, 타이완(臺灣)에 표류한 류큐인(琉球人)들이 섬의 현지인들에게 살해당했던 사건을 구실로 삼아 나가사키(長崎)에서 떠나 타이완을 침공하였다. 청국과 일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권 사절을 파견하고 교섭을 벌여 이해 10월 31일 청국이 류큐 조난민에 대한 무휼금(撫恤金) 10만 냥을 배상할 것과 일본 병력의 타이완 철수 등을 합의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류큐에 대한 권리가 자국에 있음을 확인한 일본은 1875년 7월 내무대승(內務大丞)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를 파견하여 류큐 왕국과 청국의 조공책봉 관계를 단절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sup>1</sup> 1875년 7월 5일에 러시아와 일본은 국경을 확정하는 치시마-사할린 교환조약(千島樺太交換條約)을 체결하였다. 소야 해협(宗谷海峽, 라페루즈 해협)을 경계로 하여 러시아는 사할린 전체, 일본은 치시마 섬 전부를 자국령으로 삼았다. 조약 부록으로 사할린과 치시마에 거주하고 있던 아이누족과 러시아인 등의 선주민들에게는 3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할 것을 강제하였다.<sup>2</sup> 이해 9월 20일에는 조선으로 파견된 운요호(雲揚號)가 조선 측을 도발하였다. 무단으로 영내에 진입한 선박을 목격한 조선 병력은 포격을 가하였다. 여기에 응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측은 3일에 걸쳐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를 공격하고 약탈한 후 나가사키로 회항하였다. 이른바 운요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해 11월부터 1877년 1월 사이에는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의 일본령 편입을 위한 내무성·외무성·대장성·해군성 소속 관리단 파

\* 논문 투고일: 2022.4.15, 심사 완료일: 2022.5.17, 게재 확정일: 2022.5.31.

\* 이 글은 2022년 2월 28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한 2022년 독도연구소 심포지엄 '발굴 자료로 탐색하는 독도 연구의 새 지평'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1 毛利敏彦, 1974, 『万邦對峙(1868-1876)』, 信夫清三郎 編, 『日本外交史』 1, 東京: 毎日新聞社, 94~96쪽; 安岡昭男, 2002, 『幕末維新の領土と外交』, 大阪: 清文堂出版, 188쪽.

2 大日方純夫, 2016, 『主權國家』成立の内と外』, 東京: 吉川弘文館, 44~47쪽.

견이 있었다. 그 후 섬 관리를 위해 제정한 규칙을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경(外務卿)이 구미 16개국 공사에 통지(1876년 10월 7일)한 다음 오가사와라 출장소를 현지에 설치하였다.<sup>3</sup> 1870년대에는 조선을 둘러싼 인접국인 청국과 일본, 러시아에서 자국의 국경과 관할 도서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분쟁과 교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정부 내에서 정한론 정변(征韓論政變, 1873)이 발생하였다. 야마구치(山口)와 규슈(九州) 지역 일대에서는 사족과 농민들이 잇달아 봉기하였다. 오키노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내무경(內務卿)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정부는 병력을 파견하여 내란을 진압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면서 식산흥업을 꾀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죽도(竹島) 혹은 ‘송도(松島)’로 일컬어지던 울릉도를 개척하겠다고 외무성(外務省), 도쿄부(東京府)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자들이 나타났다.<sup>4</sup>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지적조사를 실시하던 중 ‘죽도 외 일도’가 일본의 판도 내에 있는지를 내무성에 문의하였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태정관(太政官)은 ‘죽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이른바 ‘태정관지령’이다.<sup>5</sup> 여기서 언급된 ‘죽도 외 일도’는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에 문의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2000년대 이후로 밝혀지면서 두 섬이 울릉도와 독도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sup>6</sup>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반증하는 일본 측 핵심자료 가운데

3 歴史學研究會 編, 1997, 『日本史史料: 近代』, 東京: 岩波書店, 118~120쪽; 石原俊, 2007, 『近代日本と小笠原諸島』, 平凡社, 238~247쪽.

4 전근대 시기에 ‘죽도’ 혹은 ‘기죽도(磯竹島)’는 울릉도를 가리켰다. ‘태정관지령’이 나온 시점에도 ‘죽도’는 울릉도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1870년대에 제출된 청원서의 경우 울릉도를 ‘송도’로 지칭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 지역별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송도’, ‘죽도’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은 별도로 심층적인 검토와 추적이 필요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1876~1878년 사이 청원서와 공문서에 나타난 울릉도 표기 양상을 <표 1>로 정리하였다.

5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정관지령을 발굴하고 내용을 소개한 연구자는 교토대학의 호리 가즈오이다.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6 일본 측 연구자로는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죽도 외 일도’가 각각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이며, 이 두 섬이 일본의 판도 바깥에 있음을 정부의 공식문서에 표명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스기하

하나가 ‘태정관지령’이었던 만큼 이 지령을 내린 태정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7</sup>

‘태정관지령’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8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울릉도를 개척하겠다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자들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외무성 관원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편찬한 『竹島考證(죽도고증)』(1881)에 실렸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이 자료는 국내에서 일찍이 정영미가 자료를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소개하였다.<sup>8</sup>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죽도고증』을 활용하여 일본인들의 ‘송도’ 개척원 제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sup>9</sup> 이 자료집에 등장하는 인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사무관(貿易事務官)으로 재직한 외무성 관리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와 관련된 자료도 국내에 소개되었다.<sup>10</sup> 『죽도고증』과 세와키의 일지, ‘태정관지령’ 관련 자료는 1870년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적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물들이 남긴 자료를 새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마네현과 돗토리현(鳥取縣) 이외의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1870년

라 다카시(杉原隆)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가 ‘의도적’으로 섬 명칭의 혼란 등을 논이에 끌고 들어온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池内敏, 2012,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の解釈について,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7 국가기구로서 태정관의 성격과 이 기구가 내린 지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堀和生, 1987, 앞의 글; 유미림·박지영·심경민, 2014,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환, 2016, 「태정관과 ‘태정관지령’은 무엇인가?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 『獨島研究』 20; 이성환·송휘영·오카다 다카시, 2016, 「일본 태정관과 독도, 저성사; 최철영·유미림, 2018,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 - 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 논총』 63-4; 정태상, 2020, 「독도 문제의 진실」, 만권당, 73~112쪽; 신용하, 2020,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중」, 동북아역사재단, 40~51쪽.

8 정영미 편집 및 번역, 2006, 『독도자료집』 I·II,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9 『竹島考證』이 한국학계에 소개되기 이전,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가 남긴 「松島之議와 善隣始末」에 기초하여 세와키 히사토와 시모무라 린타로 등의 울릉도 개척 청원을 소개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연구가 1930년대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の発見とその領有」, 『靑丘學叢』 3;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유미림, 2015,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김수희, 2015,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獨島研究』 19.

10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저, 구양근 역, 1997,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대 당시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던 나가사키현(長崎縣) 같은 지역의 동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개항장 나가사키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선박이 왕래하던 지역으로 청국과 조선, 러시아의 물자, 사람, 정보가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기항지였던 나가사키에 주목하여 이 지역과 관련된 인물들이 남긴 문서를 검토한다. 주요 관련 자로는 세와키를 비롯하여 나가사키현령(長崎縣令) 기타시마 히데토모(北島秀朝),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조선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들 수 있다. 에노모토와 하나부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본공사관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샤를 달레의 『朝鮮天主教會史(조선천주교회사)』를 『朝鮮事情(조선사정)』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에노모토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일본공사로 세와키의 무역사무관 부임에 관여하였고, 귀국 도중 세와키가 있던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였다. 『죽도고증』에도 ‘송도개척’ 논의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외무성 기록국장(記録局長) 서리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는 하나부사와 ‘외교관으로 한솔밥을 먹어 온 친구’였다.<sup>11</sup> 하나부사는 1877년 조선으로 부임할 때 나가사키에 들렀으며, 이때 기타시마 현령과 만났다. 조선에 건너간 후 하나부사는 반접관(伴接官) 홍우창(洪祐昌)과 대담하는 중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무역사무관이 러시아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러시아 동향을 조선 측에서 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12</sup> 그는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로 왕래하는 선박이 반드시 거치는 곳인 쓰시마(對馬島)와 ‘송도(松島)’로, 이곳은 당시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요충지란 점까지 상기시켰다.<sup>13</sup> 이처럼 여러 인물들이 나가사키와 울릉도 개척, 러

11 瀧井一博, 2016, 『渡邊洪基』,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61쪽.

12 1877년 12월 7일 伴接官 問答(開港一件5), 『明治十年花房代理公使使鮮日記』, 『日本外交文書』卷10, #132 附記1.

13 『復命概略別記第二: 公使入京駐留一件 甲號』,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卷2(Ref. B03030184900: 0403). 본문에서 다루었지만 여기서 하나부사가 거론한 ‘송도’는 동해상의 울릉도였다.

시아를 키워드로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만큼 각 인물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여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다룰 기타시마 나가사키현령의 울릉도 개척 문의와 구상안, 오쿠보 내무경의 회답 공문은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學) 도서관 소장 하나부사 가문(花房家) 문서에 들어 있다.<sup>14</sup> 일찍이 이 문서를 소개한 야스오카 아이오(安岡昭男)가 그의 책에서 건의서와 복명서류 목록의 일환으로 문건 제목만 제시한 적이 있다.<sup>15</sup> 최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된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화방공사조선관계기록)』에서 관련 문서의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한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sup>16</sup> 하지만 문건이 입수된 경위와 기재된 문서에 대한 기본서지,<sup>17</sup> 1870년대 울릉도 개척을 청원한 다른 기록과의 관련성, 그리고 1877년 발표된 ‘태정관지령’의 후속 조치로 어떠한 성격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본격적으로 다루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하나부사 문서에 수록된 나가사키현령의 울릉도 개척 문의와 내무경의 회신 공문을 1870년대에 나온 울릉도 관련 기록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 ‘태정관지령’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이 문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왔다. 하지만 ‘태정관지령’이 나온 이후, 실제로 메이지 정부에서 이 지령을 근거로 삼아 울릉도를 개척하려는 지방 관청의 청원이 있을 때 관련 근거로 거론한 사례를 찾는 방향으로도

14 국사편찬위원회는 「花房文書」와 더불어 「花房義質關係文書」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두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보하시 기요시도 「近代日鮮關係の研究」를 집필하면서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 하나부사 문서를 후손(花房孝太郞)에게 빌려서 연구에 활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룬 문건을 그의 저작물 내에서 소개한 흔적은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해 본 범위 안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15 安岡昭男, 1998, 「〈付〉建議意見復命書類・年表稿」,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57쪽.

16 김홍수, 2021, 「임오군란 전후 일본의 울릉도 침범」, 『한국학논집』, 83, 148~151쪽.

17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 1권에 수록된 문서는 옮겨 적은 정서본이라서 「花房文書」 5권과 「花房義質關係文書」 406-2(M/F 필 20) 수록 문서와 달리, 하나부사가 애초에 문건을 입수할 당시 어떠한 용지에 옮겨 적었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하나부사 문서에서 조선 관련 기사만 별도로 선별하여 옮겨 적은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이란 문서철을 제작하면서 같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입수 경위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부사가 남겨둔 문서 원본이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면 좀 더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19~20세기 산인(山陰) 지역의 어업 동향에 집중해 온 감이 있다. 하지만 청국과 조선의 개항장,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정기항로의 기착지로서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의 관계, 정기항로를 이용한 선박 왕복, 지역 신문에 주목해 본다면, 조선의 개항 이후 울릉도·독도 관련 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1870년대 초중반 러시아·조선 관련 일본인들의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 1. 외무성 관원 3명의 조선 파견과 조선 부속 울릉도·독도의 조사

1869년 12월 일본 정부는 조선의 내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외무성 관리 세 명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사이토 사카에(齋藤榮)였다. 이 가운데 구 막부의 신하로 나가사키에서 외국과의 무역사무를 맡아보며 통상에 익숙한 자는 사이토였다.<sup>18</sup> 조사 내역은 조선과 쓰시마의 관계, 조선과 청국의 번속(藩屬) 관계, 러시아와 조선의 경계, 사절 파견 시 군함 정박이 가능한 수도 근처의 항구, 조선과의 교역물품과 물가 등 열 가지 항목이었다. 이들은 이듬해 2월 22일 부산에 도착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한 후 4월에 귀국,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와 별책 「對州朝鮮交際取調書(다이슈 조선교제 조사서)」를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sup>19</sup>

보고서에는 감합인(勘合印)과 조공, 조선의 국체(國體), 조선 육해군 병력과 소지 무기의 현황, 무역 현황, 세견선(歲遣船) 폐지, 조량항의 규모와 일본인

18 金義煥, 1964, 『朝鮮對日交涉史研究』, 通文館, 77쪽.

19 佐田白茅 輯, 1875, 『交際』, 『朝鮮見聞錄』上, 東京: 玉山堂, 4쪽; 金義煥, 1964, 위의 책, 76~93쪽; 김흥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09쪽.

의 조선 내지여행 가능 여부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의 말미에 짚기는 하나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에 부속된 시말을 넣었다(「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죽도와 송도는 이웃하는 섬이라는 점, 울릉도의 생태와 관련하여 대나무와 갈대, 인삼 등이 자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은 원래 조사 항목에 없었으나 민부성(民部省)의 의뢰를 받아 추가한 것이다.<sup>20</sup> 외무성에서 파견되어 조선 내부를 정탐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던 관리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조선에 부속한 도서(島嶼)임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해 왔다. 이 문건은 『朝鮮事件(조선사건)』을 비롯하여 『朝鮮外交事務書(조선외교사무서)』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원문 탈초와 번역 작업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sup>21</sup>

보고서 뒤로 제주도의 형세, 상선과 어선 수, 가옥과 거주 인구수, 수출 물산 등을 조사한 내역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나오는 문건이 「竹島一則(죽도일칙)」이다.<sup>22</sup>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교호(亭保) 18~19년 혹은 그 이전의 일이라고 하면서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던 조선인과 호키노쿠니(伯耆國) 거주 일본인들이 서로 대치한 양상을 서술하였다.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화승총(大筒)을 쏘면서 접근하였고, 물으로 올라간 후에도 연달아 총을 쏘았다. 이 때문에 섬 안에 있던 조선인들이 여기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호키에서 출발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착할 무렵부터 총포를 쏘았다는 사실은 섬에 들어와 있던 조선인들이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상륙 과정에서 무력시위를 시도한 것도 조선인들의 울릉도 거주를 도향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염사(獵師)들이 “누구든지 우리나라 울릉도에

20 김흥수, 2009, 앞의 책, 209쪽.

21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朝鮮外交事務書』卷1(韓國日本問題研究會 編, 成進文化社, 1971), 479~510쪽. 원문 탈초와 번역, 해제는 재단에서 간행한 자료집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Ⅲ-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磯竹島覺書·公文錄·太政類典-」(김관원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을 참고하였다. 『朝鮮外交事務書』는 최근 부산사료총서 시리즈로 1권을 역주한 결과물이 나왔다(김종학·김흥수 번역, 2021, 『국역 조선사무서(1)』, 부산: 부산광역시).

22 「朝鮮物語ノ內 竹島一則」, 『朝鮮外交事務書』卷1, 549~552쪽.

와서 사냥하면 꾸짖을 것이다”라고 한 발언도 실려 있다.<sup>23</sup> 이를 통해서 섬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무단 침입으로부터 울릉도를 지켜 내려 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죽도를 조선에서는 울릉도(鬱陵島)라 부르고 본래부터 조선 내에 있다”라는 서술<sup>24</sup>과 더불어 쓰시마 번의 보고를 받은 에도 막부가 “그렇다면 죽도를 조선에 넘겨야 한다”고 한 회답<sup>25</sup>과 “그대로 마무리되었다”는 서술을 통해서도 일본 측이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세와키 히사토의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과 울릉도 관련 정보 수집

스오노쿠니(周防國, 현 아마구치현) 출신 세와키 히사토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재한 무역사무관이었다. 그의 개명 전 이름은 데쓰카 리쓰조(手塚律藏)였다.<sup>26</sup>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데라시마 무네노리에게 1872년에 보낸 서한에서는 세와키를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라자레프’항, 즉 영흥만 일대를 탐지해 온다면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전망하였다.<sup>27</sup>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선 북부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찍이 외무성에서 세와키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그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현지를 시찰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한 시기는 1875년 4월부터 6월 사이였다.<sup>28</sup> 이때 세와키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시찰한 일지 기록은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남아 있다. 국내에서는 구양근 교수가 일찍

23 「朝鮮物語ノ内 竹島一則」, 『朝鮮外交事務書』 卷1, 550쪽; 『국역 조선사무서(1)』, 231~232쪽.

24 「朝鮮物語ノ内 竹島一則」, 『朝鮮外交事務書』 卷1, 550쪽.

25 「朝鮮物語ノ内 竹島一則」, 『朝鮮外交事務書』 卷1, 552쪽; 『국역 조선사무서(1)』, 232쪽.

26 세와키 히사토의 이력과 생애 전반의 소개는 다음 연구를 참고, 구양근, 1997,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と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研究』 7, 125~128쪽.

27 1872년 花房義實 → 寺島宗則,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寺島宗則研究會 編, 1987, 東京: 示人社), 613쪽.

28 “浦潮斯德通信”, 『東京日日新聞』 1878년 12월 10일 2면.

이 이 자료를 번역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sup>29</sup>

세와키는 러시아로 파견되기 전부터 정세상 러시아가 조선을, 서구 각국이 청국을 취하려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지형과 인물, 물산 등을 정탐할 것과 해상으로 군함을 파견하여 수심과 암초 등을 파악해 둘 것을 건의하였다.<sup>30</sup> 청국과 조선은 일본의 이웃 국가로 이들 국가를 개항하는 일은 일본이 담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나라에 이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sup>31</sup> 세와키는 일본이 우위에 서서 주변국 개방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현지시찰을 해 볼 목적으로 도쿄를 출발,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다. 항해 도중 4월 19일 오후 세와키는 선상에서 ‘송도(松島)’, 즉 울릉도를 목격하면서 섬의 소속과 관련하여 사관 및 프랑스인과 간단하게 문답을 하였다.<sup>32</sup> 그가 남긴 기록에서 울릉도와 관련된 건문 내역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a. “송도는 조선에 가까운가, 일본에 가까운가?”라고 물었더니 조선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섬에 인가(人家)가 있는가?”라고 물으니 “인가는 없고 수목이 무성한 섬이므로 조선인이 때때로 와 수목을 베어 내어 배에 싣고 돌아간다”고 답했다. “이 섬에 금은 광산이 있는가?” 물어보니 그가 “아직 광산이 있다고 들은 적은 없지만 꽤나 큰 섬이니 반드시 있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sup>33</sup>

29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一」,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國領「ポシェット」へ派出一件』(JACAR Ref. B16080698700);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 저, 구양근 역, 1997, 『블라디보스토크 건문 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30 1875년 1월 15일 瀨脇壽人 → 寺島宗則,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 564쪽.

31 1875년 1월 28일 瀨脇壽人 → 寺島宗則,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 565쪽.

32 1875년 4월 19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一」(Ref. B16080698700: 0372).

33 1875년 5월 13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一」(Ref. B16080698700: 0422).

b. “죽도는 강원도 삼척부(三陟府)에 있으며, 이 섬 지역의 둘레는 천 리나 된다. 토지는 비옥하고 물산이 많다. 그러나 나라의 금도(禁島)였기 때문에 인민은 거주하고 있지 않다. 혹시 위반하여 거주하는 자가 있을까 우려하여 삼척영장(三陟營將)과 월송만호(月松萬戶, 원문 그대로)가 봄가을로 조사(摘奸)하고 있다. (조선에서-인용자) 몇 리 정도나 떨어져 있는지는 상세하지 않다.”<sup>34</sup>

c. 오전 10시 무렵부터 남쪽으로 작은 섬 하나가 나타났다. 선장에게 물어 보니 이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松島)였다. 아득히 13~14리(里)나 떨어져 있어 쌍안경으로 바라보니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짧은데 약간 커다란 하나의 섬이다. 점차 가까워져 이곳을 보니 위엄 있게 우뚝 솟은 하나의 산맥이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수백 개의 계곡이 이어졌다. 소나무가 무성하고 잡목도 있었다. 산 중턱에 폭포라고 생각되는 두 갈래의 하얀 명주 같은 물체가 아득히 먼바다에서 보였다. 그 폭은 20간(間) 정도, 높이는 40간이 될 것 같았다. 선장이 말하기를, “이 섬은 대략 3리 반 방향에 있고, 항구도 두세 곳 보이지만 큰 배가 정박할 데는 없다”고 한다. 내가 배 안에서 조망하던대 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른바 말하는 원산(原山)과 차산(次山)이 있으므로 반드시 금속이 생산되리라. 이 섬에서 조선의 물까지 34~35리, 쓰시마까지 80리이다.<sup>35</sup>

a는 독일 선장, b는 조선인 김인승(金麟昇)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a에는 울릉도까지 도항하여 벌목하는 조선인들의 모습, b에는 조선 관리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울릉도를 수토(搜討)하면서 위반자를 조사한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c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가사키로 돌아가던 해상에서 세와키가 직접 목격하고 묘사한 울릉도 모습이다. 울릉도의 전체적인 크기와 형세, 수목의 울창함, 멀리서 보인 폭포 등이 잘 드러난다. 김인승과의 대화에서

34 1875년 5월 19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一」(Ref. B16080698700: 0436).

35 1875년 6월 9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二」(Ref. B16080698700: 0459~0460).

만 ‘죽도’, 나머지 기록에서는 ‘송도’라고 지칭하며 울릉도 안의 상황을 기술한 부분이 특징적이다. 세와키는 특별히 울릉도 안의 광산 유무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통해 그가 ‘송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척할 필요가 있는 섬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22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상륙한 후 세와키는 현지시찰을 하며 이곳에 체류 중이던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와 접촉하던 중 무토와 의형제를 맺은 김인승을 알게 되었다. 세와키와 김인승이 만난 것은 5월 15일 부터였다. 김인승은 “꽤나 국학(國學)에 통달한 자로 취풍(吹風)으로 탈주해와 학교를 개설하고 생도를 가르치고 훈도하던” 자였다.<sup>36</sup> 이날 김인승은 무토가 휴대한 조선지도에 붓으로 지명을 써주었다. 세와키는 김인승과 빈번하게 만나 조선의 지방제도, 문자, 식사 문화, 러시아로 월경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이듬해 그는 두 권으로 된 『鷄林事略 初編(계림사략 초편)』을 출간하면서 조선의 행정제도, 지형, 지리, 병제 정보를 개관하였다. 책의 서문에 한문으로 작성한 김인승의 글을 수록할 정도로 둘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5월 25일 김인승은 무토와 함께 일본에 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6월 5일 세와키와 만난 자리에서도 “귀국의 번성함을 한번 살펴보고 귀국길에 일본 물품을 사서 돌아온 후에 이것을 판매한다면 여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심산”으로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sup>38</sup>

6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나가사키로 향한 세와키는 배에 승선한 프랑수아인을 통해 일본 선박 한 척이 조선 동래부(東萊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sup>39</sup> 이 선박은 1875년 5월 25일 부산에 입항하였던 운요호를 가리킨다. 세와키가 탑승한 선박은 경상도 영일현(迎日縣) 근처 해역을 지나

36 1875년 5월 15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一」(Ref. B16080698700: 0425).

37 瀨脇壽人·林深造, 1876, 『鷄林事略 初編』卷1·2, 吉田清兵衛; 구양근, 1997, 앞의 글, 142~143쪽.

38 1875년 6월 5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二」(JACAR Ref. B16080698700: 0455).

39 1875년 6월 8일,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二」(JACAR Ref. B16080698700: 0458).

6월 12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세와키가 귀국할 무렵 동래부에 입항해 있던 운요호는 6월 20일 이곳을 출항,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 영흥만(라자레프항)까지 올라가 해안과 하천을 측량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sup>40</sup> 운요호는 ‘동해안 연구(東海岸研究)’를 목적으로 조선 연안에서 정탐활동을 전개하였다. 6월 27일에는 영일만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는 영일현감 김명구(金命求)와 해변에서 만나 문답을 주고받았다. 운요호는 6월 29일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음 날 출항하여 7월 1일 나가사키로 돌아갔다.<sup>41</sup> 세와키가 도착한 지 20일 후의 일이었다.

운요호의 조선 2차 출항은 같은 해 9월 12일에 있었다. 나가사키에서 출발한 운요호는 9월 19일 월미도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20일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염하를 거슬러 올라가는 선장과 승선원 탑승 보트를 발견한 초지진 주둔 조선 병력은 이들에게 포격을 가했다. 이노우에 함장은 여기에 반격한다는 명분으로 공격에 나서 22일까지 3일에 걸쳐 영종성 등지를 함락시키고 전리품을 수습한 후, 9월 28일 나가사키로 귀환하였다.<sup>42</sup>

운요호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3일간 벌어진 전투와 노략 행위가 운요호의 나가사키 귀항 직후 나가사키 발행 영자신문 『라이징선(The Rising Sun)』지를 통해 상하이까지 곧바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10월 7일자에는 운요호와 관련하여 9월 20일부터 30분 동안의 포격, 21일의 해병 상륙과 포대 공격, 22일의 재공격에 따른 조선인 30명의 사망과 다수의 익사, 10명의 포

40 박한민, 2018, 「1875년 운요호 사건의 전개와 강화도 방어」, 『19세기 서구열강의 침입과 강화해양관방체제』,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118~119쪽. 운요호가 1차 항해 당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떻게 정탐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에 반영하였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운요호가 부산으로 귀항하기 전 영일만에 들렀고, 조선 관리의 문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만 서술하려 한다.

41 박한민, 2018, 위의 글, 119~122쪽.

42 운요호 사건의 전말, 이노우에 요시카 함장의 보고서 조작 등은 이태진, 스즈키 준(鈴木淳), 김흥수 등의 선행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연구 동향은 필자의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

로와 36문의 대포 노획 등이 있었다는 소식이 실렸다.<sup>43</sup> 이 기사는 이틀 후 일본어로 번역되어 『朝野新聞(조야신문)』에 신속하게 보도되었다.<sup>44</sup> 운요호 사건 보도를 보더라도 개항장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 전달되는 통로가 열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까지 왕래하는 선박의 기착지로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던 만큼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에 주목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 글에서 주목한 세와키와 하나부사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나가사키를 반드시 경유하여 선박을 이용한 인물들이었고, 기타시마 히데토모는 이 지역 현령이었다. 여러 인물들이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 III.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의 블라디보스토크 부임과 울릉도 개척 청원

외무경 데라시마는 외무성 7등 출사 세와키를 ‘무역사무관(貿易事務官, Commercial Agent)’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하여 일본 상인과 무역의 편의를 주선하고자 하니 결정을 내려 달라고 태정대신에게 상신하였다. 이 건은 러시아 주재 에노모토 다케야키 공사가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파견건을 조율한 후에 이루어졌다.<sup>45</sup> 러시아 정부에서 무역사무관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를 승인했다는 문서를 외무성은 6월 12일에 접수하였다.<sup>46</sup> 세와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되어 상인들의 교역에 관계하게 되

43 “Outposts: Corea”, *The North China Herald*, Oct. 7, 1875, p. 348.

44 『朝野新聞』 1875년 10월 9일 1면.

45 1876년 6월 1일 外務卿 寺島宗則 → 太政大臣 三條實美, 「露國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明治九年」, 『露領浦潮港駐節日本貿易事務官任免更迭雜件』(Ref. B16080263600: 0189).

46 1876년 6월 12일 史官 → 外務大少丞, 「露國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明治九年」(Ref. B16080263600: 0191).

리리는 언론 보도는 이달 24일부터 있었다.<sup>47</sup> 일본 주재 러시아 변리공사 스투루베는 이번에 파견하는 무역사무관이 “공공연하게 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다만 귀국인과 우리나라 지방관과의 사이에 서서 만사(萬事)를 취급해야 하는 자”이어야 하며, 임명은 사전에 본국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무역사무관 파견은 현지 지방관에게도 훈령을 내려 두겠다고 데라시마에게 회신을 보냈다.<sup>48</sup> 7월 25일 무렵에는 상인 사이토 시치로베(齋藤七郎兵衛)와 다나하시 간주로(棚橋寛十郎)가 교역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sup>49</sup> 이들보다 앞서 러시아 기선 크릴호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싣고 이곳으로 향한 상인들로는 가고시마(鹿児島) 출신 가사노 구마키치(笠野熊吉), 나가사키 출신 요시다 도쿠지(吉田徳次) 등이 있었다.<sup>50</sup> 선편을 이용하여 러시아 지역으로 도항하는 일본 상인들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에 무역사무관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와키는 도쿄(東京)를 출발, 10월 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출항하였다. 이때 앞서 나왔던 무토 헤이가쿠가 세와키와 동행하였다.<sup>51</sup> 상인으로는 치바현(千葉縣) 출신 사이토 시치로베와 나가오카 덴조(長岡傳藏)가 2천 엔어치 정도의 화물을 휴대하였다.<sup>52</sup> 이들은 11월 4일 나가사키항에서 러시아 선적 ‘바트라크’호로 갈아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 블라디보스토크에 11월 8일 밤에 무사히 도착하였다.<sup>53</sup> 이 선박에는 일본상인 12명, 부인 3명, 낱품팔이 40명 정도가 같이 승선해 있었다. 항구에는 영국 선적의 ‘드래곤’호도 정박

47 『読売新聞』 1876년 6월 24일 2면.

48 1876년 7월 21일 露國辦理公使 스투루베 → 外務卿 寺島宗則, 「露国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明治九年」(Ref. B16080263600: 0206).

49 『読売新聞』 1876년 7월 19일 1면.

50 “浦潮斯德通信”, 『東京日日新聞』 1878년 12월 10일 3면.

51 1876년 10월 4일 外務大少丞 → 史官, 「露国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明治九年」(Ref. B16080263600: 0213); 『読売新聞』 1876년 10월 5일 1면.

52 “浦潮斯德通信”, 『東京日日新聞』 1878년 12월 10일 3면.

53 1876년 11월 12일 瀬脇壽人 → 寺島宗則, 「露国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明治九年」(Ref. B16080263600); 『読売新聞』 1876년 11월 29일 2면.

해 있었다. 세와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배에는 석탄, 석회, 목재, 칠기와 도자기류의 상품을 1만 4~5천 엔어치 정도 적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바트라크’호(Batrak, 352톤, 러시아)와 ‘드래곤’호(Dragon, 영국)는 화물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나가사키, 상하이 노선을 오가며 무역에 종사하던 증기선이었다.<sup>54</sup> ‘드래곤’호는 472톤으로, 영국인 매슈 캐틀린 애덤스(Matthew Catlin Adams)가 운영하는 회사(M. C. Adams & Co.)에서 임차하여 운항하던 선박이었다. 선장은 앨버트 그레벳(Albert Grevett)이었다. 때때로 상하이 이화양행(Jardine Matheson & Co.)의 의뢰를 받은 화물을 운반하기도 하였다.<sup>55</sup> 이렇게 고용된 선박이 동해를 오가며 항로 중간에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목격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특히 승선자들에게 동해상에서 눈에 띄는 큰 섬은 울릉도였고, 이와 관련된 목격담은 영자 신문에도 실렸다. 1876년 7월 15일자 『노스 차이나 헤럴드』에 실린 울릉도 목격담 기사가 대표적이다.

3일 후 우리는 마침내 6월 16일 저녁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하였다. 맑은 날씨와 고요한 바다 속에서 아침에 우리는 나란히 있는 이키시마(Iki-sima)를 발견하였고, 나중에 긴 섬 혹은 쓰시마 섬(Tsu-sima)이 좌현 앞에서 보였다. 이러한 풍경을 뒤로 하면서 떠났고, 조선 해안을 먼 거리에서 아득하게 볼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시야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고독한 섬 마쓰시마(the lonely island of Matu-sima) 또는 다즐레(Dagelet)가 앞에 나타났다. 7시 정각에 우리는 그 섬과 나란히 하였고, 우리 쌍안경을 통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워졌다. 조선 해안에서 위쪽으로 80마일로, 그 섬은 일본해(the Japan sea: 원문 그대로 번역, 조선의 동해를 가리킴-인용자)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험준한 바위와 울창한 비탈면은 주변의 깊고 푸른 물결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그 섬은 영구히 거주하는 자들이 없었으

54 “浦潮斯德通信(昨日の續き)”, 『東京日日新聞』 1878년 12월 11일 3면.

55 “Outposts: Nagasaki”, *The North China Herald*, July 10, 1875, p. 37; “Shanghai Shipping Intelligence, Departures”, *The North China Herald*, Nov. 22, 1877, p. 494; *The North China Herald*, Feb. 7, 1878, p. 139.

나, 몇몇 어부들이 여름철에 방문한다. 우리는 그들의 보트를 볼 수 있었는데, 외떨어진 해변의 서쪽 편에서 멈추어 서 있는 보트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섬은 우뚝 솟아 있었고, 선상에 있던 호기심이 많은 선객의 계산에 따르면 그 정상은 3천 피트나 솟아 있었다. 섬에 황금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바다에서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 보고를 뒷받침하지 않았다.(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sup>56</sup>

이 기사에는 나가사키에서 출항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드래곤’호에서 “마쓰시마 또는 다즐레”라 불리는 ‘고독한 섬’ 울릉도를 지나가면서 승선원들이 목격한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 해안에서 위쪽으로 80마일”, 즉 128.748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조선 해안’은 죽변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죽변과 울릉도 사이의 실제 거리는 130.3킬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울릉도 해안가의 모습을 두고 ‘힘준한 바위와 울창한 비탈면’이 푸른 동해의 바닷물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묘사한 서술도 인상적이다. 또한 어부들이 울릉도까지 타고 들어간 선박도 해안가에 놓여 있는 모습도 배에서 포착되었다. 성인봉 높이를 선객이 대략 ‘3천 피트’로 추산하였는데, 이 수치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14.4미터이다. 실제 높이가 984미터이므로 배에서 어렵짐작하였을 것을 감안한다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사의 필자는 울릉도에 황금도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배에서 외견상으로 관찰했을 때 그러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울릉도는 동해상을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과 승객들의 이목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따라서 섬의 개척을 통해 이권을 선점하려고 눈독을 들이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하여 왕래하던 세와키와 무토, 사이토 같은 자들이 대표적이었다. 일본 국내에서 주류가 될 수 없었던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리고 현지에 진출하여 상권(商權)과 국권(國權)을 확장하려는 지향을 가

56 “Editorial Selections: Vladivostock”, *The North China Herald*, July 15, 1876, p. 49.

지고 있던 이들에게 동해에서 눈에 띄는 조선의 도서(島嶼)는 남들보다 먼저 ‘개척’해야 할 대상이자, 쟁취해야 할 ‘이권’의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5월 22일 세와키는 데라시마 외무경과 사메시마 나오노부(鮫島尙信) 외무대보(外務大輔)에게 편지를 보냈다. 거기서 본인과 모로오카 미치요시(諸岡通義, 나가사키현 출신의 외무성 관리)의 현지 생활과 건강 상태, 지폐 교환 건등을 짧게 언급하였다. 중간에 울릉도 개발을 건의하는 내용도 나온다.

공신(公信)으로 말씀드린 대로 송도(松島) 일건(一件)은 속히 착수해 두시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 섬과 조선 북부에 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 선편(先鞭)으로 착수한다면 천 번 후회할 무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sup>57</sup>

여기서 말하는 ‘송도’는 울릉도이다. 이곳과 더불어 조선 북부 지방에 대하여 눈독을 들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다른 곳’은 영국이나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세와키는 일본에서 두 지역을 차지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달 후 동일하게 외무성의 두 상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영러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면서 울릉도 개척의 착수를 재차 촉구하였다. 세와키는 ‘십팔공도(十八公島)’라는 낯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도를 일종의 암호처럼 파자(破字)로 표기한 것이었다.<sup>58</sup> 자신이 올해 봄부터 ‘십팔공도 개척 건을 건의’하였는데,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중심으로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생한 세이난전쟁(西南戰爭)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연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건이 “현재 일대의 중요한 업무(一大要務)이므로 조속히 허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sup>59</sup> ‘십팔공도’를 개척해 준다면 국가를 위해 본인

57 1877년 5월 22일 瀬脇壽人 → 寺島・鮫島,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 566쪽.

58 김홍수, 2021, 앞의 글, 148쪽.

59 1877년 7월 26일 瀬脇壽人 → 寺島・鮫島,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 567쪽.

이 ‘분골쇄신’하겠다는 의사까지 피력하였다. 과자 표기로 남들에게 노출하지 않으려 하고, 영국 군함의 출몰에 따른 대외적 위기까지 거론해 가며 세와키는 울릉도 개척에 노심초사하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노모토 공사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 예정이라 기다리고 있다는 점, 항구 내 채류 상인들이 벽돌(磷火石, 煉化石) 제조를 시작하여 여러 곳에서 수요가 있다는 점까지 전달하였다. 여기서 말한 상인은 사이토 시치로베로, 그는 현지에서 벽돌 제조를 업으로 삼고 있었다.<sup>60</sup> 사이토는 수천 평의 부지를 사들여 벽돌공장을 조성한 다음, 일본인과 조선인 인부를 고용하여 생산한 상등품의 벽돌을 러시아 관청에도 건축자재로 납품하였다.

메이지 9년(1876-인용자) 가을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 군과 서기 2명이 본 항구로 도항하였을 때, 치바현 사람 사이토 시치로베, 나가오카 텐조 두 사람은 무릇 2천 엔어치의 화물을 가지고 왔다. 아리타 이노스케(有田伊之助)와 합병하여 상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작년 봄 무렵부터 본 항구 근방에 좋은 부지 수천 평을 사들여 여기에 많은 작은 가옥을 건설하고, 흙가마를 만들어 벽돌(煉化石) 제조에 착수했다. 그 토질이 몹시 벽돌에 적합하여 점차 상등품을 만들어서 내놓았다. 이 제조소는 매일 조선인과 일본인 20명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이 벽돌은 거듭 러시아 관유 건물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항구에서 일본인이 영업 중인 이 제조물을 1등으로 쳤다.<sup>61</sup>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세와키는 1877년 11월 24일 무렵 도쿄로 돌아갔다. 아마도 휴가를 받아 한시 귀국했던 것 같다. 이듬해 4월 초 세와키는 외무성 2등서기생 오마에 다이조(大前退藏)와 견습서기 마쓰모

60 “松島日記”, 『西海新聞』, 1879년 9월 24일 2면. 『西海新聞』 기사는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가 제4기 최종보고서(2020년 3월)에서 공개한 자료 원문을 이용하였다. 보고서는 Web竹島問題研究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

61 “浦潮斯德通信”, 『東京日日新聞』, 1878년 12월 10일 3면.

토 슈조(松本秀藏)를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였다.<sup>62</sup>

복귀 후 7월 31일 데라시마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와키는 조선의 개항장 선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자신이 항구에서 만난 조선인에게서 얻은 정보를 전하였다. 여기서 거론한 조선인은 이름 언급이 없으나 아마도 세와키와 교류하던 김인승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개항장은 결정되었습니까? 본 항구에 재류하는 이 나라 사람에게 들었는데, 해상(海上)에서만 검사(檢査)를 해서는 인민과 물품 모두 폭주하는 지역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육지에서도 검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가 이야기한 좋은 항구와 더불어 인물이 폭주할 지역은 후속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이 나라에 송도(松島)라고 부르는 하나의 섬은 함경도(咸鏡道) 해변(海邊)에서 20리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십팔공도(十八公島)는 완전히 별도의 섬(別島)입니다. 부디 개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sup>63</sup>

조선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조선의 송도가 “함경도의 해변에서 20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와키 본인이 이전부터 개척을 거론하였던 ‘십팔공도’와는 “완전히 별도의 섬”으로 판단하면서 개척 허가를 거듭 촉구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송도’가 조선 함경도에 있는 섬과 다른 곳임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넣은 전문(傳聞) 정보였다. 여기서 나오는 함경도 ‘송도’란 아마도 명천(明川) 앞바다에 있던 섬을 가리키는 것 같다.<sup>64</sup> 이 시점은 아직 원산을 개항장으로 설정하기 이전으로, 영흥만과 송전(松田) 일대를 두고 조일 양국이 어느 지역을 개방할지를 두고 예민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조선인에게 들은 함경도 ‘송도’란 지명은

62 『読売新聞』 1878년 4월 4일 2면.

63 1878년 7월 31일 瀬島壽人 → 寺島宗則,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 568쪽.

6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872년 지방도 가운데 「明川地圖」 하단부에서 ‘松島’라 적힌 섬을 확인할 수 있다.

세와키 본인이 지속적으로 거론해 온 섬과는 별개임을 보여 주기에는 좋은 소재로 여겨졌던 만큼 자신의 개척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앞서 영자 신문 기사의 목격담에서도 나왔듯이 세와키가 거론하는 ‘송도’는 동해 항로상의 요충지일 수밖에 없는 울릉도(Dagelet)였다.

근무지로 복귀한 이후, 같은 해 여름에는 해군경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와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홋카이도 개척장관(北海道開拓長官) 등이 탐승한 곤고함(金剛艦)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잠깐 들렀다가 코르사코프로 향하기도 하였다.<sup>65</sup>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를 지낸 에노모토 다케아키도 곤고함이 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고, 이곳의 항구를 이용하여 귀국길에 올랐다.<sup>66</sup>

9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에노모토는 이곳에 체류하다가 10월 2일 홋카이도로 향하는 배에 승선, 오타루(小樽)와 하코다테(函館)를 들른 후 10월 21일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sup>67</sup> 러시아에서 3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던 에노모토는 원래 이해 4월 하순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둘러볼 계획이었다.<sup>68</sup>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들른 일정은 계획보다 5개월 정도 늦어졌다. 에노모토의 일기에는 체재했다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지만, 세와키가 이 지역 무역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연회석상 등에서 그와도 만나 여러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 병에 걸린 세와키는 1878년 11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는 ‘드래곤’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하코다테로 향하던 중 11월 29일 사망하였다.<sup>69</sup> 그의 아들 세와키 도시오(瀬脇壽雄)는 신문에 “병으로 임

65 『読売新聞』 1878년 8월 31일; 『読売新聞』 1878년 9월 7일 1면.

66 『読売新聞』 1878년 9월 26일 1~2면.

67 1878년 9월 29일~10월 2일, 『シベリア日記』, 『資料 榎本武揚』(加茂儀一 編集・解説, 東京: 新人物往來社, 1969), 251쪽.

68 1877년 5월 21일 榎本武揚 → 寺島宗則,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 488쪽.

69 『読売新聞』 1878년 11월 29일 1면; 『読売新聞』 1878년 12월 4일 1면; 『大阪日報』 1878년 12월 10일 2면.

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귀향하던 중 선박 안에서 지난 달 29일 사거”했다  
는 부고를 실어 그의 사망 소식을 지인들에게 알렸다.<sup>70</sup>

#### IV.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도한과 나가사키현령의 울릉도 개척 청원서 입수

세와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사무관으로 한창 활동하던 시기, 하나부사는 조선에 가서 추가 개항장 선정을 위한 교섭을 담당할 대리공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1877년 9월 10일 태정관에 출두하여 대리공사로 조선국에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다.<sup>71</sup> 그가 조선에 가서 “수호조규(修好條規)의 교제 사무를 논의하고 개항장까지도 정한다”는 소식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sup>72</sup> 하나부사의 조선 사행에는 육군소위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 육군성 13등 출사 시모무라 슈스케(下村修介), 다카오마루(高雄丸)와 관련하여 해군소위 다카스기 하루키(高杉春祺), 해군소위 고다마 가네타카(児玉包孝), 소위보 미우라 기신(三浦義深)이 동행하였다.<sup>73</sup> 하나부사와 수행원 일행은 9월 26일 요코하마에서 히로시마마루(廣島丸)를 타고 출항하였다.<sup>74</sup> 고베(神戸)와 바칸(馬關)을 거쳐 9월 30일 저녁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하나부사는 나가사키현령 기타시마 히데토모를 방문하였으며, 콜레라 진찰규칙 1부를 얻었다. 수행원들은 조선으로 가져갈 양식과 기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나부사 일행은 10월 2일 저녁 때 다카오마루에 승선하였고, 다음날 새벽 조선으로 출발하였다.<sup>75</sup>

70 『読売新聞』 1878년 12월 6일 4면.

71 1877년 9월 10일, 『明治十年花房代理公使使鮮日記』, 『日本外交文書』 卷10, #132 附記1, 239쪽.

72 『東京日日新聞』 1877년 9월 12일 2면.

73 1877년 9월 20, 21일, 『明治十年花房代理公使使鮮日記』, 『日本外交文書』 卷10, #132 附記1.

74 1877년 9월 26일, 『明治十年花房代理公使使鮮日記』, 『東京日日新聞』 1877년 9월 27일 2면.

75 1877년 10월 1~2일, 『明治十年花房代理公使使鮮日記』; 1877년 10월 1일, 『明治十年朝鮮差遣ノ際ノ日誌及雜記』(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나가사키에 잠시 들렀을 때 하나부사가 나가사키현령을 만났다는 사실은 간략하게 일지에 적혀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기타시마는 이해 7월 13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松島開島之儀ニ付伺(송도 개도의 건에 대한 문의)」를 보내면서 「松島開拓着手急務之概略(송도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을 첨부하였다. 기타시마가 작성한 문의서와 첨부 문건을 하나부사가 갖고 있었다. 「송도 개도의 건에 대한 문의」는 외무성 패지(4면)에, 「송도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은 나가사키현 판심(版心)의 패지(6면)에 적혀 있다. 하나부사는 기타시마와 만났을 때 자신이 부임하게 될 조선과도 관련이 깊은 이 문건을 입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6</sup>

이 문건이 제출된 전후 일본 내에서 울릉도를 대상으로 개척원을 제출한 문건이나 서한을 기타시마의 문의서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sup>77</sup>

<표 1> 1876~1878년 사이 울릉도 개척 청원을 한 일본인 명단과 수록 문서

일자	작성자(신분)	수신자(신분)/수신처	문서명	출전
1876.7	武島一學 (陸奥 士族)	外務省	松島開拓之議	『竹島考證』下, 第8號79
1876.7.13	兒玉貞陽	外務省	兒玉貞陽建白	『竹島考證』下, 第9號80
1876.7	渡邊洪基 (外務省 記録局長)		松島之議 一, 二	『竹島考證』下, 第11號, 第12號81

76 기타시마는 1842년생으로, 1876년 5월 22일 나가사키현령에 임명되었다. 나가사키 현지에서 콜레라가 한창 유행하던 1877년에 그는 병원을 시찰하다가 콜레라에 감염되어 1877년 10월 10일 36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조선으로 갈 준비를 위해 나가사키를 잠시 들른 하나부사와 만나고 나서 9일 후에는 고인이 되었으므로, 생전이나 아니면 '송도' 개척과 관련된 문건을 전달할 시간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北島秀朝の生涯』, 『縣令北島秀朝關係書簡集』(縣令北島秀朝關係書簡集 編輯委員會 編, 栃木県: 馬頭町, 1991), 17~18쪽.

77 이 표는 정영미와 유미림의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표 가운데 1876~1878년 사이에 생산된 문건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표에서 인용한 『竹島考證』下는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卷5에 수록되어 있다. 정영미, 2015, 앞의 책, 148~149쪽; 유미림, 2015, 앞의 책, 146~147쪽.

78 「參考 渡邊洪基松島之議」, 『蔚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 수록.

79 「參考 渡邊洪基松島之議」, 『蔚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 수록.

80 두 문건의 원본은 『蔚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의 「參考 渡邊洪基松島之議」에 수록되어 있다.

1876.12.19	齋藤七郎兵衛 (商人)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松島開島願書并建言	『竹島考證』下, 第13號
1877.1.27	戶田敬義 (島根縣 士族)	楠本正隆 (東京府知事)	竹島渡海之願 <sup>82</sup>	『竹島考證』下, 第4號
1877.3.13	戶田敬義 (島根縣 士族)	楠本正隆 (東京府知事)	竹島渡海之願書至急 御指揮被下度追願	『竹島考證』下, 第5號
1877.4	戶田敬義 (島根縣 士族)	楠本正隆 (東京府知事)	本年竹島渡海奉願置 候處最早季候ヲ誤リ 候ニ付明年ニ讓リ候 段御届旁上申	『竹島考證』下, 第6號
1877.4.25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寺島宗則 (外務卿) 鮫島尙信 (外務大輔)	明治十年平信第一	『竹島考證』下, 第14號 「浦潮港日記抄」 添附
1877.5.6	武島平學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松島開島之建白	『竹島考證』下, 第16號
1877.5.22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寺島宗則 (外務卿) 鮫島尙信 (外務大輔)		『寺島宗則關係資 料集』下
1877.6.7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田邊太一 (外務省 公信局長)		
1877.6.8	楠本正隆 (東京府知事)	戶田敬義 <sup>83</sup> (島根縣 士族)	第壹萬八千六百七十 五號	『竹島考證』下, 第7號
1877.6.25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寺島宗則 (外務卿)	公信第三號	『竹島考證』下, 第17號
1877.7.2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森有禮 (外務卿 代理 全權公使)	明治十年第八號	『竹島考證』下, 第18號
1877.7.13	北島秀朝 (長崎縣令)	大久保利通 (內務卿)	松島開島之儀ニ付伺, 松島開拓着手急務之 概略	『花房文書』卷5; 『花房義質關係文 書』406-2(M/F 리 20)
1877.8.6	坂田諸遠 (外務省官員)		松島異見	『竹島考證』下, 第19號

81 이 문서에 부속한 지도가 2장 첨부되어 있다. '竹島之圖'란 제목인데, 두 장 모두 울릉도를 그린 것이다. 제1호 지도는 1874년 동짓달(霜月) 19일 밤 도다 다카요시가 지도의 소유주(持主) 곤키치(權吉)에게 빌려서 모 사했다고 적혀 있다. 제2호 지도는 제1호보다 간략하기는 하나, 산은 옅은 푸른색, 바위는 갈색으로 채색하고 암석의 높이나 길이 등을 표기하고 있다.

82 청원을 허락할 수 없다는 도쿄부지사의 회답이므로, 수신자는 이전에 '竹島' 도항 청원서를 세 차례 제출 하였던 도다 다카요시로 보았다.

##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1878.7.31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寺島宗則 (外務卿)		『寺島宗則關係資料集』下
1878.8.15	齋藤七郎兵衛 下村輪八郎 (商人)	瀬脇壽人 (外務省貿易事務官)	願 <sup>84</sup>	『竹島考證』下, 第20號 <sup>85</sup>

〈표 1〉을 보면 주로 1876~1878년 사이에 울릉도 개척원이 빈번하게 제출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마네현 출신 도다 다카요시가 ‘죽도’라 지칭한 문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들이 ‘송도’라 기재한 것이 특징이다.<sup>85</sup> 정기항로를 이용하여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북상하던 중 울릉도를 목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무렵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 관할로 편입하였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아 청원서 제출이 속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86</sup>

기타시마는 ‘송도(松島)’, 즉 울릉도가 상하이와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항해하는 노선에 위치한 요충지이며, 러시아와 프랑스 등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으므로, 먼저 나가사키현에서 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83 『竹島考證』下에는 “제20호 松島開拓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원본에는 ‘願’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여기서는 원본 그대로 표기하였다.

84 시모무라와 사이토가 날인한 청원서 원본은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의「參考 渡邊洪基松島之議」에 실려 있다. 이 문건은 나가사키 지역 발행 신문에도 소개되었다(“松島日記”, 『西海新聞』 1879년 9월 24일 2면).

85 울릉도에 대하여 ‘송도’ 혹은 ‘죽도’(시마네현 측의 섬 명칭 표기 관련)로 표기한 청원서 제출 전후 시기의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해 두려 한다. 1867년(慶應 3年) 가스 가이슈(勝海舟)가 영국의「東洋測量圖」를 보고 항해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大日本沿海略圖」에서는 울릉도를 ‘松島’, 독도를 ‘リゴシコナルトロッグ(Liancourt Rock)’로 표기하였다. 시마네현에서 간행된 지역신문의 경우 1894년 2월에도 울릉도에 대하여 “8도 중의 하나인 강원도에 속하는 島嶼로, 본명은 鬱陵島라고 한다. 본방인(일본인)은 竹嶋라 칭한다”고 소개하고, 독도를 속칭 ‘리랑크島’라고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朝鮮竹島探檢(松江佐藤狂水生投)”, 『山陰新聞』 1894년 2월 18일 3면).

86 에노모토는 1876년 데라시마에게 서한을 보내어 ‘오가사와라 개도(開島) 일건’에 대하여 향후 정부에서 어떻게 착수할 예정인지 알려달라고 문의한 적이 있다(1876년 3월 13일 複本 → 寺島, 『寺島宗則關係資料集』下, 488쪽). 이해 7월 청원서를 제출한 무토도 오가사와라 섬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곳보다 울릉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듬해 도쿄부로 ‘죽도도해’ 청원을 제출한 도다 다카요시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유미림·박지영·심경민, 2014, 앞의 책, 90쪽).

점을 건의하였다.

우리 온슈(隱州)의 북쪽에 섬 하나가 있다. 송도(松島)란 이름이다. 지세(地勢)는 남북 4~5리이며, 동서로 3리에 그친다. 서쪽으로 조선과 가깝고, 북으로는 러시아령(魯嶺) 만주(滿洲)에 접한다고 한다. 항해자의 말에 따르면, 그 섬의 남쪽 면은 바다를 향해 점차 평탄해진다. 산 정상(頂)의 3~4분(分)에 폭포와 같은 것도 있다. 또한 해안가(海濱) 곳곳이 작은 만(小灣)이기 때문에 선박을 계박할 수 있다. 게다가 거목(巨木)이 섬 전체에 무성하며 짙은 녹색으로 항상 울창하다. 그리고 또한 꽤나 어렵(漁獵)의 이익이 있다. 그 가운데 지나인이 좋아하는 전복(鮑) 같은 것은 그 수가 엄청 많다. 이미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채류하는 러시아인, 프랑스인 등이 거기에 이익이 있음을 인지하고, 몰래 이곳을 주목했다고 한다. 또한 말을 들어 보니 광산(鑛山)이 있다고 한다.<sup>87</sup>

앞서 나왔던 세와키 히사토의 울릉도 목격담, 상하이 발행 영자 신문의 울릉도 주변 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술이다. 남북으로 4~5리, 동서로 3리라는 섬의 전체적인 크기는 무토 헤이가쿠 같은 일본인들의 청원서에서 거론한 “동서로 3~4리, 남북으로 5~6리의 작은 섬”이란 표현과도 비교해서 볼 만하다.<sup>88</sup> 섬의 동서와 남북을 정확하게 실측한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규모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제시한 수치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울릉도 크기를 언급한 부분은 무토가 조선인들에게 들은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 “서쪽으로 조선과 가깝고” 섬 전체가 ‘거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녹음으로 울창하며, 전복을 비롯한 고기잡이의 이익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여기서 거론하는 ‘송도’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점이 명확하다. 블라디

87 「松島開島之儀二付伺」, 『花房文書』卷5; 『花房義質關係文書』406-2(M/F 冊 20).

88 第16號 「松島開島之建白」, 『독도자료집Ⅲ: 竹島考證』(정영미 편집 및 번역, 2006.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422쪽(원문). 여기서 나오는 ‘리(里)’는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사용하는 거리 단위로, 일본의 1리는 조선의 약 10리에 해당한다. 개항장에서 ‘한행이정(開行里程)’을 설정할 때도 조일 간에 거리 차이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조일수호조규부록』), 조선 측에서는 자국의 10리 거리(약 4킬로미터)를 허용하였다. 이후 임오교란을 거치고 『조일수호조규속약』을 체결하면서 한행이정은 100리까지 확정되었다.

보스토크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만큼 이곳을 왕래하는 러시아, 프랑스인들에게도 울릉도는 잘 알려진 섬이었다. 세와키와 마찬가지로 울릉도 내부에 광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소문도 적지 않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초에 러시아(魯西亞)가 아시아 동방에 뜻을 두었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블라디보스토크항(浦潮港)이 날로 번성에 이르는 일은 지시를 받아 기다려야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 섬은 우리 나가사키(長崎)와 청국 상하이(上海)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항해하는 노선에서 요충지이다. 따라서 피아 선박으로 도해하는 자가 혹여 풍랑을 피하여 뿔감과 물을 구하는 일 역시 마땅히 적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양질의 목재를 벌채하고, 어업을 개시하도록 한다면 본방에 다소의 이익이 증가하며, 통상(通商)의 편의를 차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대개 방금 국가의 일(國事)로 분주한 때이므로, 애초부터 일을 하는 데 선후의 구별이 있다고는 하나, 이 섬의 건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sup>89</sup>

“러시아가 아시아 동방에 뜻을 두었다는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란 명칭이 영토(블라디)와 동쪽(보스토크) 두 단어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sup>90</sup> 이어서 나오는 대목은 울릉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항로의 중간에 있으며, 풍랑을 피하거나 식수와 뿔감 공급, 목재 벌목과 어업 등에서 ‘다소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므로, 개발을 위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충지임을 강조하였다. 항해자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중간 기착지이자 물산이 풍부한 곳이란 점에 주목하고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것은 울릉도가 조선에 소속된 섬이란 점을 배제한 채 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89 「松島開島之儀二付伺」, 『花房文書』卷5; 『花房義質關係文書』406-2(M/F 頁 20).

90 “浦潮斯德通信”, 『東京日日新聞』1878년 12월 10일 2면.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타시마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이사관’ 세와키가 “꽤나 절박하게 상황”을 전해 왔다는 점까지 거론하였다.<sup>91</sup>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 판도 안(版圖內)임을 증명하고 하나의 관청(公廳)을 설치하여 점차 섬을 개발”해야 하며 이민과 항로 개설을 통해 “외국인이 탐내며 침 흘리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2</sup> 따라서 기타시마 본인이 구상한 울릉도 개척 착수안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이것을 내무성에서 검토하고 속히 승인해 달라고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러시아까지의 정기 항로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울릉도에 대한 개척에 먼저 나서서 나가사키 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이 들르는 곳이자, 행정적으로 쓰시마(對馬島)까지 관장하는 나가사키 현 대표 관리가 울릉도를 조선 정부에서 관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섬을 자국 판도 내로 만들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일방적으로 정리하여 내무성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타시마가 구상한 울릉도 개척안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아래에서는 그가 첨부한 「송도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을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 이 섬을 개척하려는 본래 취지는 우선 우리나라의 판도로 삼아 식민(殖民)하는 지역이었던 증거(証跡)를 만들자는 것으로, 개척 사업을 점차 착수할 필요가 있음.

제1조에서는 ‘송도’를 일본의 “판도로 삼아 식민하는 지역이었던 증거를 만들겠다”고 하며 제안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것은 울릉도가 자국

91 세와키와 기타시마가 ‘송도’ 개척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문서를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松島日記』, 『西海新聞』 1879년 10월 10일 3면. “송도 일건으로 전(前) 나가사키현령 기타시마 군과 고(故) 영사 세와키 군의 왕복 서류 여러 통을 보았고, 이제까지 해당 섬에 착수한다는 정견(定見) 등을 알 수 있었다.”

92 『松島開島之儀二付伺』, 『花房文書』卷5: 『花房義質關係文書』406-2(M/F 冊 20).

령이 아니기 때문에 개척 사업을 통해 자국 소유임을 보여 주는 증거부터 만든 다음에 자국 판도로 포섭해야 한다는 의도를 보여 준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제2. 이 섬의 실지 답사(見分)와 둘레(周回) 측량을 위하여 내무성 지리국(內務省地理局)의 관리(吏員) 약간 명과 나가사키현 관원(長崎縣官員), 그리고 인부(役夫) 등 대략 10명 외에 순사 20명 정도를 증기선으로 섬에 가도록 할 것.

제3. 이 섬에 도착한 다음, 일찍이 거주하고 있던 인민의 유무를 실지 답사 할 것. 만약 거주하는 인민이 있다면 본국의 이름과 호적, 이 섬으로 이주한 사유, 그리고 정부 관계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할 것.

제6. 무릇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천연산물로 수많은 이익을 얻는 경제의 개략을 조사할 것.

제2조와 제3조는 울릉도의 지세를 측량하고, 거주 인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무성 소속 관리와 경찰, 나가사키현 소속 관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조의 밑줄 친 부분은 관원 문구에 ‘나가사키현’을 추가로 기입해 넣은 것이다. 기타시마 현령으로서는 현 차원의 관리가 내무성 파견 일행에 동행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선 안배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2조와 제3조 두 가지 조항은 섬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소속 국가의 관련 정보까지 조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타국인, 즉 조선 국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경찰 인원을 같이 보내어 조사 관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 구상한 부분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제6조는 섬 내에서 자연 생산되는 산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향후 섬 안을 개발했을 때 각 산물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의 규모를 기늴하

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천연물산이 많아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섬’은 울릉도일 수밖에 없다.

제4. 선박을 계박(繫泊)할 수 있는 항만(港灣)의 유무, 그리고 광물류(礦物類)와 기타 천연산물(天然產物)의 개략. 또한 경작지가 될 만한 지역을 조사할 것.

제5. 과연 선박을 계박할 항만이 있다면, 등대(燈臺)를 건축할 장소와 장래에 시가(市街)가 될 만한 지역을 미리 정할 것. 단, 등대를 건축하려는 본래 취지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내외국(內外國)에서 항해선이 기항하는 편의를 얻게 되기 때문이므로, 본방(本邦) 나가사키와 청국 상하이 등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항해하는 항로에서 가급적 편리함이 있는 방향으로 선정할 것.

제10. 등대 건축 건은 시기(時機)를 헤아려 내무성(內務省)에 품의(稟議)하고, 공부성(工部省)에 주임(主任)의 출장을 청구해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울릉도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상하이와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항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등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형까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을 위한 포석으로, 기본 항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섬 내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려는 기본 구상이었다. 등대 시설 건축의 경우 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내무성과 공부성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제10조 내용이다. 등대 설치 건은 1876년 7월 13일 고다마 사다아키가 제출한 건의서의 부속 문서에서도 네 번째로 언급된 사안이기도 하다.<sup>93</sup> 1877년 5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건의서를 제출한 무토 헤이가쿠도 조

93 第10號「松島着手之階梯見込」, 『독도자료집II: 竹島考證』, 350쪽(원문).

선 함경도의 개항을 염두에 두며 울릉도에 등대를 설치해 두면 조일 양국을 비롯하여 이 해역을 왕래하는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안전해지면서 각국의 교제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4</sup> 기타시마의 등대 건설 제안은 행정관료로서 추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까지 예상하고 여기에 대비하러 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민간인들의 건의서보다도 구상안이 훨씬 구체적이었다.

제7. 위의 여섯 가지 조항 조사가 가능하다면 우선 나가사키로 귀향한 다음, 내무성에 상황을 갖추어 보고할 것. 우리 정부에서 과연 이 지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확인해 준다면 이 섬의 관할과 개척 사무를 나가사키현에 허가하도록 할 것.

단, 우리 육지에서 이 섬까지의 거리(里數)가 가까운 현(縣)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선박에 편리함이 있는 곳은 우리 나가사키현만한 데가 없다. 따라서 관할도 역시 우리 현에 허락하시는 편이 만반(萬般)으로 편리(便宜)하지 않겠는가?

제7조는 앞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을 조사한 후, 먼저 관련 정보를 내무성에 보고하고, 향후 섬의 개발과 관할을 나가사키현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출항 선박이 나가사키를 들른다는 위치상의 이점까지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울릉도 개척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육지에서 이 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현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란 문구는 다분히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을 의식한 표현이었다. 기타시마는 항로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나가사키현이 울릉도 개척 권리를 가져가야만 현에서 향후 적지 않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까지 하였던 것이다.

94 第16號 「松島開島之建白」,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440, 442쪽(원문).

제8. 이전 조항의 나가사키현으로 개척하라는 명이 내려진 다음에는, 다시 관원을 파견하도록 하여 장래 수읍(首邑)이 될 만한 지역에 작은 관사(官舍)를 하나 건축하고, 천연산물을 수출하도록 하여 이익을 늘리는 일(興利)에 착수해야 한다.

제9. 이익을 늘리는 일의 착수는 우선 어부(漁夫)와 나무꾼(樵夫)들을 고용하여 일시적으로 들리 체류하도록 하여 어업과 벌목의 이익을 주(主)로 삼기 때문에 자금을 사용하는 일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유일한 관사를 유지하고, 점차 이로써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제8조와 제9조는 울릉도의 개척을 나가사키현에서 하라는 명이 내려진 후, 섬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을 제시한 것이다. 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관사를 먼저 짓고, 어부와 나무꾼을 고용하여 어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작업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11. 이 섬의 실지 답사로 일단 나가사키로 귀향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별도로 개척관 비용(開拓官費: '官'자 부분에 부식이 있기는 하나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과 비교하여 보완-인용자)으로 지불해 둔다. 이어서 이 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점차 줄이고 상각할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제12. 이 섬 개척으로 소비할 것과 얻을 것의 이해득실(利害得失), 그리고 출납 등의 상세한 비목은 실지에서 착수한 후부터 무릇 1개년 정도를 기한으로 하여 건적을 내고, 내무성에 상황을 보고하여 지령을 받을 것.

마지막으로 제11조와 제12조는 울릉도 현지답사와 개척으로 들어가게 될 각종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답사 등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은 기본적으로 개척관이 쓸 비용을 통해 충당하

되, 향후 울릉도 개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비용을 청산해 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용 처리와 관련된 항목은 상급기관인 내무성에 보고하여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하였다.

기타시마의 ‘송도’ 개척 문의를 받은 내무성에서는 이해 8월 18일자로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의 회답 공문을 나가사키현으로 보냈다. 이 공문도 앞서 제시한 기타시마의 두 문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부사 문서에 들어 있다. 13줄로 된 나가사키현 관심의 패지 1장에 적힌 문건이다.

오키노쿠니(隱岐國) 북방에 있는 송도(松島) 개도(開島) 건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 시마네현에서 품의(稟議)가 있었을 때, 구 막부(舊幕府) 시기에 그 섬 사건에 대하여 조선국과 여러 차례 왕복한 서류 등을 충분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판도 안(版圖內)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담당부서로 회신을 거쳐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현(同縣)에도 그 취지를 지령해 두었던 내용이 있으므로, 그 취지를 알고 계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점을 회답합니다.<sup>95</sup>

오쿠보의 회신은 1876년 연말 시마네현에서 지적 판도 제작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시마네현에서 품의)부터 거론하였다. 시마네현의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성은 ‘송도’와 관련하여 ‘구 막부였을 때 해당 섬 사건에 대하여 조선국과 여러 차례 왕복한 서류 등을 충분히 조사’하였다. 막부의 예전 서류는 17세기 안용복(安龍福)의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와 관련

95 1877년 8월 18일 內務卿 大久保利通 → 長崎縣令 北島秀朝, 『花房文書』 卷5: 『花房義質關係文書』 406-2(M/F 밑 20). “隱岐國ノ北方ニアル松島開島之儀ニ付、縷述之趣モ有之候得共、右ハ客歲島根縣ヨリ稟議有之候御、舊幕府中該島事件ニ付、朝鮮國ト數回往復之書類等篤ト取調候處、終ニ我版圖內タルコトヲ詳明ニサルニ付、其筋ヘ申稟ヲ經、本邦ニ於テ關係無之儀ト治定致シ、同縣ヘモ其旨及指令置候儀ニ有之候條、可被得其意、此段及回答候也”

하여 조선 정부와 막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서류조사를 통해 내무성에서는 ‘죽도 외 일도’가 “우리 관도 안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없었다”<sup>96</sup>는 점을 확인하고,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태정관지령’이 나오게 된 경위를 내무성에서 나가사키현으로 고지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미 시마네현에도 태정관의 결정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나가사키현도 ‘태정관지령’의 “취지를 알고 계셔야 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었다.<sup>97</sup> 즉, ‘죽도 외 일도’(울릉도와 독도)는 메이지 정부의 관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태정관지령’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나가사키현도 이 결정에 당연히 귀속된다는 통지문을 내무성에서 송부한 것이었다.<sup>98</sup> 문의

96 각주 95번에 인용한 원문 안에 나오는 ‘詳明’은 모로하시 데쓰지의 사전에 나오는 의미 풀이로 ‘상세, 명료(상세하고 분명한 것)’를 참고하여 문맥에 맞게 번역하였다. 諸橋徹次, 1985, 『修訂版 大漢和辭典』卷10, 東京: 大修館書店, 458쪽 ‘詳明’ 항목, 덧붙여 원문의 ‘詳明ニサルニ付’에서 ‘サル’ 부분은 ‘セサル’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본의 경우 ‘詳明セサルニ付’라고 정서되어 있다 는 점도 소개해 둔다.

97 학술대회 발표 당시에는 “可被得其意”에서 ‘被’자를 ‘然’으로 판독하여 ‘然るべし’로 해석하였으나, 좀 더 문서 원본 상태가 잘 보이는 마이크로필름 버전의 문서를 열람하고 원문을 대조해 본 결과 ‘被’자임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은 토론자인 방광석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사의를 표하며, 해당 부분을 “其の意を得らるべし”로 읽고, 번역을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98 ‘태정관지령’ 내용은 1881년 11월 29일 내무권대서기관(內務權大書記官) 니시무라 스테조(西村捨三)가 외무서기관(外務書記官)에게 보낸 공문의 별지 갑호(甲號)에도 사본이 실려 있다. 이 문서의 제목 「日本海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針」 바로 밑에는 “外一嶋ハ松嶋ナリ”라고 주기(朱記)를 하였다. 이 문서는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유미림 등이 주목하여 소개, 분석한 적이 있다. 문서의 수신자인 우대신(右大臣) 아래로 “附箋書類 糶ス”란 문구가 괄호 안에 주기에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죽도 외 일도’가 첨부지도 「磯竹島略圖」에도 표기되어 있듯이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정관지령’이 시마네현과 내무성을 통해 접수한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나왔음을 내무성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물론 나가사키현령이 제출한 청원서에서는 ‘송도’란 이칭(異稱)으로 울릉도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기타자와 마사나리가 작성한 「竹島版圖所屬考」(1881년 8월 20일 조서)에서 “竹島一名은 磯竹島 또는 松島라 칭한다. 한국명은 蔚陵島 또는 芋陵島라고 칭한다”라고 적은 대목도 울릉도를 가리키는 여러 명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서술로 볼 수 있다. 덧붙여 니시무라의 공문과 별지 갑호, 을호 두 종류가 모두 내무성 패지에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부연해 둔다. 별지 두 종은 동일한 필체의 문서로, 다케우치도 지적하였듯이(논문 51쪽) 내무성에서 외무성에 참고용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무성 관리가 별도로 작성한 사본으로 보인다. 별지 을호 「日本海内松島開墾之儀ニ付伺」는 시마네현령 사카이 지로(境二郎)가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와 농상무경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에게 보낸 문서이다. 이것이 정본이라면 시마네현 패지에 현령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니시무라의 공문처럼 문서 도입부에 접수부서와 접수일자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卷1, 公第2277號 1881년 10월 7일 外務卿 井上馨一太政大臣 三條實美 別紙「竹嶋版圖所屬考」 및 島地第1114號 1881년 11월 29일 內

하였던 기타시마 현령도 태정관의 ‘지령’ 내용을 숙지하고 여기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회신이었다. 이 문서 서두에서 ‘오키노쿠니 북방에 있는 송도 건’이라고 한 대목은 기타시마 현령이 문의하였던 공문 내용을 가리킨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공문에 첨부한 「송도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의 내용까지 아울러 보더라도 ‘송도’는 울릉도를 가리킨다.<sup>99</sup> 시마네현과 달리 나가사키현에서는 ‘송도’라고 지칭하였으나, 내무경은 이것이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칭하였더라도<sup>100</sup> 모두 태정관지령에 귀속되는 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키노 내무경이 나가사키현령에게 보낸 이 회신은 ‘태정관지령’이 일본 정부 안에서 효력을 갖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죽도 외 일도)가 일본 판도 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만큼, 두 섬 가운데 울릉도에 대하여 이칭(異稱)으로 개척을 새로 청원하더라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었다. 덧붙여 내무경의 회신 공문을 조선으로 파견된 하나부사가 입수하여 갖고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내무경의 지시사항을 외무성 내에서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부사는 서론에서 짧게 언급하였듯이 조선으로 건너가 개항장 선정과 공사의 한성 상주 문제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송도’를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거론하였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송도(즉 울릉도)와 우리 쓰시마가

務權大書記官 西村捨三 → 外務書記官; 竹内猛, 2011, 「『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竹島問題研究会中間報告書「杉原レポート」批判—」, 『郷土石見』 87; 유미림, 2015, 앞의 책, 138~143쪽.

99 1883년 10월 울릉도로 무단 도항한 일본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울릉도까지 출장을 나간 내무성 관리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도 “울릉도, 일본에서 송도(松島)라고 칭하는 곳은 조선국 소속이므로 일찍이 포달이 있었다. 섬에 있지 않도록 속히 귀국해야 한다”면서 퇴거 조치를 취하였다(『鬱陵島紀行』, 『朝野新聞』 1883년 10월 31일 1면). 이때 히가키가 데리고 온 255명의 일본인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조서(調書)에도 목재 벌목과 운반을 담당한 인부들은 도항지였던 울릉도를 ‘송도’라고 지칭하였다. 박한민, 2020, 「1883년 덴주마루(天壽丸)의 울릉도 목재 불법반출과 조일 간 반환 교섭」, 『史叢』 99, 242~243쪽.

100 조선인들은 울릉도라고 부르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 섬을 ‘죽도’ 또는 ‘송도’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점은 히가키 내무소서기관의 파견 당시 일본의 신문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朝鮮出張』, 『自由新聞』 1883년 9월 22일 2면; 『日本立憲政黨新聞』 1883년 9월 26일 2면.

있는데, 현재 러시아령(魯嶺)을 왕래하는 선박이 반드시 경유하는 곳”으로, “만약 불행하게도 타국인이 점거한다면 양국에 방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요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 러시아와 영국 병력이 충돌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각국이 주목하는 함경도 문천군의 영흥만을 차지하기 위해 영리가 반드시 다투게 된다고 전망하였다.<sup>101</sup> 이것은 “화가 동양(東洋)에 전가되는 것”으로, 조선과 마주하고 있는 일본에도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sup>102</sup>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나부사는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여파가 지리적 요충지인 울릉도와 영흥만에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선 측에 주의를 촉구하였던 것이다.<sup>103</sup> 러시아의 동향은 일본의 관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나가사키를 들렀을 때 하나부사가 기타시마 현령에게서 ‘송도’ 개척과 관련된 문의와 내무경의 회답 공문을 입수하여 사본으로 별도 보관한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 V. 나가며

이 글에서는 1870년대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청국과 조선, 러시아로 오고가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과 깊이

101 와타나베 히로모토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로에서 가까이 있으며, 영국과 러시아가 빈번하게 주목하는 긴요한 곳이란 점을 거론하였다. 하나부사가 제시한 의견과도 유사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송도’와 ‘라자레프항’과 관련된 정보를 이들 사이에 긴밀하게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渡邊洪基 述, 「松島之議」, 『渡邊洪基松島之議 稿本』(Ref. B11091460400: 0209).

102 代理公使 花房義質 → 禮曹判書 趙寧夏, 「公使入京駐留一件」附屬甲號, 앞의 자료.

103 1882년 7월 임오군란이 발발한 직후,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하나부사에게 내린 비밀훈령에도 조선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송도’나 ‘거제도(巨濟島)’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양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7조에 들어 있다. 여기서 거론된 ‘송도’는 하나부사가 조영하에게 언급한 ‘송도’와 동일하며, 이것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1882년 8월 2일 外務卿 井上馨 → 辦理公使 花房義質, 「內訓條」, 『花房義質關係文書』 403-11(M/F 119); 『日韓外交資料集成』 卷2(金正明 編, 東京: 巖南堂書店, 1966), #24 內訓條, 129쪽.

연관되어 있던 인물들이 남긴 공문서와 편지, 신문기사에 언급된 울릉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무역사무관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재하였던 세와키 히사토는 부임 이전부터 조선과 청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본이 이들 국가를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시찰과 무역사무관 부임은 그가 갖고 있던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선박 안에서 당시 ‘송도’로 일컬어지던 울릉도를 목격하였고, 무토 헤이가쿠 및 김인승과 교류하는 가운데 이 섬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것을 데라지마 외무경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사실이 그가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개척 구상을 나가사키현령 기타시마 히데토모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교환하였다. 기타시마가 ‘송도’ 개척 문의를 내무성에 제출한 것도 결국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항해 도중에 선원과 선객이 울릉도를 동해상에서 목격하기 쉬워졌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청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영자 신문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에 울릉도를 목격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이 무렵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였다는 소식도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던 이들에게 인지되었던 만큼 울릉도 개척 청원을 자극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하나부사 문서에 나가사키현령의 울릉도 개척 청원 관련 문서가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타시마가 열두 가지 항목에 걸쳐 제시한 개척 구상이 기존에 나온 청원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나가사키현령이 내무성에 제출한 ‘송도’ 개척 문 의와 「송도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은 나가사키현에서도 울릉도 개척 건에 관심을 갖고, 다른 현에 앞서 선점하면서 개발 이익을 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잘 보여 주는 문건이다. 하지만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기타시마의 문 의에 대하여 ‘태정관지령’으로 시마네현에 ‘죽도 외 일도’(울릉도와 독도)가 “본방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음을 전달해 두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결정한 취지를 숙지하고 여기에 마땅히 따

라야 한다고 회답하였다. 이것은 태정관에서 귀속 여부를 결정한 사안을 시마네현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대해 ‘송도’라는 이칭(異稱)을 사용하며 새로이 개척 청원을 제출한 나가사키현도 준수해야 함을 정확하게 통보한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의 구속력을 내무성이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시마네현 이외 지역의 지방관에게 확인해 준 문서란 점에서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기록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기타시마 나가사키현령이 정부에 제출하고 회신으로 받은 공문을 입수한 자는 당시 조선에 건너가 신규 개항장을 교섭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였다. 하나부사는 조선으로 건너가기 전 들른 나가사키에서 기타시마와 만났을 때 조선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문건을 필사하여 손에 넣었다. 또한 무렵 나온 내무성의 최신 결정사항이 담긴 공문을 외무성 관리가 바로 입수하였다는 점은 외무성 내에서도 이 내용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송도’ 개척에 의견을 제시한 기록국장 와타나베와 하나부사가 긴밀하게 교류하던 친구 사이란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묘한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울릉도 개척 청원에 관여하였던 관리 기타시마와 세와키는 1878년을 넘기지 못하고 둘 다 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태정관지령’의 결정사항을 거론하며 나가사키현의 울릉도 개척 청원 건을 각하한 오후보 내무경도 이해 5월 암살을 당하였다. 외무성과 내무성에서 모두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일본 상인들은 울릉도 개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1878년 8월 15일 세와키 무역사무관에게 ‘송도’ 개척 청원을 제출하였던 사이토와 시모무라는 이듬해 6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하는 크릴호에 승선하였다. 다음 날 오전 11시 울릉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거리에 근접하였고, 오후 4시 섬에 도착하였다. 시모무라가 남긴 「송도일기」에는 섬에 상륙한 후 목격한 조선인들의 거처와 모습이 담겨 있다.<sup>104</sup> 울릉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조선인들은 “바위굴의 측면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나뭇가지와 잎사귀 등으로 가

104 “松島日記(松島日誌前々號の続き)”, 『西海新聞』 1879년 10월 1일 3면.

려 겨우 비와 이슬을 피하는 임시 가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근처에는 전복 껍질과 물새 깃털이 많이 버려져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목격한 바를 서술하였다. “길이 5칸(間) 정도, 너비 1칸 반 정도로 나무못으로 만든” 조선배를 두고 일본 선박에 비해 ‘크게 졸렬’하다고 평가하였다. 울릉도 서북쪽에도 조선 어민들의 ‘임시 거처’가 있고, 산악 정상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도 목격하였다.<sup>105</sup> 조선인들이 식사하는 곳까지 다가간 시모무리는 조선인들에게 조죽(粟粥)과 바닷물에 찢 전복을 얻어먹었다. 거적에 말리고 있는 인삼, 벌목하고 남은 무수한 그루터기까지 둘러본 후 저녁 8시 40분 울릉도에서 출발하였다. 시모무리가 견문하고 기록한 내용은 울릉도로 건너가 거처를 마련하고 벌목 작업, 인삼과 전복 채취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던 조선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인들은 울릉도를 오가며 섬 곳곳을 자신들의 생활공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까지 무단으로 침범해 오는 빈도가 증가하자,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여기에 항의하며 일본인들의 퇴거를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이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보낸 조회가 대표적이다.<sup>106</sup> 그러면서 1882년 들어서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할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파견한 관리가 바로 울릉도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었다. 이어서 조선 정부는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김옥균(金玉均)을 새로 임명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동남 연안 도서의 자원 개발과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정부는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입각한 영토 주권을 도서(島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105 “松島日記(松島日記前々號の続き)”, 『西海新聞』, 1879년 10월 6일 3면.

106 『禮曹判書以蔚陵島伐木禁斷事送外務省書』, 『啓下書契冊』, 卷1(古5710-9).

## 참고문헌

### 1. 자료

- 『국역 조선사무서(1)』(김종학·김홍수 번역, 2021, 부산광역시).
- 『啓下書契冊』 卷1(古5710-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독도자료집 II : 竹島考證』(정영미 편집 및 번역, 2006,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 III-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礮竹島覺書·公文錄·太政類典-』(김관원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
- 『鷄林事略 初編』 卷1·2(瀨脇壽人·林深造, 1876, 吉田清兵衛 發兌).
- 『渡邊洪基松島之議 稿本』(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JACAR Ref. B11091460400).
- 「露國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瀨脇壽人赴任ノ件. 明治九年」, 『露領浦潮港駐劄日本貿易事務官任免更迭雜件』(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JACAR Ref. B16080263600).
- 『明治十年朝鮮差遣ノ際ノ日誌及雜記』(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 「明治十年花房代理公使使鮮日記」, 『日本外交文書』 卷10(日本外務省 編, 1949,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寺島宗則研究會 編, 1987, 東京: 示人社).
- 「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卷一」,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國領「ボシエット」へ派出一件』(JACAR Ref. B16080698700).
- 『日韓外交資料集成』 卷2(金正明 編, 1966, 東京: 巖南堂書店).
- 『資料 榎本武揚』(加茂儀一 編集·解説, 1969, 東京: 新人物往來社).
-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卷1·5(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문서 분류번호 3門-8類-2項-4號).
- 『朝鮮見聞錄』 上(佐田白茅 輯, 1875, 東京: 玉山堂).
- 『朝鮮外交事務書』 卷1(韓國日本問題研究會 編, 1971, 成進文化社).
- 『蔚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JACAR Ref. B11091460000).
-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卷2(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JACAR Ref. B03030184900).
- 『花房文書』 卷5(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花房義質關係文書』(東京: 北泉社 발행 마이크로필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縣令北島秀朝關係書簡集』(縣令北島秀朝關係書簡集 編輯委員會 編, 1991, 栃木県: 馬頭町).

『読売新聞』, 『東京日日新聞』, 『山陰新聞』, 『西海新聞』, 『朝野新聞』, 『自由新聞』, 『日本立憲政黨新聞』.

*The North China Herald.*

## 2. 논문 및 단행본

구양근, 1997,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瀬脇壽人と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研究』 7.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지, 구양근 역, 1997, 「블라디보스토크 건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김수희, 2015,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獨島研究』 19.

金義煥, 1964, 『朝鮮對日交渉史研究』, 通文館.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 2021, 「임오군란 전후 일본의 울릉도 침범」, 『한국학논집』 83.

박한민, 2018, 「1875년 윤요호 사건의 전개와 강화도 방어」, 『19세기 서구열강의 침입과 강화해양관방체제』, 인천: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_\_\_\_\_, 2020, 「1883년 덴주마루(天壽丸)의 울릉도 목재 불법반출과 조일 간 반환 교섭」, 『史叢』 99.

신용하, 2020,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 중』, 동북아역사재단.

유미림·박지영·심경민, 2014,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2015,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이성환, 2016, 「태정관과 '태정관지령'은 무엇인가?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 『獨島研究』 20.

이성환·송희영·오카다 다카시, 2016,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사.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정태상, 2020, 『독도 문제의 진실』, 만권당.

최철영·유미림, 2018,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 - 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3-4.

-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 大日方純夫, 2016, 『「主權國家」成立の内と外』, 東京: 吉川弘文館.
- 瀧井一博, 2016, 『渡邊洪基』,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毛利敏彦, 1974, 「万邦對峙(1868-1876)」, 信夫清三郎 編, 『日本外交史』 I, 東京: 毎日新聞社.
- 石原俊, 2007, 『近代日本と小笠原諸島』, 東京: 平凡社.
- 安岡昭男, 1998,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_\_\_\_\_, 2002, 『幕末維新の領土と外交』, 大阪: 清文堂出版.
- 歴史學研究會 編, 1997, 『日本史史料: 近代』, 東京: 岩波書店.
-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の発見とその領有」, 『青丘學叢』 3.
- 竹内猛, 2011, 「「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竹島問題研究会中間報告書「杉原レポート」批判—」, 『郷土石見』 87.
-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청국 상하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기항지였던 일본 나가사키에 주목하여 이 지역과 관련된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공문서를 검토한다. 여기서 주목한 인물은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나가사키현령 기타시마 히데토모(北島秀朝), 조선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이다.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선박에서 당시 '송도'라고 불리던 울릉도를 목격하였다. 그는 무토 헤이가쿠, 김인승과 교류하는 가운데 울릉도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외무경 데라지마 무넨노리에게 지속적으로 개척을 건의하였다. 기타시마는 세와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송도'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내무성에 '송도' 개척을 문의하였다. 그가 구상한 '송도' 개척 계획에는 나가사키현이 주도하여 개발 이익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태정관지령을 시마네현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결정한 취지를 나가사키현도 잘 알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회답하였다. 태정관에서 자국의 판도를 정한 결정이 시마네현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내무경이 공문을 통해 지방관에게 확인해 준 문서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나가사키에 들렀을 때 이 공문을 입수한 자는 당시 조선에 건너가 새로 개항장을 설정하는 교섭을 담당하였던 하나부사였다. 내무성 결정사항이 담긴 공문을 외무성 관리가 바로 입수하였다는 점은 외무성 내에서도 이 내용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울릉도, 태정관지령, 나가사키, 세와키 히사토, 오쿠보 도시미치, 하나부사 요시모토, 기타시마 히데토모, 블라디보스토크, 독도

## ABSTRACT

Ulleungdo Development Petition in Japanese Records and Nagasaki Prefecture in the 1870s

Park, Han mi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Nagasaki, Japan, which was a treaty port connecting Shanghai in Qing China and Vladivostok in Russia, and reviews the records and official documents left by people related to the region. Attention was paid to Sewaki Hisato (瀬脇壽人), Trade Officer of Vladivostok, Kitashima Hidetomo(北島秀朝), the governor of Nagasaki Prefecture (長崎縣令) and Hanabusa Yoshimoto(花房義質), Japanese Chargé d'affaires in Joseon. Sewaki witnessed Ulleungdo, then called "Matsushima(松島)," on a ship bound for Vladivostok. While interacting with Muto Heigaku(武藤平學) and Kim Inseung(金麟昇), he solidified the idea of pioneering Ulleungdo and continuously proposed his idea to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Gaimusho), Terashima Munenori(寺島宗則). Kitashima contacted Sewaki and obtained information about Ulleungdo, and asked the Japanese Home Ministry(Naimusho) to develop the island. In his plan for developing "Matsushima," the intention of Nagasaki Prefecture to preoccupy profits from the development is well shown. Okubo Toshimichi(大久保利通), the Home Minister, mentioned that he had notified Shimane Prefecture of the Taijokan(太政官)'s decision about the demarcation of boundaries related to Ulleungdo and Dokdo in 1877, and replied that Nagasaki Prefecture should follow the decision. It is important that the Japanese Home Minister confirmed to the local government in an official document that it had defined the country's territorial boundaries to Shimane Prefecture and other regions. The person who obtained the document regarding Kitashima and Okubo when he stopped by Nagasaki was Hanabusa, who was in charge of negoti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treaty port after having crossed to Joseon at that time. The fact that an official document specifying the decision of the Home Ministry was immediately made available suggests that this information may have been shared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Keyword

Ulleungdo, the Taijokan decision, Nagasaki, Sewaki Hisato, Okubo Toshimichi, Hanabusa Yoshimoto, Kitashima Hidetomo, Vladivostok, Dokdo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송휘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1900년대 초 울릉도 사회구조와 어업
- III. 울릉도 닛쇼조합(日商組合)의 조직과 활동
- IV. 독도어장의 강치어업의 경합
- 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1890년 후반부터 일본인들의 울릉도 이주가 본격화되면 서 그들의 이익조직인 닛쇼조합(日商組合)<sup>1</sup>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울릉도 일본인의 사회양상을 조명하고, 당시 울릉도 거주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시기 울릉도·독도 어장을 둘러싼 경합관계를 파악하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에 의한 독도어장의 독점적 대하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어업과 독도 영토 편입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나카이가 독도(りやんこ島)를 한국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고자 일본 정부에 알선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2</sup> 한말 일본의 자원 침탈이라는 관점에서 울릉도 사회와 어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박병섭(2009),<sup>3</sup> 유미림(2018)<sup>4</sup>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카이의 독도에 관한 지식의 형성에 관해서는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04~1906년에 생성된 독도어렵자료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나카이에 의한 독도어장 독점과정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883년 3월 태정관 유달(太政官諭達)에 의해 「울릉도도항금지」(제3차)가 발령되고 그해 9월 울릉도에 벌목 등으로 잠입해 왔던 일본인 254명이 철수

\* 논문 투고일: 2022.4.25, 심사 완료일: 2022.5.31, 게재 확정일: 2022.6.8.

\* 이 논문은 2022년 2월 28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가필·수정한 것이다.

1 닛쇼조합은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자치조직으로 1901년 8월 8일에 발족하였다. 울릉도 도동항 등에 계절적 거주를 하는 일본인들 중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당시 경찰 등 치안에 관련하는 조직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조직으로 발족하였다.

2 김수희, 2014,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제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67~108쪽.

3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유미림, 2018, 「현지조사로 밝혀진 대한제국기 울릉도 현황과 일본의 자원 침탈」, 『해양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57쪽.

5 박병섭(2009)은 일본어민의 어업자원 침탈을 시기별로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유미림(2018)의 경우 울릉도 자원의 전반적인 침탈 상황을 11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면서 1880년 전후 울릉도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일본인들의 철수가 완료되었다.<sup>6</sup> 그러나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대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통상장정(通商章程)」(1883.7)<sup>7</sup>의 비준에 의해 울릉도에서 가까운 오키 섬(隠岐島) 등에서 울릉도로 출어하는 일본어민의 출현이 잦아졌다. 1860~1883년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은 목재의 벌목 및 약간의 어업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1892~1910년에 울릉도로 잠입한 사람들은 수산자원의 채취라는 어업적 목적이 주된 것으로 부수적으로 벌목 및 제재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이었다. 잠시 울릉도는 산음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있었지만, 이러한 침목을 깨고 울릉도어장으로 출어한 자가 1892년 오키(隠岐)의 도젠(島前) 우기촌(宇賀村) 출신의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였다. 그는 울릉도와 시마네반도 미호제키 등에서 잠수기어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울릉도에서 오징어어업과 독도에서 강치잡이 등에도 종사하였다. 와키타는 1890년대에 가장 먼저 울릉도에 정착하였고,<sup>8</sup> 그것을 계기로 1898년에는 200여 명의 일본인이 잠입하여 도동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sup>9</sup> 이런 과정에서 불량한 일본인의 출현과 목재의 벌채 및 밀매 등에 종사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빈번히 있었다.<sup>10</sup>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닛쇼조합(日商組合)이다. 당시 울릉도 일본인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도젠 출신자들과 도고(島後) 출신자들이 대립하였고 그들에 의해 울릉도·독도 어장의 각축이 있었다. 독도 편입 및 독도어렵권에 대한 나카이의 의한 독점은 이러한 경합과정에서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6 송휘영, 2015,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함금지령」, 『독도연구』 제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96~101쪽 참조.

7 정확히는 「在朝鮮国日本人通商章程」이라는 불평등 조약으로, 규칙 제41조에 의해 일본어선은 조선의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박병선, 2010,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1号, 4~6쪽 참조.

8 福原裕二, 2011, 「20世紀初頭の鬱陵島社会」,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21號, 48쪽 참조.

9 박병선, 2010, 앞의 글, 16쪽 참조.

10 박병선, 2010, 위의 글, 16쪽.

본고에서는 일본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을 한말 울릉도·독도 어장을 둘러싼 경합과정을 통해 당시 울릉도 일본인의 사회경제상을 재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카이가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고 왜 독도어장을 독점하고자 했는가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카이의 영토 편입 청원과정, 일본인의 울릉도어장 진출 배경 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sup>11</sup> 나카이와 일본인 어업자의 어장 경합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장 경합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나카이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II. 1900년대 초 울릉도 사회구조와 어업

1983년 3월 일본 정부의 「울릉도도항금지령」 발령과 일본인 전면 철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본인의 발길이 끊기는 듯했던 울릉도에 1888년에 이르러 또다시 일본인 전복어민이 잠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9년 여름에는 전복 채취를 하는 대규모 어선 186명이 24척의 배로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일본제국의 대륙진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함부로 상매행위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유로 울릉도장에게 적발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통상장정」(1883)의 치외법권 규정에 의해 조선 조정에서도 맘대로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1889년 11월 「통어장정」이 체결되었고, 이 장정에서는 일본영사가 발행하는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일본어선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4도 바닷가 3해리 이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을 빌미로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이 다시 본격화되었

11 김수희, 2010,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제5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27~156쪽 및 김수희, 2014, 앞의 글 참조.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던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인 잠입자는 7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부터 일본인들이 다시 공공연히 불법 침입하여 삼림 벌채까지 자행함으로써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대한제국 성립 후 광무3년(1899) 5월 중앙정부는 배계주를 도감으로 재임명하여 부임시킬 때 부산항 세무사를 동행하게 하여 일본인의 침입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sup>12</sup> 1896년 무렵부터 일본에서 울릉도로 건너온 도항자가 급증하여 1899년에는 200여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당시 이들 일본인들은 대개 벌목에 종사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표 1). 그 이전에 울릉도에서 행하였던 규목도 벌이 금전적 이득이 크다는 것이 학습효과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울릉도개척령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그 경과

연도	내역	근거(출전)	비고
1883.7	「조일통상장정」 체결	舊韓國外交文書	
1888	일본인 전복어민이 울릉도 잠입	舊韓國外交文書	
1889.11	「조일통어장정」 체결 (4도 연안의 어업 허가)	舊韓國外交文書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연안
1889	일본인 잠수기어민이 울릉도 잠입	舊韓國外交文書	어부 168명, 어선 24척의 어선단
1891	일본인 잠입자 중 한 사람이 거주 시작(와키타 쇼타로)	舊韓國外交文書	오키 제재자 7명 잠입
1892	시마네현 평민 와키타 쇼타로 1인 거주	通商彙纂	
1895	일본인이 울릉도에 침입, 수피 채취자 발견	日本外交文書	
1896	청일전쟁(1895)을 계기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급격히 증가(200여 명)	韓國水産誌	주로 벌목꾼
1896.9	울릉도 및 압록강·두만강 삼림벌채권 러시아에 양도	舊韓國外交文書	
1898	도감 배계주 불법도벌 건으로 일본에 가서 소송 제기	日本外交文書	
1899.8	러시아가 일본 정부에 울릉도 삼림권이 러시아에 양도되었음을 알리고, 일본인의 벌목 금지 요청	日本外交文書	
1901.8	일본인 자치조직 닛소조합(日商組合) 성립	通商彙纂	
1902.4	부산 거류 일본경찰 3명(경부 1, 순사 2) 울릉도 파견	韓國水産誌	주재소 설치
1903	오징어어업의 가능성 발견, 이후 재류자 급증	韓國水産誌	
1904	독도에서 강치잡이 시작(울릉도 출어)	通商彙纂	어선 3척에 30명

12 「內部去來案(光武3年9月15日)」。『舊韓國外交關係文書』, 高麗大學校附設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1905.6	일본인 울릉도 체류자 366명(남 219, 여 147)	通商彙纂	
1907	일상조합을 폐지하고 일본인회로 전환, 회원 450명	韓國水産誌	
1909.12	일본인 거주자 768명(224호, 남 400, 여 358)으로 확대	韓國水産誌	한인 4,995명(902호)

자료: 송취영(2020), 256쪽에서 인용, 수정·가필하였음.

이렇듯 일본인의 잠입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된 계기는 1889년 오키 출신의 평민인 와키타 쇼타로가 끈끈이 채취를 위해 체류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이를 시작으로 벌목을 도모하는 일본인 거주자가 생겨났고, 이때 일본인들이 도벌한 목재는 모두 일본으로 불법 운송되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 내부에서 외부에 보낸 조회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섬 안의 규목 도벌에 그치지 않고 도민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난폭한 행위도 심하였다.<sup>13</sup> 이 시기 울릉도의 삼림이 상당 부분 남벌 되어 황폐화되었던 것이었다. 1896년 9월에 압록강, 두만강 및 울릉도 삼림벌채권이 러시아에 양도되어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인 벌목의 금지와 철퇴를 요구하였으나, 300여 명의 일본인은 그대로 울릉도에 잔류했다.

「조일통어장정」을 배경으로 하여 울릉도의 일본인 도항자는 서서히 늘어났고, 1892년에 이르러 오키에서 목수 여러 명이 도항해 와 마침내 임시 가옥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으로 울릉도에 거주한 것은 목수 겸 대장장이였던 시마네현(島根縣) 평민 와키타 쇼타로였다. 그렇지만 다른 일본인 도항자는 계절적 체류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한말의 일본인 도항자는 대부분 산림을 벌채하여 일본으로 운반·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일부 전복 채취를 위한 어업 등을 목적으로 오는 자도 있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울릉도에서 오징어어업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산음지방에서 도래한 어업 관련 체류자가 급증하였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강치어업을 나가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치포획은 주로 10명이 배 1~3

13 「内部去來案」(光武2年2月10·29日), 『舊韓國外交關係文書』,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척에 나누어 타게 되는데 1904년에는 3척의 배로 30명의 어부들이 출어했다고 한다. 즉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울릉도·독도에서 일본인의 자원 침탈은 삼림자원에서 수산자원으로 점차 변모하였고 어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본인 거주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 울릉도 재류 일본인 현별 인원수(1902년 5월 말 현재)

현 이름	사족(士族)		평민		합계		누계		
	남	여	남	여	남	여	실수	비율(%)	
북해도(北海道)			1	-	1	-	1	0,18	
나라현(奈羅縣)			1	-	1	-	1	0,18	
도쿄부(東京府)			-	1	-	1	1	0,18	
오사카부(大阪府)			5	2	5	2	7	1,28	
효고현(兵庫縣)			4	1	4	1	5	0,91	
나가사키현(長崎縣)			2	1	2	1	3	0,55	
니이가타현(新潟縣)			1		1		1	0,18	
후쿠이현(福井縣)			2	1	2	1	3	0,55	
<b>미에현(三重縣)</b>			<b>11</b>	<b>28</b>	<b>11</b>	<b>28</b>	<b>39</b>	<b>7,12</b>	④
시즈오카현(靜岡縣)			1		1		1	0,18	
시가현(滋賀縣)	1	-			1		1	0,18	
기후현(岐阜縣)			2		2		2	0,36	
이시카와현(石川縣)			1		1		1	0,18	
<b>시마네현(島根縣)</b>	1	-	<b>232</b>	<b>75</b>	<b>233</b>	<b>75</b>	<b>308</b>	<b>56,20</b>	①
<b>돗토리현(鳥取縣)</b>			<b>53</b>	<b>7</b>	<b>53</b>	<b>7</b>	<b>60</b>	<b>10,95</b>	②
오카야마현(岡本縣)			6	3	6	3	9	1,64	⑦
히로시마현(廣島縣)			12	1	12	1	13	2,37	⑥
야마구치현(山口縣)			7	3	7	3	10	1,82	
도쿠시마현(德島縣)			1		1		1	0,18	
고치현(高知縣)			1		1		1	0,18	
에히메현(廣島縣)			3		3		3	0,55	
후쿠오카현(福岡縣)			4		4		4	0,73	
사가현(佐賀縣)			2		2		2	0,36	
오이타현(大分縣)			22	3	22	3	25	4,56	⑤
<b>구마모토현(熊本縣)</b>			<b>43</b>		<b>43</b>		<b>43</b>	<b>7,85</b>	③
가고시마현(鹿兒島縣)	2				2		2	0,36	

미야자키현(宮崎縣)			1		1		1	0,18	
소계	4		418	126	422	126	548	100,0	
합계	사족		평민		합계		산음지방 : 70.0%		
	4		544		548		큐슈지방 : 14.6%		
							기타 계 : 15.4%		

자료: 송휘영(2020), 260~261쪽에서 인용, 수정·가필하였음.

1902년 5월 말 현재, 울릉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4,99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중 일본인 체류자의 수는 합계 548명으로 울릉도 인구의 약 12.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2)。 이때를 전후로 집계한 통계자료에서 일본인 거주자의 수를 250~350명 정도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수치는 계절적 체류자를 합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대부분 도동을 중심으로 집락을 형성하여 정착하였고(70%), 그 밖에 남양리, 통구미, 죽암 등지에도 5~9가구 20~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본인 체류자의 출신 부현별 내역을 보면, 시마네현이 56% 정도로 가장 많고(1위), 그 다음이 돗토리현으로 10.9%(2위), 큐슈의 구마모토현이 7.8%(3위)이며, 그 다음 미에현, 오이타현의 순으로 많다. 여기에서 미에현, 구마모토현 출신자의 대다수는 해녀·해사로, 어업을 목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야마구치현, 오이타현,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등의 출신자들은 주로 1880년 전후 시기와 같이 목재를 벌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시마네현 출신 거주자들 중 그 내역을 보면 오키 섬 출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도고(島後)와 도젠(島前) 출신별 분포가 40:60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를 보면 이들 체류자는 대부분 산음지방(돗토리, 시마네) 출신자들로 70%나 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어로목적의 도향자였지만 당시 대다수가 벌목을 목적으로 도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일본인 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 불량매가 더러 들어왔으므로 이들을 단속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들은 1901년 7월 닛쇼조합을 조직하여 체류 일본인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4명의 임원을 두고 이를 단속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고 종래의 단속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을 단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속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주재 경찰서에 요청하여 1902년 4월에는 경부 1명, 순사 2명의 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표 3) 울릉도 체류 일본인 직업별 인원수(1902년 5월 말 현재)

직업명	인원	비율	직업명	인원	비율	직업명	인원	비율	직업명	인원	비율
무역⑤	24	7.0%	중매	3	0.88%	잡화	5	1.46%	술소매	3	0.88%
과자	2	0.58%	생선	1	0.29%	일고④	33	9.65%	목수	4	1.17%
별목꾼①	95	27.8%	대장간	7	2.05%	이발	2	0.58%	농업	1	0.29%
목재	5	1.46%	잠수기	8	2.34%	어부③	60	17.5%	잡업	16	4.68%
해사*②	66	19.3%	끈꾼이	3	0.88%	신발	1	0.29%	만선**	3	0.88%
소계	192		소계	22		소계	101		소계	27	
합계	342	100.0%	* 해사(海士)=해녀(海女)와 같은 어부(蟹). ** 만선(鑿船)은 해사를 태우는 선주.								

자료: 송휘영(2020), 263쪽에서 인용, 수정·가필.

당시 울릉도의 상업현황을 보면, 이곳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인은 대개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은 드물고 화폐를 사용하는 대신 물물교환을 주로 하였다. 그러기에 서로 상매를 하는 경우 콩을 화폐 대신으로 사용했다. 한인을 위한 수입품은 견직물, 방적사, 인도 무명, 옥양목, 석유, 성냥, 술, 소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화류가 대부분으로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이윤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밖에 일본인 사이에 생활용품을 매매하는 정도였다. 그 시기 울릉도 수출품 중 대두, 완두, 소맥, 황백피, 약간의 끈꾼이는 한인에게서 산출된 것이고, 그 외에 일본인이 생산한 물품으로는 목재와 수산물 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울릉도 느티나무(槲木)는 해안에 가깝거나 운송이 용이한 장소에 있는 것은 모두 벌채해버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목재를 얻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목재를 제재하여 동동항까지 운반하는 데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할지라도 그다지 이윤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sup>14</sup> 그 당시 일본인들은 잣나무, 솔송나무, 덴포나시 등의 목재를 벌목하여 제재하

14 外務省通商局, 1902, 『通商彙纂』, 46쪽

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일본인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자(해사, 잠수기, 어부, 만선)가 137명(40.1%)으로 가장 많고, 벌목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자(벌목꾼, 목재, 목수)가 104명(30.4%)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아, 어업과 벌목이 당시 울릉도 거주자의 주된 목적(70.5%)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업 현황을 보면, 울릉도의 어로 시기는 매년 3~9월로 주요 수확물은 오징어, 전복, 미역, 김, 우뚝가사리 등 몇 가지 종류에 지나지 않았다. 어업지는 대개 구마모토(熊本)의 아마쿠사(天草), 시마네(島根)의 오키(隠岐), 미에의 시마(志摩)지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한인 어업자는 1902년 당시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매년 전라도 삼도(三島)지방에서 많은 어부들이 건너와서 울릉도 해역의 풍부한 미역을 주로 채취했다고 한다. 1902년 아마쿠사, 오키의 어업지는 모두 잠수기어선 8척을 보유하여 도동을 본거지로 정하였고, 또한 시마의 해사 배 2척, 아마쿠사의 잠수부 배 1척은 저동에 임시 움막집을 짓고 울릉도 해안 전역을 돌며 어로를 하였으나, 그해는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좋지 않아 별로 이윤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잠수기어업을 울릉도에 과다하게 투입함으로써 어족자원이 상당히 황폐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울릉도 오징어어업의 발견으로 인해 어업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게 된다. <표 4>는 1905년 당시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6월 현재 벌목 관련 직업(벌목꾼, 목수, 목공소, 목재상)은 73명으로 전체 일본인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어업 관련 직업(잠수업, 어부, 해사, 선승)은 96명으로 전체의 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02년과 비교해 보면 벌목과 어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벌목꾼의 비중이 낮아지고 어부·선승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목재 벌목과 잠수기어업에서 오징어어업(연안어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표 4〉 1905년경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4월	5월	6월	비율(6월)	순위(6월)
관리	3	3	3		
의사	1	2	2		
수입상	8	8	8		
수출상	5	5	7		
중매상	21	21	21	8.90%	⑤
도기상	2	2	2		
잡화상(荒物)	0	1	1		
석유상	1	1	1		
목재상	2	2	2		
목수	7	12	15		
목공소(指物)	3	3	3		
벌목꾼	43	50	53	22.5%	①
통집	0	0	1		
대장간	5	5	5		
날품	2	2	2		
음식점	1	1	1		
두부집	2	2	2		
농업	2	3	3		
잠수업	0	0	2		
어부	15	27	31	13.1%	③
해사(해녀)	0	32	32	13.6%	②
선승	0	31	31	13.1%	③
고용인	2	2	2		
노비	2	1	1		
화양재봉	2	2	2		
세탁	1	1	1		
세공장인	1	1	1		
숯	1	1	1		
우편수취소	1	1	1		
합계	133	221	236	100.0%	

자료: 「通商彙纂第」五十號, 明治三十八年(1905)에 의해 작성.

### III. 울릉도 닛쇼조합(日商組合)의 조직과 활동

앞에서 언급했듯이 1892년에 울릉도에서 거주를 시작한 사람은 오키 섬(隱岐島) 치부군(知夫郡) 우가무라(宇賀村, 현재 隱岐郡西ノ島町宇賀) 출신의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였다. 「통상회찬(通商彙纂)」에도 울릉도에 현재 첫 도항자로 목재업을 하는 시마네현 평민 와키타 쇼타로 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의 도항자는 길어도 7~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sup>15</sup> 또한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자료에도 울릉도에서 목재업을 하며 울릉도의 생산물과 교환하는 자료 소개하고 있다. 그는 처 기쿠(キク)와 함께 울릉도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시마네반도의 미호제키 부근에서 잠수기어업을 하다가 울릉도로 건너가 부산과 울릉도, 일본 산음지방을 오가면서 생활한 듯하다. 그의 거주를 계기로 울릉도와 비교적 가까운 오키의 도고와 도젠, 시마네현 등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이주하는 자가 점차로 늘어났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명 이상으로 일본인 체류자가 늘어났다. 불량한 자들이 들어와 울릉도사회에서 행패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이를 단속할 필요가 생겨났다.<sup>16</sup> 새로 울릉도로 도항해 오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로 무지몽매한 자로 자주 분란을 일으키고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속이는 일도 발생하였고, 심한 경우 흥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등의 일이 생겨도 이를 제지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제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 조합은 울릉도 닛쇼조합이라 칭하고 섬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합으로 조직사무소를 도항에 마련한다”<sup>17</sup>는 등 34개조의 규칙으로 구성된 합

15 外務省通商局編纂, 1902, 「今ヤ初航者ハ、僅ニ製材兼鍛冶業 島根県平民 脇田庄太郎一名現住シ、其他ノ渡航者ハ長クモ七八年二過キス」, 『通商彙纂』 第234号.

16 外務省通商局編纂, 1902, 「在留民ノ増加スルニ從ヒ不良ノ徒入込ミタルヲ以テ取締ノ必要起リ」, 『通商彙纂』 第234号.

17 外務省通商局編纂, 1902, 「1.本組合ハ鬱陵島日商組合ト称シ在島日人合議ヲ以テ組織事務所ヲ道洞ニ設ク」, 『通商彙纂』 第234号.

의제의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1901년 7월<sup>18)</sup>의 일이었다.

(표 5) 「통상장정」·「통어장정」 및 닛쇼조합 규칙에 나타난 주요 규정

구분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어장정」	닛쇼조합 규칙
성립 시기	1883.7.25	1989.11.12	1901.8.8
성격	국가 간 협정	국가 간 협정	울릉도 일본인 조직 내부규칙
구성	전문 42조[款]	전문 12조(條)	전문 35조(條)
주요 내용	① 4도 연안어업 허용, 협정 관세 ② 곡물수출 금지권 1개월 전 예고(방곡령) ③ 일본에 대한 통상 최혜국 대우	① 4도 연안 어업권 납세의무 ② 건망 및 어류가공을 위한 상륙권은 불인정 ③ 일본어민의 범죄는 영사재판 처리	① 자체 민사·형사재판 ② 조합원 외 상거래 불허 ③ 자체 죄인·체포 인도권
이주·어업 관련	통상·항행·측량 허용	연안어업·어민치외법권 허용	울릉도 내부 민사·형사 권한
비고	일본인의 자유로운 통상 허용	일본인 자유어업·치외법권 허용	일본인 자체 민사·형사 재판권

자료: 필자 작성

강화도조약(1876) 이후 조선의 개항은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수역의 어업 진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일본의 조업 종사자나 연승어업(延繩漁業), 어망어업(漁網漁業) 종사자는 물론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종사자까지 조선 해역으로 들어와 어로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 일본인 어민들에게 조선 해안에서의 어업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 1883년 7월 25일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었다. 이 「통상장정」의 제41관에 의해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 연안에서 일본인의 어로가 허락되었다. 또한 조선 아산은 일본의 히젠(肥前),<sup>19</sup> 치쿠젠(筑前),<sup>20</sup> 이와미(石見),<sup>21</sup> 나가토(長門),<sup>22</sup> 이즈모(出雲),<sup>23</sup> 쓰시마(對馬) 연안에서의 출어를 허가하였다. 이 제41관에는 어업활동에 관한 피차의 시행세목을 2년 후에 협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

18 조직의 설립은 1901년 7월이지만, '규칙'의 제정은 1901년 8월 8일임.

19 지금의 사가현(佐賀縣), 나가사키현(長崎縣) 일대.

20 지금의 후쿠오카현(福岡縣).

21 시마네현(島根縣)의 서부 지역.

22 야마구치현(山口縣) 북서부 지역.

23 시마네현(島根縣)의 동부 지역.

국 간에 협상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호혜주의에 입각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일본인조차 조업을 하지 않는 일본 서북해안에 어법이 뒤떨어진 조선어민이 출어할 리가 없었으므로 호혜주의를 가장한 불평등 조약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는 사실상 조선의 어장을 일본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을 조선 정부가 약속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에서 곡물수출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1개월 전에 미리 통지(방곡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관세주권을 규제하고 식량약탈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규정이었다(표 5 참조). 「통상장정」이 맺어지고 나서 7년 후인 1889년 11월 12일 전문 12조의 「조일통어장정」이 조인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조규」가 맺어지면서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통어장정」에 의해 일본인의 조선 연안 어업이 한층 더 용이해졌고, 이들에게도 치외법권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을 전후하여 조선 연안으로 출어하는 일본인이 급증하게 되었다. 우리 연안에서 조업하는 일본인 이주어촌의 형성은 이민자 모집 등 일본 정부의 정책적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일본 연해의 어민이 한층 자유로워진 조선 진출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건너오는 경우가 있었다. 울릉도 일본인 거주자의 경우 이들 두 가지의 계기가 결합된 형태로 건너온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천혜의 어항인 도동항을 중심으로 이주어촌을 형성하였다. 울릉도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온순하고 친절한 자가 많았지만, 일본에서 새로 건너오는 자들 중에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 불량한 무리가 많았다. 그리하여 만든 조직이 낮쇼조합이었다. 얼핏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치조직으로 보이지만, 민사적·형사적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체포하여 본국 경찰에 인계하는 권한을 갖는 조직이었다. 결국 형사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1902년에는 부산에서 경찰을 파견 받아 주재소까지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울릉도에 먼저 들어온 도젠(島前)의 와키타 쇼타로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었고, 또 하나는 도고(島後) 출신의 하타모토 기치쥬(旗本吉造)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었다. 전자를 와키타당(ワキタ党), 후자를 하타모토당(ハタモト党)이라 부를 만큼 두 그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에는 울릉도어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상업권 등이 있었지만, 두 개의 파벌로 분립되어 대립하다보니 난동을 피우는 자들에 대해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울릉도 사회의 문제가 차츰 불거지자 1901년에는 서로 양보하여 넛쇼조합을 조직하면서 대립도 서서히 해소되었다.

그해 8월 발족 단계에서 넛쇼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으로 하타모토 기치쥬, 부조합장 가타오카 기치베,<sup>24</sup> 이사 후카다 진타로, 와키타 쇼타로 등 12명이 이사로 모두 조합원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표 6〉 넛쇼조합 설립당시(1901.8.8)의 임원 명단

번호	직책	성명	출신	비고
1	조합장	하타모토 기치쥬(旗本吉造)	島後	
2	부조합장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	松江	
3	대표	후카다 진타로(深田甚太郎)		
4	의원(이사)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		
5	"	후루키 신사쿠(古木新作)		
6	"	나카니시 아키타로(中西秋太郎)		
7	"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	島前	
8	"	아마노겐쥬(天野源藏)		
9	"	가도 미즈타로(門満太郎)	島前	
10	"	이노우에 다이키치(井上太吉)		
11	"	후지노 긴타로(藤野金太郎)		
12	"	요시나미 오토지로(由浪乙次郎)		남양동 거주
13	"	다니 도미노스케(谷富之助)		황토구미 거주
14	"	요시이 도메지로(吉井留次郎)		창동 거주
총 16명				

자료: 『通商彙纂』, 外務省通商局(1902)에 의해 작성.

24 가타오카는 시마네현 마츠에 출신으로 당시 울릉도에 설치된 전신기지국의 직원이었음.

〈표 6〉을 보면 원래 16명의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기록에는 14명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듬해 조합장이던 하타모토가 울릉도에서의 생활을 접고 귀국하게 되자 와키타가 제2대 닛쇼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독도 불법 편입 후 1906년 3월 시마네현 일행의 독도시찰에 앞서 오키도청의 히가시 분스케(東文補)가 안내를 요청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보낸다.

올해는 대단히 강설량이 많아 독도(竹島)에도 지금 적설이 있으며 날씨가 나쁩니다. 그러므로 각 인민은 1일의 침구류(夜具)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sup>25</sup>

그런데 그의 답신의 주소는 울릉도가 아닌 ‘3월 17일 한국 부산 입장정 와키타 쇼타로(三月一七日 韓國釜山港入江町 脇田庄太郎)’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사업을 위해 부산에도 거처를 확보해서 산음지방과 울릉도, 부산을 다니며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서술하지만 당시 와키타는 독도 불법 편입 사실과 나카이의 독도어업권 대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독도어장의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1906년 3월 27일 시마네현의 조사단이 독도시찰을 거쳐서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3월 28일에 가타오카, 와키타, 요시오 등의 저택으로 나뉘어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 오쿠무라 헤키운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의 「죽도도항일지(竹島渡航日誌)」에 기록되어 있다.<sup>26</sup> 여기서 가타오카는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 와키타는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 요시오는 돗토리현 사이하쿠군(西伯郡) 요나고정에서 울릉도로 건너온 요시오 만타로(吉尾万太郎)이다.

닛쇼조합의 규칙을 보면 조합장, 부조합장, 대표 등 3명을 두고 13명의 명예직 임원을 두어 조합장과 대표를 보좌하고 조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

25 本年ハ非常之降雪ニテ竹島ニ於テハ今尚積雪アリ天氣甚シキ候然ルニ各人民一日ノ夜具の用意相成度此段申入候。三月一七日 韓國釜山港入江町 脇田庄太郎。

26 奥原福市, 1907, 『竹島及鬱陵島』報光社, 79쪽.

다. 위의 임원은 16명 중 14명으로 발족할 당시 2명은 결원으로 보인다.

제2조 본조합은 조합장, 부조합장, 대표(取締)의 3명을 두고 본조합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또한 공평무사하게 민사·형사 소송을 재판하고 상벌을 시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조합장, 부조합장, 대표의 아래에 명예직 의원 13명을 두고, 조합장 대표를 보좌하고 또한 본조합을 감독한다.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

제10조 본조합원으로서 한인과의 관계 및 거래상 그에 대한 소행이 너무 과혹하고 나아가 일반 조합원의 질서·안녕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조합원은 적극 간섭하여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 퇴출을 명해야 한다.

제11조 본조합은 상호신의를 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적 행위를 금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암암리에 타인을 비방(誹謗)이나 그릇된 소문(訛言)을 퍼트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의 위급함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여 피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 본규약의 발포 전후에는 물론 전조(前條)의 등기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 또는 구두로 하여 약정을 한 것에 대해 기소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재판 비용으로서 500문(文) 및 각 그 비용 1리(里)마다 200문(文)의 비율로 전납해야 한다. 조합장이 수리한 다음, 상당히 시급하게 판결을 내려준다. 그리하여 집세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집 자산 집행은 1명을 사무소에서 통과해야 한다.) 이 비용은 경매입회자의 일당과 같다. 단, 본조의 비용 및 경매입회자의 일당 즉 1일 500문(文)씩은 추후에 패소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앞의 2조의 경우에 피고인이 1주간 지불해야 할 식료 및 기후에 상당하는 의류 한 벌, 침구 또는 취침할 정도의 방 하나를 제외한 이외의 동산 일체를 차압해야 한다. 단, 차압하는 물건이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료한 것은 이것을 돌려보내야 한다.

제15조 만약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사기로 재산을 취한 죄가 된다. 또한 피

고의 의뢰를 받아 보좌하는 자는 공범자로 하여 한 등급(一等)을 감한다. …

제17조 범칙자를 밀고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 사무소에 제소해야 하며, 사무소는 이 제소자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그 범칙에 의해 얻은 물건 또는 벌금의 5할 이상을 밀고자에게 준다.

제18조 도동에 한 개의 익명 투서함을 설치하여 일반의 범칙자가 안녕에 장애를 끼치는 건, 전염병 환자 은폐 등을 투서하게 한다. 대표(代表)는 때때로 개합하여야 한다. …

제25조 조합장, 대표 등의 판결을 부여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창하는 자는 더욱이 의원 반수 이상 합의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한인 등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발작물을 망가뜨리고 부녀자에게 음란하게 건네는 언어 및 행동을 하는 자는 정황에 따라 추방(退韓)을 명할 수 있다. …

제31조 중죄를 범한 자는 체포하여 일본으로 호송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인도해야 한다. (밀줄은 필자)

여기에서 보면, 상업적 이권이나 민사, 형사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닛쇼 조합은 이 규칙에 의해 자치적 재판과 상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적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울릉도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경제적·형사적 사건을 일으킨 자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 비용 부담까지 명시하고 있다. 경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추방을 하고 상해,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자는 체포하여 일본으로 호송하거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닛쇼조합은 1907년 ‘일본인회(日本人會)’를 조직하면서 폐지되는데 당시 일본인회 회원 수는 450명이나 되었다.

#### IV. 독도어장 강치어업의 경합

나카이 요자부로는 그가 남긴 문서에서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 움막집을 짓고 강치잡이에 종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이시바시 쇼타로(石橋松太郎),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등 오키의 구미(久見)에서 활동하는 어업자<sup>27</sup>들이 이미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이고(西郷)로 이주하여 있었던 나카이는 후발주자로 독도의 강치어업에 참가하게 된다.<sup>28</sup>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1903년 5월 6일 사이고항을 출발하여 당일 독도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10일이나 늦게 이시바시조(石橋)의 일원으로 하시오카 도모지로가 도착하였다. 이시바시조는 나카이보다 적은 인부로 2배 이상의 생산량을 획득하였다. 이때 10일 이상의 체류에서 상호 간의 정보는 서로 주고받았다. 충성이 한 번 울리게 되면 강치가 다시 군집하기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 출어한 나카이로서는 이듬해 전년도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4월 11일 독도로 출어하였다. 이번에는 이미 세 개의 작업조가 먼저 와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표 7〉 1904년 4~5월 독도 강치잡이 출어현황

번호	도항시기	출어자(출신)	인원수(人夫)	선박 수(獵艇)	출항지	비고
1	3월 말	石橋松太郎組(五箇村大字久見)	6	2척	島後久見	1903년 출어
2	3월 말	井口龍太組(周吉郡中村大字港)	4	2척	島後中村	1903년에는 石橋組로 출어
3	3.7	岩崎某組(山口県)	한인 수명	2척	울릉도	1903년 출어(추측)
4	4.11	中井養三郎組(西郷町大字西町)	7	2척	島後西郷	
5	4.12	加糖重造組(西郷町大字西町)	7	2척	島後西郷	
합계			약 31명	10	-	

자료: 「中井養三郎竹島海獵調査」, 『竹島關係涉外綴』(1904)에 의해 작성.

27 이들 구미(隱岐島五箇村久見) 어민들은 1900년경에 이미 자본과 노동력을 출자하는 주식조합으로 강치어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수희, 2010, 앞의 글, 127~156쪽 참조.

28 김수희, 2010, 위의 글, 135쪽.

여기에는 도고 구미에서 출어한 이시바시조와 이구치조(井口龍太組), 울릉도에서 한인들을 인부로 고용하여 건너온 아마구치현 출신의 이와사키조(岩崎組)도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이고에서 출어한 가토 주조(加糖重造)가 두 척의 배로 강치잡이를 하였다. 나카이를 비롯하여 다섯 개의 작업조가 서로 경쟁적으로 강치잡이를 하였던 것이다. 구미의 작업조 등 다른 그룹의 어민들에게 강치어업에 관한 정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이와사키조에게서 이 ‘리양코 섬’이라 불리는 독도의 소속과 관련 정보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를 독점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1904년의 출어기에는 경쟁자가 더 늘어났고 함께 30여 명의 어민이 총 10척의 배로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독도어장을 독점하는 방법은 도쿄로 가서 일본 정부를 움직여 조선 정부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받는 것이라 판단하고 움직이게 된 것이다. “나카이가 리양코 섬을 한국의 영토라고 믿고 한국 정부에 대해 받고자” 농상무성의 수산국장을 만나러 가게 된다. 여기서 나카이가 독도(리양코 섬)를 한국영토라고 믿었던 것에는 ①해도(海圖)에 의한 정보, ②수로지에 의한 정보, 그리고 ③독도어업을 통해 만났던 어업자들에게 받은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 나카이는 농상무성, 외무성, 내무성의 협력을 얻어 「리양코 섬 편입 및 대여원」을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1905년 1월 말 각의결정을 거쳐 2월 22일 독도의 시마네현 불법 편입이 진행되었다. 독도 편입 절차가 끝난 이후 독도 편입 및 독도의 강치잡이가 유망하다는 정보가 관련 어민들에게 알려졌고 편입 조치 이후 13건이나 독도 강치어렵에 대한 청원이 쇄도하였는데, 청원자는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가토 주조(加糖重造) 등이었다.

1905년의 여기에도 독도 강치어렵에의 관심은 더욱 가속되었다. 이번에는 작업조가 4조나 더 늘어난 것이다. 아마도 독도 편입의 정보가 다른 어민들에게도 전달된 듯하다. 나카이 등이 설립한 죽도어렵합자회사가 독도 어렵권의 감찰을 받은 것이 6월 5일이었으므로 3~4월의 여기에 더욱 많은

##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표 8) 1905년 3~9월 독도 감치잡이 출어 현황

번호	도항시기	출어자(출신)	인원수(人夫)			선박 수 (獵艇)	강치 포획 두수	출항지
			일본인	한국인	계			
1	3.30	橋岡友次郎(久美見組)	11(6)	-	11	1척	228	島後久見
2	3.7	岩崎組(山口県岩崎某)	4(3)	7	11	2척	約200	울릉도
3	4.11	飯美村組某(飯美村某 外二名)	9(7)	-	9	2척	350	島後飯美
4	4.12	井口組(井口龍太·永 海寬一)	14(12)	-	14	2척	300	島後久見
5	4.14	脇田庄太郎(宇賀脇田 組)	4(3)	6	10	2척	200余	울릉도
6	4.14	浦郷組(浦郷村門某外 二名)	9(7)	3	12	2척	200余	울릉도
7	4.10	下西組(下西村某西町 石井某外二名)	9(8)	-	9	2척	200余	島後下西
8	6.4	赤崎組(鳥取県赤崎淺 本某等)	9(8)	-	9	2척	50	鳥取県 울릉도
합계 (A)			69(30)	16	85	15	1,728	
울릉도출항자 합계 (B)*			26(21)	16	42	8	650	
9	3.10~9.8	竹島漁獵合資会社(C)	4(3)	-	4	2척	1,009	島後西郷
울릉도 출항자 비율(B/A)			38.0%	100.0%	49.4%	53.3%	37.6%	
총계 (D=A+C)			73(33)	16	89	17	2,737	
죽도어렵합작회사 비율 (C/D)			-	-	4.5%	11.8%	36.9%	

자료: 1) 「竹島海驢実況覚書」, 『竹島關係涉外綴』(1905)에 의해 작성.

2)\*는 돗토리현(鳥取県) 아카사키조(赤崎組)를 울릉도 출항자로 간주한 숫자임.

3) 나카이(中井)의 죽도어렵합작회사가 독점적 죽도어렵권(감찰)을 허가받은 것은 1905년 6월 5일.

17척의 배에 89명이나 되는 어민들이 독도로 몰려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에서 출어하는 자가 현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1905년 여기에 출어한 어민들이 그 인원수나 선박 수를 보더라도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치포획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장비의 부족 때문인지는 모르나 강치포획 두수를 보면 전체의 36.9%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울릉도에서 출어한 자들은 아마구치현 출신의 이와사키 아무개(岩崎某),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 가도 아무개(岩崎某) 등이었다. 이들 작업조에 승선하여 온 한국인들은 16명이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독도 강치

어업을 둘러싼 출어경쟁은 독도를 편입한 이후 그 공로를 참작하여 나카이 요자부로를 대표로 하는 사이고정(西郷町)의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撈合資會社)에게 그 독점권이 부여되었다.

〈표 9〉 1904~1905년 울릉도의 수출품 현황

품명	단위	1905,4~6			1904,4~6	수량비교 (A-C)
		수량(A)	가격(B)	금액(A×B)	수량(C)	
대두	石	214	1,605	343,470	470	-256
규목 목재	才	62,118	3,727	231,513,786	38,382	23,726
말린 전복	斤	4,770	4,770	22,752,900	-	4,770
강치(도도) 가죽	貫	1,275	1,275		800	475
강치 기름	斗	414	538		20	374
강치 찌꺼기	斗	800	160		-	800
합계		12,075				

자료: 「通商彙纂第」五十號, 明治三十八年(1905)에 의해 작성.

당시 울릉도에서 출어한 어민들의 생산물은 「통상장정」에 의해 한국 정부에 수출세를 지불하고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표 9〉는 1904~1905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이출한 수출품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면 1905년에는 독도강치어렵의 영향으로 주된 수출품목의 절반이 강치 가죽, 강치 기름, 강치 찌꺼기 등 강치 관련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900년대 초 울릉도·독도 어장을 둘러싼 경합과정을 통해, 울릉도 일본인의 사회양상을 검토하고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나카이 요자부리가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독도어장을 독점하고자 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한말 울릉도에 일본인이 재차 잠입하여 동도를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그들의 이익조직인

대 닛쇼조합이 형성되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과 산음지방에서 출어한 사람들에 의해 당시 울릉도·독도 어장을 둘러싼 결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1904~1906년에 생성된 독도어렵자료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나카이에 의한 독도어장 독점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나카이의 독도에 관한 정보의 형성과정을 검토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1902년 일본은 울릉도에 경찰주재소를 설치하여 경찰을 주둔시키고, 일본인 이익조직인 닛쇼조합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 진출의 선발대인 도젠 지역 출신들은 와키타 쇼타로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도고 출신인 하타모토 키치조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분쟁을 벌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닛쇼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둘째, 울릉도·독도 어장이 어류가 풍부하다는 것과 그 어령의 유리함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오키 섬 도젠 출신의 어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울릉도 어령을 위해 울릉도로 건너가 정착하였고 나아가 독도어장의 전복과 강치잡이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셋째, 1903년 울릉도의 오징어어업과 독도 강치어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은 경쟁적으로 독도로 출어하였다. 이때 울릉도에서 강치잡이를 왔던 도젠 출신의 어업자들을 배제하고 독도어장을 독점하고자 한 것이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어장 대하원 제출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어장을 독점적으로 대하받기 위해 도쿄의 정부 관료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 넷째, 오키의 도젠 어민들은 울릉도 도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이주 어촌을 형성하였고 1902년경에는 3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정착하였다. 1903~1904년 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어업을 하면서 울릉도에서 출어한 경쟁적 어업자에게 정보를 얻는다.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관련 자료에 의한 지식 등에 의해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이용한 자료들은 「죽도일건 서류(竹島一件書類)」에 편철된 문서들과 당시 부산 일본영사관의 「통상회찬(通商彙纂)」 등이다. 특히 전자의 사료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어업권 대하 청원의 과정과 독도시찰을 위해 오키도의 각 시정촌 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시찰단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는 행정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일본 내각관방 ‘죽도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일련의 문서들과 더불어 일본의 편입 이후의 조치, 조사단 파견, 독도어업 등의 실시 혹은 지배의 자료로서 부각하기 위해 묶어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독도 편입 과정의 불법성과 부당성, 일본의 편입 의도 등을 더욱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들 자료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희, 2010,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제5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韓日關係史研究』 제38집.
- \_\_\_\_\_, 2018,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제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호동, 2004, 「개항기 울릉도 개척정책과 이주실태」, 『대구사학』 77호, 대구사학회.
- 송휘영,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제106집.
- \_\_\_\_\_, 2013, 「일제강점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6집.
- \_\_\_\_\_, 2015,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제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_\_\_\_\_, 2020, 「근대 울릉도 사회경제 구조의 변천과 독도 인식」, 『日本思想』 제38호.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울릉군청, 2008, 『울릉군지』.
- 유미립, 2018, 「현지조사로 밝혀진 대한제국기 울릉도 현황과 일본의 자원 침탈」, 『해양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朴炳涉, 2008, 「明治政府の竹島 = 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8號, 鳥取短期大学.
- \_\_\_\_\_, 2009, 「山陰地方民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0号.
- \_\_\_\_\_, 2010,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 = 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1号.
- \_\_\_\_\_, 2010,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 = 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31号.
- 福原裕二, 2011, 「20世紀初頭の鬱陵島社会」, 『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1號, 鳥取短期大学.

- \_\_\_\_\_, 2012, 「鬱陵島友會と『鬱陵島友會報』」,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第2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 児島俊平, 1986, 「石見漁民の竹島(鬱陵島)行」, 『郷土石見』 17号, 石見郷土研究懇話会.
- \_\_\_\_\_, 1989, 「隠岐漁民の竹島(鬱陵島)行」, 『郷土石見』 21号, 石見郷土研究懇話会.
- 杉原隆, 2010, 『山陰地方の歴史が語る「竹島問題」』, 株式会社谷口印刷.
- 鬱陵島友會, 『鬱陵島友會報』 創刊號~第九號(1964.10~1973.5).
- 奥原福市, 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復刊版은 2005년 한빛서점에서 出版)
- 外務省通商局編纂, 『通商彙纂』 第234号(1902.10.16).
- 外務省通商局編纂, 『通商彙纂』 第50号(1905.9.3).
- 「朝鮮国鬱陵島へ邦人渡航禁止ノ件」, 『日本外交文書』, 1882年~1884年.

【부록】 닛쇼조합(日商組合)의 규약

조합 규약(組合規約)

- 제1조 본조합은 울릉도 일상조합이라 칭하여 제도 일인의 합의로써 조직하고, 사무소를 도동에 설치한다.
- 제2조 본조합은 조합장, 부조합장, 대표(取締)의 3명을 두고 본조합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또한 공평무사하게 민사·형사 소송을 재판하고 상벌을 시행할 권리를 갖는다.
- 제3조 조합장, 부조합장, 대표의 아래에 명예직 의원 13명을 두고, 조합장 대표를 보좌하고 또한 본조합을 감독한다.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 제4조 조합장 및 대표는 의원에 의해 추천하고 의원은 일반 조합원에서 선거해야 한다.
- 제5조 이상의 의원으로서 귀국해야 할 필요 또는 병환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임할 때는 즉시 보결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조 본조합에 가맹하고자 원하는 자는 본직, 성명을 사무소에 제출하고 규약을 승인하고 명부에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등기료로서 한국 돈(韓錢) 100문(文)<sup>29</sup>을 납부해야 한다.
- 제7조 선박이 입항할 때는 선장은 즉각 적하목록 및 승선자의 성명을 당사 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또한 출항 때도 동일하다. 특히 승선자는 대표(取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다.
- 제8조 본조합의 비용은 매월 4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조합원 각자 동등하게 할당·징수(徵集)해야 한다. 대표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수지 계산을 보고해야 한다.
- 제9조 본조합에 가맹하지 않은 자는 다음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거래상 절교해야 한다. 국욕사건(國辱事件) 선박 및 생명이 위급하다.

29 조선시대 화폐의 기본 단위는 냥(兩), 10냥=1관(貫)이 되고, 1냥=100 문(文)이 됨.

제10조 본조합원으로서 한인과의 관계 및 거래상 그에 대한 소행이 너무 과혹하고 나아가 일반 조합원의 질서·안녕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조합원은 적극 간섭하여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 퇴출을 명해야 한다.

제11조 본조합은 상호신의를 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적 행위를 금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암암리에 타인을 비방(誹謗)이나 그릇된 소문(謠言)을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의 위급함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여 피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조합원 간 모든 계약서에 대하여 대표의 등기를 거친 것에 한하여 원고·피고 간에 직접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에는 먼저 대표에게 신고하고 즉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본규약의 발포 전후에는 물론 전조(前條)의 등기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 또는 구두로 하여 약정을 한 것에 대해 기소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재판 비용으로서 500문(文) 및 각 그 비용 1리(里)마다 200문(文)의 비율로 전납해야 한다. 조합장이 수리한 다음, 상당히 시급하게 판결을 내려준다. 그리하여 집행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집 자산 집행은 1명을 사무소에서 통과해야 한다.) 이 비용은 경매입회자의 일당과 같다. 단, 본조의 비용 및 경매입회자의 일당 즉 1일 500문(文)씩은 추후에 패소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앞의 2조의 경우에 피고인이 1주간 지불해야 할 식료 및 기후에 상당하는 의류 한 벌, 침구 또는 취침할 정도의 방 하나를 제외한 이외의 동산 일체를 차압해야 한다. 단, 차압하는 물건이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료한 것은 이것을 돌려보내야 한다.

제15조 만약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사기로 재산을 취한 죄가 된다. 또한 피고의 의뢰를 받아 보좌하는 자는 공범자로 하여 한 등급(一等)을 감한다.

제16조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비용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조합장은 즉시 수리해야 한다.

제17조 범칙자를 밀고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 사무소에 제소해야 하며, 사무소는 이 제소자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그 범칙에 의해 얻은 물건 또는 벌금의 5할 이상을 밀고자에게 준다.

제18조 도동에 한 개의 익명 투서함을 설치하여 일반의 범칙자가 인명에 장해를 끼치는 건, 전염병 환자 은폐 등을 투서하게 한다. 대표(取締)는 때때로 개합하여야 한다.

제19조 갈등 사건에 대해 기소하고자 하는 자는 재판비용으로서 1관문(貫文)<sup>30</sup>을 사무소에 선납하게 한다. 추후에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제20조 조합원은 의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귀국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 병 또는 범죄, 기타 부득이한 사고에 의해 퇴거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21조 귀국자로서 부채의 의무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채권자(債主)로부터 그러한 취지가 사무소로 제소하지 않을 때는 사무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동 재류 조합원은 물론 다른 곳에 있는 조합원은 선박 출항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22조 선박의 계약 기일을 경과하여 화물의 적재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그 많고 적음(多少)을 막론하고 다음 항의 순서에 의해 지체비용(待費用)으로 위약자가 본선에 지불하게 한다.

제23조 조합원은 결코 자기의 인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상품의 매매 또는 조합원 간의 거래상 또는 직공 등에게 있어 고용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권리가 있는 바는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

제24조 조합원은 타인이 고용한 직공 또는 계약한 어업자 또는 이미 계약이 있는 물건 등을 비열한 수단을 써서 자기 본위로 끌어들이서는 안 된다.

30 통화단위의 1관(貫)은 1,000문(文).

- 제25조 조합장, 대표 등의 판결을 부여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창하는 자는 더욱이 의원 반수 이상 합의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조합장 이하 의원에 관계가 있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자리를 피하게 하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
- 제27조 한인 등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발작물을 망가뜨리고 부녀자에게 음란하게 건네는 언어 및 행동을 하는 자는 정황에 따라 추방(退韓)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 전염병 환자를 은폐하거나 야간 12시에 가무나 싸움을 하거나 지나치게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바람이 부는데 노천에서 불을 피우고 집합의 출석을 지연하거나 음료수를 불결하게 하여 우물근방 및 하천에 더러운 것과 오염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의 신발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29조 조합원 간의 거래상의 일은 매월 말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각기 신용권(信用券)을 발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는 하나,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당사자가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 제30조 본조합에서 특히 인가를 한 자는 공중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별목꾼조합단속법(未挽組合取締法)」 또는 「선박비용징수법(船據費用徵集法)」과 같다.
- 제31조 중죄를 범한 자는 체포하여 일본으로 호송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인도해야 한다.
- 제32조 본규약을 개정(更正)하고자 할 때는 조합장 이하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 제33조 제1조에서 본조까지 두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다하지 않음에 의해 먼저 조합장, 대표 등에게 일임해둔다고 하지만, 큰 사건 및 본 조합에 규정하는 이외의 사건에 이르러서는 조합장 이하 의원 회의로서 실행해야 한다.
- 제34조 본조합의 비용 등은 매월 사무소에서 납부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즉각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 벌칙

제35조 본규약의 위반자는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 벌금에 있어서는 100문 이상 5관문(貫文)<sup>31</sup> 이내로 한다. 선박이 출항할 때 부채의 의무가 있는 자를 은닉하여 편승시키는 자는 선장을 상대로 부채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 단, 죄질의 정상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합의한 위에 서로 맺는 것으로 한다.

메이지 34년(1901) 양력 8월 8일

---

31 5관문(貫文)=5,000문(文).

## 국문초록

본고의 과제는 새로 발굴한 「죽도섬외관계철(竹島涉外關係綴)」 등을 통해 1900년 전후 울릉도의 사회경제 구조를 울릉도 일본인 조직인 닛쇼조합(日商組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당시 울릉도·독도 어장을 둘러싼 결합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에 의한 독도어장의 독점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02년 일본은 울릉도에 경찰주재소를 설치하여 경찰을 주둔시키고, 일본인 이익조직인 닛쇼조합이 조직되었다. 이 과정에서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를 중심으로 한 도젠(島前) 출신들과 하타모토 키치조(畑本吉造)를 중심으로 한 도고(島後) 출신 그룹이 분쟁을 벌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닛쇼조합이 설립되었다. 둘째, 울릉도·독도 어장이 어류가 풍부하다는 것과 그 어렵의 유리함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오키 섬 도젠 출신의 어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울릉도 어업을 위해 울릉도로 건너가 정착하였고 나아가 독도어장의 전복과 강치잡이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셋째, 1903년 울릉도의 오징어 어업과 독도 강치어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은 경쟁적으로 독도로 출어하였다. 이때 울릉도에서 강치잡이를 왔던 도젠 출신의 어업자들을 배제하고 독도어장을 독점하고자 한 것이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어장 대하원 제출의 출발점이 되었다. 넷째, 1903~1904년 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어업을 하면서 울릉도에서 출어한 경쟁적 어업자에게 정보를 얻는다.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관련 자료에 의한 지식 등에 의해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사회구조, 닛쇼조합, 울릉도·독도 어장, 와키타 쇼타로, 나카이 요자부로, 어장 독점

ABSTRACT

The Social Structure of the Japanese in Ulleungdo and the Recognition of Dokdo by Japanese Residents During the Late Choseon Dynasty

Song, Hwi Young

(Research Professor, Dokdo Research Institute, Yeongnam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Nissho Association, by Japanese residents in Ulleungdo around 1900, and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fishing grounds of Ulleungdo and Dokdo at the time through the newly discovered “*Takeshima-shogaikankei-tsuzuri* (「竹島涉外關係綴」).” The process through which Nakai (中井養三郎) monopolized the fishery of Dokdo is investigated in the document. This study has come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in 1902, Japan established a police station on Ulleungdo and dispatched police officers; Nissho-Kumiai (日商組合) was organized as an interest organization for Japanese merchants. In the process, a dispute arose between Dozen led by Wakita Shotaro (脇田庄太郎) and a group from Dogo (島後), led by Hatamoto Kichijo (畑本吉造); the Nissho Association was established during that process. Second, it was the fishermen from Dozen, Oki Island, who first recognized the abundance of fishery resources in Ulleungdo and Dokdo and the potential advantage. They crossed over to Ulleungdo to settle down there, and turned their attention to abalone and sea lion fishing in the waters around Dokdo. Third, in 1903, they start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as squid fishing in Ulleungdo and sea lion fishing in Dokdo drew attention. At this time, Nakai Yozaburo attempted to monopolize the Dokdo fishing grounds by excluding the fishermen from Dozen who had come to catch sea lions from Ulleungdo; thi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ubmission of the Dokdo Fishing Right Petition to the Japan government. Fourth, in 1903 and 1904, Nakai, while fishing sea lions in Dokdo, obtained information from competitive fishermen who departed from Ulleungdo for fish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se fishermen and related materials all show that Dokdo was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This study referred to the documents compiled in “*Takeshima-ikkensyorui* (竹島一件書類).” These documents demonstrate the illegality and unfairness of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Dokdo and Japan’s intention. More in-depth research should be followed on these documents and data.

Keyword

Social structure, Nissho-Kumiai, fishing grounds of Ulleungdo and Dokdo, Wakita Shotaro, Nakaiyozaburo, fishing monopoly



# 유미림



- 유미림 |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전승과 잔존의 역사적 배경
- 홍성근 |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전승과 잔존의 역사적 배경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II. ‘리앙쿠르 록스’ 명칭 등장 전후의 표기 추이
- III. 일본 해도와 수로지의 ‘리앙쿠르 록스’
- IV. 미국의 ‘리앙쿠르 록스’ 인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독도’는 우리말 ‘독섬’에서 온 지명이다. 한자 표기는 ‘獨島’이며, 영어 표기는 ‘Dokdo’이다. ‘우산도’에서 시작하여 ‘석도’를 거쳐 ‘독도’로 정착한 독도 명칭은 한국에서는 완전히 정착했지만, 미국 지명위원회 웹사이트에 등재된 독도의 공식 명칭은 ‘Liancourt Rocks(리앙쿠르 록스)’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Liancourt Rocks’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리앙쿠르 록스’라는 명칭의 등장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발견이 있다는 것은 독도 연구자라면 누구나 언급하는 바이다. 그러나 발견 당시부터 이 명칭이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러시아와 영국도 독도를 발견하고 각각 명칭을 부여했다. 일본은 서양이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섬에 명칭을 부여하여 각각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부르고 있었다. 일본은 울릉도의 명칭이던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를 1905년에 독도의 명칭으로 공식화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이후에도 한동안 ‘리앙쿠르 열암(Liancourt Rocks)’으로 부르거나 ‘다케시마’와 병기했다. 한국도 ‘독도’로 정착한 뒤인 1953년 10월 한국산악회가 독도에서 일본인이 세운 표지석을 철거하고 새로 표석을 세웠을 때 ‘독도 獨島 LIANCOURT’로 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 미국과 연합국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지속적으로 명기했다. 1997년에 미국 국방지도 제작소가 제작한 해도에는 ‘Liancourt Rocks’로 표기되었고, 국방부, 국무부, 내무부, 중앙정보부의 표기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sup>1</sup> 미국 지명위원회는 2008년 7월 24일, 독도의 귀속 국가를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다가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7월 31일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독도를 ‘Li-

\* 논문 투고일: 2022.4.13, 심사 완료일: 2022.5.17, 게재 확정일: 2022.5.25.

1 박병섭, 2020, 「독도의 소속 및 호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 『영토해양연구』 제19호.

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영유권은 ‘SOUTH KOREA’ 또는 ‘OCEAN’으로 표기하고 있다.<sup>2</sup>

이렇듯 ‘Liancourt Rocks’는 그 명칭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견고하게 잔존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어원은 많이 언급하지만 그 전승과정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sup>3</sup> 그런 만큼 명칭의 잔존 배경을 다룬 연구도 거의 없다. 또한 문헌에서의 독도 명칭은 병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인용하는 방식이 연구자마다 달라 병기한 명칭이 원문인지 아니면 인용자가 넣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이 글은 ‘리앙쿠르 록스’ 명칭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알기 위해 그 전승 계보를 추적하고자 한다. 명칭의 전승 계보를 추적하다 보면 독도를 가리키던 여러 명칭들이 분기(分岐)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와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 글은 명칭을 다루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원어로 표기했다. 이 글의 인용문에서 ( )는 원주임을 의미한다.

## II. ‘리앙쿠르 록스’ 명칭 등장 전후의 표기 추이

### 1. 다즐레 섬과 ‘암석’

독도가 발견되기에 앞서 울릉도가 먼저 서양인에게 발견되었다. 현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의 라페루즈(Jean-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 Pérouse) 제독이 인솔하는 부술호(Boussole)는 1787년 5월 27일에<sup>4</sup> 울릉도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에 서양에서는 라페루즈 선박의 탑승자 중 가장 먼

2 『독도사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에는 리앙쿠르 한국, 공해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외래어 표기가 필자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인용문 외에는 다음과 같이 통칭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병기했다. 예: 리앙쿠르 록스, 다즐레 섬, 호넷 섬, 팔라다호, 메넬라이, 올리부차, 포시드, 파스키에.

3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진명, 2011,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정인철,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제7호; 박병섭, 2020, 앞의 글.

4 이상균, 2016,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54쪽은 29일로 되어 있다.

저 이 섬을 발견한 천문학자 다즐레의 이름을 따서 항해도에 ‘다즐레 섬(L. Dagelet)’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다즐레는 당빌이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를 지참하고 있었을 듯한데 거기에는 울릉도와 독도 명칭이 Fanling과 Tchiang-chan<sup>5</sup>로 기재되어 있다. 라페루즈는 여기에 새로이 I. Dagelet를 추가한 것이다.

독도는 1849년 1월 이 섬을 처음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sup>6</sup>의 이름을 따서 ‘Rochers Liancourt’<sup>7</sup>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명명된 것은 아니었다. 1849년 한국 동해안에는 프랑스 포경선을 비롯하여 여러 국적의 포경선이 조업하고 있었다. 이해에 선명이 확인된 미국 포경선은 130척, 프랑스와 독일 포경선이 8척이었다.<sup>8</sup> 프랑스 포경선은 1849년 2월 2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동해에서 모두 17마리의 고래를 잡았다.<sup>9</sup> 리앙쿠르호는 1848년에 오호츠크해에서 조업하다가 1849년에는 동해로 들어와 3월 7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북위 36도 20분-43도 35분과 동경 127-133도 35분 수역에서 조업했다.

해양사학자이자 리앙쿠르호의 선주 제레미야 윈슬로의 후손인 파스키에<sup>10</sup>는 선장 로페즈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sup>11</sup> 이 내용은 많이 인용되

5 이상균, 2016, 위의 책, 54쪽. 지도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상균은 Fan ling tao와 Tchian chan tao로 기재하였다(54~56쪽).

6 선박명에 붙인 리앙쿠르는 본래 프랑스 정치인이자 과학자였던 리앙쿠르 백작의 이름인데 미국 태생으로 프랑스에 귀화하여 포경선 선단을 운영한 윈슬로가 친구의 이름을 자신의 배에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인철, 2014, 앞의 글, 158쪽). 파스키에는 백작이 아니라 공작이라는 설도 있다(Jean Thierry DU PASQUIER, 1983, 『프랑스船의 東海 進出史-리앙쿠르號의 獨島 發見을 중심으로-』, 『領土問題研究』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81쪽).

7 “1849년 1월 27일 독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을 배의 명칭을 따라 리앙쿠르암(Rochers Liancourt)으로 명한다.”라고 했다(정인철, 2014, 위의 글, 146쪽).

8 박병섭, 2020, 앞의 글, 129쪽.

9 박구병, 1989, 『한반도 연해 포경사』, 태화출판사, 163쪽.

10 이진명, 2011, 앞의 책, 62쪽에 따르면, 파스키에는 『19세기 프랑스의 포경선, 1814-1868』의 저자라고 한다.

11 Jean Thierry DU PASQUIER, 1983, 앞의 글, 183쪽. 파스키에는 로페즈가 보고서에서 독도를 발견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1934년에 루이 라 꼬아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프랑스 捕鯨船들』(1938)이라는 저서에 몇 가지 오류는 있지만, 드 수저리는 사람이 라페 섬을 발견했다고 쓴 것은 로페즈가 1849년에 발견한 리앙쿠르를 말한다고 보았다. 이어 파스키에는 1868년에 만들어진 영국 지도에 이 섬이 리앙쿠르 섬으로 되어 있고 이 섬을 1849년에 프랑스 배가 발견했다고 했으므로 리앙쿠르가 맞다고 보았다.

고 있지만<sup>12</sup> 로페즈의 항해보고서인지 귀항보고서인지, 그리고 인사국장 공문과 해도국장 보고서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하다. 이진명에 따르면, 리앙쿠르호는 1847년 10월부터 모두 네 번에 걸쳐 출어했는데 3차 어로에 해당하는 1849년 3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동해에서 고래 22마리를 작살로 찢러 15마리를 잡아 올렸다. 이 기간 중인 1849년 4월 12일에는 다줄레 섬에 이르러 두 척의 보트로 섬에 상륙하여 나무를 했다.<sup>13</sup>

리앙쿠르호의 선원은 4월 12일경 울릉도에 상륙하여 나무를 베었으나 독도를 발견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다. 리앙쿠르호는 1849년 1월 쓰시마해협을 지나 울릉도로 향하다가 1월 27일 다줄레 섬 북동쪽에 있는 큰 암석 하나를 보았다. 다줄레 섬 북동쪽에 있는 큰 암석 하나가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 리앙쿠르호는 1월에 독도를 발견한 뒤 3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를 발견한 것이다.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최초로 발견할 당시는 ‘하나의 암석(une roche)’으로 지칭했을 뿐 ‘리앙쿠르’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포경선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리앙쿠르 록스’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초의 명칭이 무엇이었으며 어느 문헌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정립된 바가 없으며, 통일된 견해도 없다. 선박의 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sup>14</sup>

## 2. 리앙쿠르 록스

이진명은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사실이<sup>15</sup> 항해보고서<sup>16</sup>에 실려 있

12 박구병, 1989, 앞의 책, 164쪽; 이상균, 2016, 앞의 책, 74쪽. 다만 이상균은 이 기록을 프랑스 해군성 보고서라고 했다(73쪽).

13 이진명, 2011, 앞의 책, 64쪽.

14 리앙쿠르호가 갑판이 하나, 돛대가 둘, 대포가 2문 장착되었다는 데는 견해가 같지만, 이진명은 361톤으로, 정인철은 431톤으로 기술했다.

15 선장이 귀항한 날(1850년 4월 19일) 항해보고서를 제출하자 해양경찰은 “순항 중 항해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했는가”를 질문했고, 선장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이진명, 2011, 앞의 책, 64쪽). 같은 내용을 정인철은 “항해와 관련하여 바다에서 특별히 발견한 것은 있는가”로 번역했다(2014, 앞의 글, 166쪽).

16 이진명(2011, 앞의 책)은 리앙쿠르호가 귀항한 뒤 “1850년 5월 4일과 14일 자로 작성된 귀항신고서에 따라

졌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대신 인사국장이 해도국장에게 보낸 공문(1850년 9월 5일)에 실려 있는 것을 제시했다. 인사국장이 해도국장에게 보낸 공문이 선장 갈로르트 드 수자(일명 장 로페즈)<sup>17</sup>의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내용을 인용했다.<sup>18</sup> 정인철은 “이진명(2005)이 번역한 로페즈의 보고서에 나타난 독도 기록”이라며 인용했다.<sup>19</sup> 두 사람 모두 선장의 보고서를 거론했지만 경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둘 다 ‘큰 암석 하나’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크다’는 의미가 없다. 해도국은 인사국에서 공문을 받아 이 내용을 『수로지』(1850·1851 합본, 1851년 간행)에 그대로 수록했다. 이진명이 인용한, 「일본해,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목격한 암석(Roche)」이라는 제목으로 『수로지』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0</sup>

르 아브르항에 선적을 둔 포경선 선장 로페즈(원문에는 'Lasset'로 잘못 되어 있음-지은이) 씨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선박이 일본해(동해-지은이)를 항해하던 중, 1849년 1월 27일 다줄레 섬(마츠시마)(울릉도-지은이) 부근에서, 어떤 지도와 항해 지침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석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줄레

면”이라고 했다(63쪽). 해군부 인사국장의 공문에는 선장은 귀항한 날(1850.4.19) 항해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64쪽). 이날 항해보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인 5월 4일과 14일에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64쪽). 또한 이진명은 귀항신고서는 해양경찰의 조사 형식으로 된 것이라고 했다. 정인철은 귀항보고서와 (로페즈의) 항해보고서라고 칭하고 있어 두 사람이 칭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이진명에 따르면, 인사국장은 해도국장에게 리앙쿠르호가 귀항하여 1850년 4월 19일에 제출한 항해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니 참조하기 바란다고 했다(65쪽). 그런데 이진명은 앞에서는 “1850년 5월 4일과 14일 자로 된 귀항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4월 19일에는 항해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5월 4일과 14일에는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에 작성한 귀항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혼란을 주므로 항해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귀항보고서는 귀항신고서로 번역·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17 정인철(2014, 앞의 글)은 수자(Galotte De Souza) 일명 로페즈(Jean Lopez)라고 적되(159쪽), 형식은 ‘로페즈(드 수제)’로 기술했다. 파스키에(182쪽)는 De Souza라고 했다. 정식이름과 일명은 다르므로 정식이름과 일명 순으로 적는 것이 순할 듯하다.

18 이진명, 2011, 앞의 책, 65~66쪽, 인용문의 지은이는 이진명을 가리킨다.

19 정인철, 2014, 앞의 글, 169~171쪽.

20 이진명, 2011, 앞의 책, 66쪽.

##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전승과 잔존의 역사적 배경

섬을 북동 1/2 북 방향으로 바라보는 지점에서 이 암석을 측정했다. 이 암석의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이었다.

이때의 명칭이 지도에 기재되었는데 이 역시 연구자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리앙쿠르 록스'의 표기 비교

연도	문헌	내용	출처
1849.1.27	항해일지	원문이 현전하지 않음	이진명
1850.9.5	인사국장 공문	1849년 1월 24일(항해가의 말을 인용한 것) 나는 대한해협 한 가운데 있는 쓰시마 북쪽을 통과한 후 다줄레 섬으로 향했다. 1월 27일 나는 다줄레 섬이 북동 1/2 북 방향으로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그때 동쪽에 큰 암석 하나가 있었다. 이 암석은 어떤 지도와 책자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 암석의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이었다. (1850.4.19. 항해일지에서 발췌) <sup>21</sup>	이진명
1850.9.5	로페즈 보고서	1849년 1월 24일 나는 대한해협의 한가운데 위치한 쓰시마 북쪽을 통과한 후 다줄레로 향했다. 1월 27일 나는 다줄레가 북동 1/2 북 방향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그때 동쪽에 큰 암석 하나가 있었다. 이 암석은 어떤 지도와 책자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 암석의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29도 26분이었다.	정인철 (이진명 재인용)
1850·1851	수로지	르 아브르항에 선적을 둔 포경선 선장 로페즈 <sup>22</sup> 씨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선박이 일본해를 항해하던 중, 1849년 1월 27일 다줄레 섬(마츠시마) 부근에서, 어떤 지도와 항해 지침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석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줄레 섬을 북동 1/2 북 방향으로 바라보는 지점에서 이 암석을 측정했다. 이 암석의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이었다.	이진명
1851	태평양 전도	Takasima, Matsusima, Rocher du Liancourt 표기	이진명
	태평양 지도	Takasima, Matsusima, Rr. du Liancourt 표기 (원문)	정인철

프랑스의 『수로지』(1850·1851) 원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sup>23</sup>

르 아브르항에 소개한 리앙쿠르 포경선 선장 라쎬(M. Lasset) 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박이 일본해(mer du Japon)를 항해하던 중, 1849년 1월 27일 다

21 1850년 4월 19일에 제출한 『항해일지』에서 발췌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2 원문에 'Lasset'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진명은 이를 오기라고 보고 로페즈로 바꾼 것이다.

23 정인철 교수에게서 이 부분에 관한 원문을 제공받았다.

줄레 섬(L'île Dagelet)(Matsusima) 부근에서, 어떤 지도와 항해 지침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암석(une roche)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줄레 섬이 북동 1/2 북 방향으로 바라보이는 지점에서 이 암석을 측정했다. 이 암석의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29도 26분이었다.

위 원문의 소제목은 「일본해, 포경선 리앙쿠르가 목격한 암석」이다. 본문에도 「포경선 리앙쿠르」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리앙쿠르」를 누락하고 포경선으로만 칭했다. 또한 경도가 동경 129도 2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명은 이를 그리니치 국제표준자오선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동경은 2도 20분 14초를 더하고 서경은 2도 20분 14초를 빼서, 동경 129도 26분을 131도 46분으로 바꾸어 적었다.<sup>24</sup> 이진명에 앞서 경위도를 언급한 자는 사학자 이현중이다. 그는 리앙쿠르호가 북위 37도 54분, 동경 129도 35분의 위치에서 독도를 발견하여 'Liancourt Rocks'로 명명했다고 기술했다.<sup>25</sup> 그는 가와카미를 언급했지만 가와카미는 경위도를 밝히지 않았다. 일본에서 독도의 경위도를 언급한 최초의 수로지는 『환영 수로지(寶瀛水路誌)』(1883)이다. 호넷호의 측정에 의거하여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위도는 수로지마다 다르다.<sup>26</sup> 최선웅은 이진명의 글을 인용하여 “이 바위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이었다”라고 하였다.<sup>27</sup> 그는 정도 값은 프랑스 파리천문대를 통과하는 파리자오선을 기준한 것으로 세계 공식 본초자오선인 그리니치자오선과는 동

24 이진명, 2011, 앞의 책, 60쪽. 그러나 이런 방식을 적용하려면 모든 경위도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원문대로 기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25 이현중, 1979, 「조선 후기 독도의 관할」,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연구』, 한국사학회.

26 호넷호의 항해일지에는 북위 37도 17분 동경 131도 54분으로 되어 있다(이상국, 2021,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161쪽).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서의 경위도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이었다. 이어 『조선 수로지』(1907, 제2개판)에서는 북위 37도 0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일본 수로지』(1907, 4권 제17개판)에서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일본 수로지』(1911)에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로, 『일본 수로지』(1920)에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33초로 기재되어 약간씩 다르다(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 최선웅, 2020, 「19세기 서양의 독도 측량과 해도 제작」, 『韓國古地圖研究』 제12권 제1호, 167쪽.

경의 경우 2도 20분 14.03초 차이가 나므로 동경 131도 46분을 그리니치 자오선으로 수정할 경우 134도 06분 14.03초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위도와 리앙쿠르호가 측정한 좌표를 대조해 보면 경도에서 3도 14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sup>28</sup> 그러나 이는 이진명이 이미 환산했음을 모르고 동경 131도 46분에 다시 2도 20분 14.03초를 잘못 더한 것이다.<sup>29</sup> 다음으로 Liancourt 관련 표기를 보면, 「태평양 전도」<sup>30</sup>(1851)에는 한반도에 가까운 순서로 ‘Takasima’, ‘Matusima’, ‘Rr. du Liancourt’<sup>31</sup>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사국장이 인용한 로페즈의 항해보고서에는 ‘Dagelet’와 ‘Roche’만 표기되어 있다.<sup>32</sup> 정인철이 인용한 『프랑스 수로지』에는 ‘Dagelet(Matusima)’와 ‘Roche’<sup>33</sup>가 표기되어 있다. ‘Dagelet(Matusima)’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이는 1840년 지볼트가 「일본도」에서 “Takasima(I. Argonaute<37도 52분 N.B.;129도 50분 O.L.>), Matusima(I. Dagelet<37도 25분 N.B.;130도 56분 O.L.>)”로 기재하여 다줄레와 마쓰시마를 동일한 섬으로 인식한 데 연유한다.<sup>34</sup> 그렇다면 지볼트 단계에서는 ‘Roche’가 없었는데 『프랑스 수로지』에 ‘roche’가 기재되었으므로 「태평양 전도」에 와서 ‘Rr. du Liancourt’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55년에 프랑스 해군함정 콩스탕틴호는 28킬로미터 거리에서 독도를 목격하고 우표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는데 두 섬에 ‘Vue de la Roche Liancourt’(리앙쿠르암 전경)

28 최선웅, 2020, 위의 글, 168쪽.

29 현재 독도 동도의 경도는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의 경도는 131도 51분 54.6초이다.

30 원문은 「Carte generale de l’Ocean Pacifique」이므로 「태평양 전도」로 번역했다. 이진명은 「태평양 지도」와 「태평양 전도」를 혼용했고, 정인철은 「태평양 지도」로 번역했다. 역자에 따라 번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을 병기하고 통일성을 지니면 될 듯하다.

31 정인철은 지도대로 표기했고(171~172쪽), 이진명은 ‘Rocher du Liancour’로 풀어서 표기했다(66쪽). 정인철, 2014, 앞의 글; 이진명, 2011, 앞의 책.

32 이진명, 2011, 앞의 책, 66쪽. 이상균은 1850년 4월에 항해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독도를 ‘rochers Liancourt’로 명명하고 세계지도에 표기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rochers Liancourt’로 기재된 지도는 없다. 이상균, 2021, 앞의 책, 73쪽.

33 원문은 소문자 roche다.

34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라고 기재했다. 이 내용은 1856년에 간행된 해군부의 『수로지』(1854-1855)에도 실렸다. 1858년판 프랑스 해군의 『수로지』에서는 독도를 ‘Rochers Liancourt, Hornet’로 기재했고, 울릉도를 ‘Dagelet, Matsusima’로 기재하는 한편, ‘Tako sima, Argonaute’으로 칭하되 존재하지 않는 섬임을 밝혔다.<sup>35</sup> 이후 ‘Rochers Liancourt’를 영국이 1861년에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기 시작하고 이 표기가 확산되어 오늘날 국제적으로 정착한 것이다. 그 사이에는 러시아가 붙인 명칭이 있었다.

### 3. 러시아의 올리부차·메넬라이 섬, 그리고 일본의 「조선 동해안도」

프랑스 선박이 독도를 발견하고 몇 년 뒤에 러시아와 영국 선박도 독도를 발견했고, 이들도 각각 독도에 명칭을 부여했다. 따라서 ‘리앙쿠르 록스’의 정착 과정을 보려면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일본이 기술한 내용을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54년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함대 중 푸차친 제독이 이끄는 팔라다호는 조선 동해안을 탐사하며 북상하였고, 그 소속 함대인 올리부차호, 바스토크호, 메인시코프호는 나가사키에서 타타르해협으로 북상했다. 1854년 4월 2일 대한해협을 지나 타타르해협으로 항해하던 올리부차호는 4월 6일<sup>36</sup> 독도를 발견하고 이를 항해일지에 기록했다. 항해일지에는 “이들 중 더 높은 서쪽 섬은 ‘올리부차’, 동쪽 섬은 ‘메넬라이’라고 불렀다… 올리부차와 메넬라이 섬을 청명한 날씨 속에 30마일 거리에 서 발견하였다”<sup>37</sup>라고 기록했다. 올리부차호<sup>38</sup>가 올리부차 섬과 메넬라이

35 이진명, 2011, 앞의 책, 76~77쪽.

36 김영수, 2019, 『제국의 이종성』, 36쪽(최명복, 1999,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제102호, 216쪽 재인용). 심정보는 4월 18일로 보았다(심정보, 2021, 『동해바다 독도 돌아보기』, 민속원, 163쪽).

37 동북아역사재단, 2020, 『자료로 보는 우리땅 독도 30장면』, 동북아역사재단, 71쪽.

38 1861년 영국 해군은 『중국 수로지(China Pilot)』를 발간하면서 러시아의 팔라다호가 독도를 발견했다고 잘못 기술했다. 일본이 이를 잘못 받아들인 후 현재까지 한국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1931년 다보하시 기요시가 “울릉도와 리앙쿠르섬 모두 1854년 프리깃 ‘팔라다’에게 재발견되어”라고 했고, 1953년 가와카미도 1854년 팔라다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차 록스로 명명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원류는 일본의 『수로지』인데, 오�쿠하라 헤키운(1906)이 인용했고, 이후 다보하시와 가와카미에게 전승된 것이다.

섬으로 불렸음은 독도를 두 개의 섬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팔라다호는 이 사실을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 「조선 동해안 탐사결과」에서 기술했다. 해군지는 ‘다즐레 섬(울릉도)’<sup>39</sup>과 아르고노트 섬에 대해서도 기술하여, 다즐레 섬은 20마일(32.18킬로미터) 크기의 원형 모양의 섬이며 최고봉의 높이가 2,100피트(640.08미터)라고 기술했다. 아르고노트 섬에 대해서는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섬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술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새의 하얀 배설물로 뒤덮여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은 올리부차호가 북위 37-14도, 동경 131-57도에서 발견하였으며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島라고 이름 붙였다.”<sup>40</sup>라고 기술했다. 이어 러시아 해군은 푸차친 함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거하여 1857년에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했다.

1860년 러시아의 셰르게프 해군 중령은 독도를 북쪽으로 3.5마일(5.6킬로미터), 북서쪽 10도로 5마일(8킬로미터), 북서쪽 61도로 14마일(22.5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고 독도의 형상을 3점 그렸는데,<sup>41</sup> 이 그림은 1862년 6월판 해도에 실렸고, 1868년, 1882년에 간행된 「조선 동해안 지도」에도 실렸다.<sup>42</sup> 1862년과 1868년도 판은 울릉도를 ‘Dagelet island’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올리부차 바위산’과 ‘메넬라이 바위산’으로 표기하고 독도 그림 세 점도 실었다.<sup>43</sup>

일본 해군은 러시아의 1857년 해도(「조선 동해안 지도」)를 토대로 삼되, 영국

39 김병렬, 1998,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53쪽, 그러나 원문에는 울릉도가 없었을 것이다. 인용자들이 다즐레를 울릉도로 번역해서 쓰고 역주를 붙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직접 인용문임에도 ‘다즐레 도’(울릉도-역주)라고 밝히지 않으면 ‘울릉도’를 원문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할 때 한자를 삽입하거나 한글발음을 영어 원어로 표기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등 약간의 윤색을 가했다. 그 경우 인용부호 ‘ ’를 넣어 구분했다.

40 김병렬, 1998, 위의 책, 53쪽, 동북아역사재단, 2020, 앞의 책, 72쪽에는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라 불렀다”고 하여 약간 다르다.

41 독도 그림 3점은 프랑스 해군부가 1861년에 간행한 『항해지침』에도 그대로 실렸다. 다만 프랑스 해군부는 명칭을 ‘Rochers Liancourt’로 기재했다.

42 김병렬, 1998, 앞의 책, 54쪽; 한철호, 2015a, 「일본 수로국 아가미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제50호, 30쪽.

43 한철호, 2015a, 위의 글, 30쪽.

해도 2347호<sup>44</sup>의 1861년 8월 개정판을 참고하여 1875년에 「조선 동해안도」<sup>45</sup>를 간행했다. 1876년 12월 개정판에서는 서도를 ‘올리부차瀨’, 동도를 ‘메넬라이瀨」<sup>46</sup>로 기재했다. 1893년에는 「조선 동해안도」를 개정하여 「조선 동안」(1893)<sup>47</sup>으로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아르코노트 섬은 삭제되었고, ‘다 줄레 섬(松島)’은 ‘鬱陵島(松島)’로, 올리부차礁·메넬라이礁는 ‘리앙코루도 암’으로 바뀌었고, 3점의 그림은 삭제되었다. 이어 1896년에 「조선 전안」이 간행되자 「조선 동안」은 1897년에 폐간되었다.<sup>48</sup>

이렇듯 1854년 4월 초 러시아가 발견할 당시는 ‘올리부차’(올리부차 섬)와 ‘메넬라이’(메넬라이 섬)<sup>49</sup>라고 했고 1855년 1월 해군지와 1857년 해도 「조선 동해안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섬으로 보았으나 1862년도 「조선 동해안 지도」에서 ‘올리부차 바위산(Скала Менелай)’과 ‘메넬라이 바위산(Скала Менелай)’으로 바꾸었다가 1876년 개정판에서는 ‘올리부차뢰(瀨)’ ‘메넬라이뢰(瀨)’로 바꾸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해도를 참고하여 1875년에 「조선 동해안도」를 간행할 때 두 섬을 올리부차초(礁)·메넬라이초(礁)로 표기했다. 이렇듯 러시아가 독도의 두 섬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44 1827년에 간행된 영국 해도는 1855, 1861, 1863년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861년판은 1857년까지 러시아가 측량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한철호, 2015a, 위의 글, 28쪽).

45 김병렬, 1998, 앞의 책, 53쪽. 다만 김병렬은 러시아 지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일본 해군성이 1876년 「조선 동해안도」를 제작했다고 잘못 이해했다. 하지만, 1875년 2월에 만들어졌다가 1876년에 개정된 것이다. 학자들이 대부분 1875년으로 오기하고 있다. 1876년과 1889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1893년에 「조선 동안」으로 개정되었다(한철호, 2014a,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제17호, 150~153쪽). 해도 제 54호를 가리킨다(한철호, 2015b,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호, 한국사연구회, 247쪽).

46 한상복, 2021, “1876년 개정판 조선동해안도 속 동해의 두 섬”, <https://blog.naver.com/hahnsudang/20156771425>(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瀨는 바위와는 다른 의미인데 왜 이렇게 칭했는지 모르겠다.

47 한철호가 말한 「조선 동안」은 「조선동안 부 백덕대제만(朝鮮東岸附伯德大帝灣)」과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그는 「조선 동해안도」가 1893년에 「조선동안 부 백덕대제만(朝鮮東岸附伯德大帝灣)」으로 바뀌면서부터 올리부차 초와 메넬라이 초에서 ‘리앙코루도 암’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2014a, 앞의 글, 137쪽).

48 한철호, 2014a, 위의 글, 150~153쪽. 한철호는 「조선 동안」의 폐간이 「조선 전안」의 간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9 1854년 항해일지에 서쪽 섬을 ‘올리부차’라 하고 또 올리부차와 메넬라이 섬이라고도 했으므로 섬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단일하지 않아 섬, 바위, 리(瀨), 초(礁) 등으로 제각각이다.<sup>50</sup> 러시아가 붙인 해도<sup>51</sup>와 일본이 붙인 해도의 명칭도 같지 않다.

그렇다면 위의 기술로는, 일본이 해도에 ‘리앙코루도 암’을 기재한 것이 1875년에서 1893년 사이 언제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러시아식 명칭에서 프랑스식 명칭으로 바뀌 기재하게 된 배경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이 『환영 수로지』(1883)에서 ‘리앙코루도 열암’을 표제어로 삼아 기술한 것으로 보건대 프랑스식 명칭이 선택된 배경의 일단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서술한다.

#### 4. Hornet Islands와 Liancourt Rocks

러시아에 이어 영국도 1855년에 독도를 발견했다. 호넷호의 함장 포시드(Forsyth)는 1855년 4월 25일 독도를 발견한 뒤 그 위치를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 기록했다. 이 측량 결과는 1855년 해도에는 ‘Hornet Ids.’<sup>52</sup>로 기재되었고, 이어 1856년 페리 제독이 출간한 『일본 원정기』,

50 김병렬, 1998, 앞의 책, 53쪽. 도서명의 경우, 김병렬은 표제에서는 올리브차와 미넬라이巖(Olivutsa & Minelai R)로, 내용에서는 올리브차 도(島)와 미넬라이 도(島)로 기술했다. 『독도사전』(2019)의 ‘올리브차호(Оливуча)의 항해일지」(김영수 집필 항목)는 올리브차호는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 Menalai)’라고 명명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에는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 섬이라 불렀다.”고 했다. 박병섭과 후나스기는 올리부차초 메넬라이초로 표기했다(한철호, 2014a, 앞의 글, 150~151쪽). 한철호(2014b)는 1854년 올리부차초는 올리부차초와 메넬라이초로 명명했고, 1862년과 1868년, 1882년에 증보 발행한 해도에는 올리부차초와 메넬라이초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일본 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1875) 간행 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과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1쪽). 그런데 다른 논문에서는 1862·1868년도 「조선동해안도」에 ‘올리부차 바위산(СкалаОливуца)’과 ‘메넬라이 바위산(СкалаМенелай)’으로 각각 표기했다고 기술했다(한철호, 2015a, 앞의 글, 30쪽). 신용하(2020, 『독도 영토 주권의 실증적 연구』 증권, 동북아역사재단, 53쪽)도 올리브차 초, 마넬라이 초로 칭했다. 러시아어 Скала는 바위를 의미하므로 올리부차 암(巖)이 맞을 듯하지만 러시아는 섬과 바위를 혼용했다.

51 1857년 러시아가 해도에 ‘조선 동해안도’라고 명기한 것이 아니라 후에 일본이 ‘조선 동해안도’라고 명기한 것이다. 김영수(2019, 앞의 책, 82쪽)는 러시아어를 번역하여 ‘조선 동해안 지도’로 기재했고, 한철호(2015a, 위의 글, 30쪽)는 「조선 동해안도」로 기재했다.

52 한승훈, 2022, 「근대 시기 영국의 울릉도 인식 연구」, 『남도문화연구』 제4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6쪽. 통상 ‘Hornet Is’로 표기하는데 논문에 제시된 해도에는 ‘Hornet Ids.’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한승훈은 논문(19쪽)에서 『중국 수로지』 2판(1858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Liancourt Rocks)’로 다루고 있다고 했지만, 1858년판은 호넷 섬으로 다루었고 1861년판에서 리앙쿠르 록스로 다루고 있다. 착오가 있는 듯하다.

1859년 제임스 와일드의 지도 및 이후 지도에도 기재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와 1890년대를 지나 1950년 Bartholomew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Hornet Is’로 기재되었다.<sup>53</sup> 그러나 이 명칭이 국제적으로 정착한 것은 아니다.

영국이 해도에 기재한 ‘Hornet Ids.’는 1858년판 프랑스 『수로지』에서는 ‘Rochers Liancourt’와 함께 ‘Hornet’으로 기재되었다.<sup>54</sup> 영국은 프랑스보다 늦은 1856년에 극동 해역을 다룬 『중국 수로지』 초판(1855년판)을 간행했지만, 한국과 일본 해역은 다루지 않았다. 영국이 ‘Hornet Is’를 기재하게 되는 것은 1858년판 『중국 수로지』(THE CHINA PILOT) (제2판 제9장 「한국의 동해」)에서이다. ‘Hornet Is’로 기재하되 “불모의 이 두 바위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이며, 영국 함정이 1855년 4월 25일 발견했다”고 기술했다.<sup>55</sup>

그런데 영국은 1861년의 『중국 수로지』 제3판에 오면 Hornet Is가 아닌 ‘LIANCOURT ROCKS’로 기재하고<sup>56</sup> 리앙쿠르 록스와 함께 마쓰시마, 다케시마를 한국의 동해로 분류했다.

‘MATU SIMA’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로 Dagelet island, 러시아 해도상의 Dajette는 러시아 프리깃함 Pallas호에 의하면, 그 위치가 북위 37도 22분 동경 130도 56분이다.”<sup>57</sup>라고 기술했다. MATU SIMA는 Matsushima, 즉 울릉도를 가리킨다. 또한 『중국 수로지』는 ‘LIANCOURT ROCKS’에 대해 기술하기를, 1849년 이 섬들을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며, 러시아 프리깃함 Pallas호는 1854년 Menalai와 Olivutsa

53 김병렬, 1998, 앞의 책, 51쪽.

54 이진명, 2011, 앞의 책, 76쪽.

55 이진명, 2011, 위의 책, 81~82쪽. 정인철은 1855년 영국 호네스트호-호네스트(Honest)함으로 오기했다(2014, 앞의 글, 146쪽)

56 이진명, 앞의 책, 82쪽. 김병렬도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 부술 호가 아니고 프랑스의 捕鯨船인 리앙쿠르호라고 하는 사실은 1861년 존 킹(John W. King)이 편찬한 中國水路誌(the China Pilot) 제3판”이라고 기술했다(1998, 앞의 책, 48쪽). 박구병은 이 내용이 1864년판에 보인다고 했다(박구병, 1989, 앞의 책, 167쪽).

57 John W. King, 1861, *The China Pilot*, Third edition, London, p. 379

rocks라고 명명했고 1855년 영국 군함 Hornet은 Hornet Islands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sup>58</sup> 러시아의 함대를 Pallas호로 기재한 최초는 1858년 판 프랑스 『수로지』인데<sup>59</sup> 영국이 이를 답습했고, 일본도 영국을 답습하는 바람에 한국에도 잘못 전해졌다. 한편 『중국 수로지』는 ‘TAKO SHIMA’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중국 수로지』는 1864년에 제4판이 나왔는데, 독도 관련 내용은 1861년 판과 같지만 ‘마쓰시마 또는 다줄레 섬’, 즉 울릉도에 관해서는 1861년판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울릉도 주변의 Seal Point, 부술 암, 구멍바위를 언급했고 조선인들이 봄에서 여름 사이 여러 달 동안 배를 건조하여 육지로 가져간다는 사실도 언급했다.<sup>60</sup> 이후 『중국 수로지』는 4권으로 분화되어, 한국과 일본 해역은 제4권<sup>61</sup> 『중국해역 항해지침-한국, 러시아, 일본해역 항해지침』(1873, 이하 『중국해역 항해지침』으로 약칭)<sup>62</sup>에서 다루었다.

1878년 일본의 아마기함은 측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이 바로 1873년의 『중국해역 항해지침』이다. 또한 아마기함은 1863년판 영국 해도 (Admiralty Chart) 2347호도 참고했다.<sup>63</sup> 다만 아마기함은 독도가 “새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sup>64</sup>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제3장 ‘SEA OF JAPAN’ 아래에는 ‘East coast of Korea’ 등이 들어 있고 ‘LIANCOURT ROCKS’, ‘MATU SIMA, Dagelet island’·East coast

58 John W. King, 1861, *ibid.*, p. 379. 인용문은 아래 <표 3>을 참조할 것.

59 이진명, 2011, 앞의 책, 76쪽.

60 이진명, 2011, 위의 책, 83~84쪽. 이 내용은 프랑스의 『항해지침』 1867년판에 그대로 수록되었다고 한다.

61 제1권은 1867년, 제2권과 제3권은 1868년에 나왔고 제4권이 1873년에 나온 것이다.

62 이진명은 『중국해역 항해지침』으로, 한철호는 『중국해역 항해지침-한국, 러시아, 일본해역 항해지침』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해역 항해지침』으로 약칭했다.

63 한철호에 따르면, 다만 그는 1863년판 영국 해도 2347의 1864년과 1865년의 개정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864년과 1865년의 개정판에 여전히 아르고노트 섬이 실려 있다면, 아마기함은 1876년판 이전에 간행된 1863년 판과 1864년 판 그리고 1865년 판 가운데 하나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철호, 2015a, 앞의 글, 29쪽, 각주 44.

64 이진명, 2011, 앞의 책, 85쪽.

등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오키 섬은 ‘West coast of Nippon’에 들어 있으므로 영국 수로부가 ‘마쓰시마’와 ‘리앙쿠르 록스’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sup>65</sup>

1873년 판 『중국해역 항해지침』은 1884년에 제2판, 1894년에 제3판이 간행되었다가 1904년에 한국과 일본 해역을 분리하여 『일본, 한국 및 인접해역 항해지침』을 따로 냈다. 여기서 독도에 관한 기술은 1873년에서 1894년 판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1884년판 『중국해역 항해지침』은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 열도에 관한 기술에서 일본 해군 수로국의 자료 및 한일 양국 주재의 영국 영사 보고서 등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sup>66</sup> 또한 『중국해역 항해지침』은 동해, 독도, 울릉도, 동해안 순서로 기술했으나 울릉도 표기를 ‘Matu sima’에서 ‘Matsu sima’로 바꾸었고, 울릉도 정상 높이가 220미터임을 추가했다. 한편 『일본, 한국 및 인접해역 항해지침』은 1902년에 미국 뉴욕호가 측정한 독도 위치를 추가·기술했다.<sup>67</sup> 이 수로지는 1913년에 『한국 해역, 시베리아 해역 및 오호츠크해 수로지』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제2판부터 『일본 수로지』로 바뀌었다.<sup>68</sup>

### III. 일본 해도와 수로지의 ‘리앙쿠르 록스’

#### 1. 가쓰 가이슈의 해도

앞에서 일본 아마기함이 1878년 조사 당시 영국의 『중국해역 항해지침』(1873)을 참고했으며, 1861년판 영국 『중국 수로지』의 리앙쿠르 록스 관련

65 한철호, 2015a, 앞의 글, 34쪽.

66 이진명, 2011, 앞의 책, 85쪽.

67 오쿠하라 헤키운은 1906년 저술(『竹島及鬱陵島』)에서 미국 군함 뉴욕의 측정에 따라 미국 수로부가 고시(제43호, 1902년 10월)한, 리앙쿠르도 열암의 위치를 기술했다.

68 이진명, 2011, 앞의 책, 86쪽.

내용이 수로지를 기술할 때 하나의 전형(典刑)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렇다면 일본이 리앙쿠르 록스 정보를 처음 접한 것이 영국의 『중국 수로지』(1861)를 통해서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영국 해도에 리앙쿠르 록스가 기재된 시기와의 일치하는지가 궁금하다. 박구병에 따르면, 1868년에 만들어진 영국 지도에 리앙쿠르島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sup>69</sup> 김병렬에 따르면 1863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지도와 1881년에 독일에서 출간된 지도에 Liancourt Rocks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70</sup>

그런데 일본에서 ‘리앙쿠르 록스’를 명기한 최초의 해도는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대일본국 연해 약도(大日本國沿海略圖)」(1867)이다. 동해 가까운 쪽에 다케시마(竹嶋)라는 섬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그 오른쪽 섬에는 마쓰시마(松島)라고 기재된 섬이 있으며, 마쓰시마 오른쪽 위에는 ‘호우리루 로크’<sup>71</sup>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섬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서 동남쪽 아래에 ‘리앵코루토 로크’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 기재된 다케시마(竹嶋=아르고노트 섬-역주)와 마쓰시마(=다줄레 섬, 울릉도-역주)는 지볼트 지도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쓰는 지볼트가 기재하지 않은 ‘리앵코루토 로크’를 추가로 기재했다.

가쓰는 주기(註記)에서, 영국에서 판각한 동양 측량도가 해양을 자세히 기재한 것을 보고 항행하려는 가숙(家塾)의 생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도를 판각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가쓰가 말한 가숙의 생도란 고베의 해군조련소의 생도를 말하는 듯하다. 가쓰의 해도는 1863년 11월 개정판 이후의 영국 해도 2347호를 모토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다.<sup>72</sup> 이 견해대로라면 가쓰가 말한 동양 측량도는 영국이 일본 연안을 측량하여 만든 해도

69 이진명, 2011, 위의 책, 167쪽.

70 김병렬, 1998, 앞의 책, 48쪽.

71 위치로 보아 독도를 가리키므로 호넷을 잘못 표기한 듯하다. 가쓰는 호넷 로크가 리앙쿠르 록스와 같은 섬임을 몰랐던 것이다.

72 菊池眞一, 2007, 「幕末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本近海英國海圖-日本水路部創設前の海圖史」, 『海洋情報部 研究報告』第43号, 7쪽; 한수당 한상복은 “1863년 영국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해도 “Japan and Korea”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해역 범위를 약간 축소한 것”으로 보았다(한수당연구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hnsudang>, 2012년 4월 24일 작성, 2021년 12월 20일 검색).

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영국 해도는 1863년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한다.

1861년 판 『중국 수리지』가 리앙쿠르 록스를 언급했지만 지도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가쓰의 해도가 분큐 원년(1861) 영국에 양도된 이노소도(伊能小圖)를 기본으로 하여 1863년에 개정된 영국 해도 제2347호를 번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73</sup> 그러니 가쓰의 해도는 “이노도가 해외 지도에서 역수입된 경우”라는 것이다. 이는 1863년의 영국 해도 2347호 이전의 「이노소도」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노소도」는 「이노도」 가운데 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 1821)를 제외한, 축척이 다른 소도(小圖)를 의미한다. 이노 다다타키는 10차에 걸쳐 일본 전국을 실지 답사했지만 오키까지만 측량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측량한 사실이 없다.<sup>74</sup> 따라서 당연히 지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한, 가쓰가 이노소도에 의거했다기보다는 1863년의 영국 해도 2347호를 참조했다고 보인다.

본래 영국이 1827년에 간행한 해도 2347호에는 「일본」이라고 되어 있었다가 1855년에 「일본-니폰, 큐슈, 시코쿠 및 한국의 해안 일부」로 바뀌었다. 1861년에는 1857년까지 러시아가 조선 동해안을 측량한 성과를 채용하였고, 1863년에 비로소 「일본-니폰, 큐슈, 시코쿠 및 한국의 일부」로 바뀌었다.<sup>75</sup>

한철호에 따르면, 1863년에 영국이 제작한 해도(2347호)에 기재된 도서명은 다음과 같다.<sup>76</sup>

- ① ‘타코 시마 혹은 아르고노트 확인 요.(Tako sima or Argonaut P. D.)’<sup>77</sup>
- ② ‘마투 시마(다즐레 섬)<Matu sima (Dagelet I.)’

73 鈴木純子, 2018, 「伊能圖利用の軌跡」, 『地圖』 56-1, 12쪽. 심정보도 “지도의 원류는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일본지도이다”라고 했다(독도재단, 2021, 「독도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재단, 51쪽).

74 保坂祐二, 2008, 「『三國通覽輿地全圖』と『伊能圖』の中の獨島」, 『日本文化研究』 第28輯, 506쪽.

75 한철호, 2015a, 앞의 글, 28쪽.

76 한철호, 2015a, 위의 글, 29쪽.

77 이후 Argonaut 섬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1876년 개정판에서는 삭제되었다(한철호, 2015a, 위의 글, 29쪽).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전승과 잔존의 역사적 배경

- ③ ‘부술 록스(Boussole Rk), 실 포인트(Seal Pt)’
- ④ ‘리앙쿠르 록스, 프랑스인이 발견한 리앙쿠르 바위섬(1849)(Liancourt Rks, Discd. by French(1849), 영어로 호넷 섬(Engl. Hornet I), [러시아어 로] 메넬라이와 올리부차(Menelai & Olivutsa)’

이 해도는 ④에서 보듯이, ‘리앙쿠르 록스’를 “1849년 프랑스인이 발견한 리앙쿠르 바위섬”이라고 기재하고, 영어 호칭이 호넷 섬, 러시아어 호칭이 메넬라이와 올리부차임을 아울러 밝혔다. 이로써 본다면, 가쓰가 해도를 제작할 당시 1863년판 해도 2347호가 이미 일본에 유입되어 있었지만 『중국 해역 항해지침』(1873)은 성립하기 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쓰는 1861년판 『중국 수로지』와 1863년 해도 2347호로부터 ‘리앙쿠르 록스’ 정보를 입수하여 「대일본국 연해 약도」에 기재한 듯하다.

가쓰의 해도가 간행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된 도서명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출전의 괄호는 제작국가이다.)

<표 2>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된 도서명

출전 도서명	1851년 태평양 전도(프랑스)	1861년 중국 수로지(영국) <sup>78</sup>	1863년 영국 해도 2347호	1867년 가쓰 해도	1876년 영국 해도 <sup>79</sup>
가공의 섬/ 죽도	Takasima	Tako sima or Argonaut	Tako sima or Argonaut P. D.	竹嶋	삭제
죽도/독도			(Boussole Rk), (Seal Pt)	호우리루 로크	(Boussole Rk), (Seal Pt)
울릉도	Matusima	Matu sima (Dagelet island of the French, Dajette of the Russian charts)	Matu sima (Dagelet I)	松島	Matu sima (Dagelet I)
독도	Rr. du Liancourt	Liancourt rocks (1849) Hornet Islands (1855), Menelai & Olivutsa (1854)	Liancourt Rks, Hornet I, Menelai & Olivutsa	리앵코루토 로크	Liancourt Rks, Discd. by French (1849)

78 John W. King, 1861, *op. cit.*, p. 379.

79 한철호, 2015a, 앞의 글, 22쪽.

## 2. 일본의 수로지에 기재된 ‘리앙쿠르 록스’

일본에서 해도는 1871년 수로국이 창설되고 난 다음해에 처음 간행되었고,<sup>80</sup> 수로지는 1883년부터 간행되었다. 가쓰가 『중국 수로지』(1861)와 영국 해도(1863)의 영향으로 1867년에 ‘리앙쿠르 록스’를 해도에 명기했지만, 일본이 수로지에서 ‘리앙쿠르 록스’를 언급하는 것은 1883년 『환영 수로지(寶瀛水路誌)』(제2권의 제5편 「조선동안」)에 와서다. 1879년과 1880년의 조사 내용을 담아 간행된 『수로잡지』 제16호와 제41호에는 ‘리앙쿠르 록스’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883년의 『환영 수로지』 제1편은 일본 해군 수로국과 수로잡지, 영국 해도 등에 의거하여 만들어졌고, 제2편은 1867~1868년의 미국 군함의 측량, 1866년 프랑스 중국함대의 측량기사 등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제5편에 ‘리앙쿠르 록스’를 기재했는데 1880년 미우라 시게나리(三浦重郷)의 조사기록, 1854년 러시아 팔라다호 및 1856년 프랑스 군함의 항해기록 등에서 초록(抄錄)하여 보완했으며 울릉도도 언급했다. 1886년의 『환영 수로지』는 영국 해도를 직접 언급했다.<sup>81</sup>

일본 외무성은 수로지가 간행되기 전부터 ‘리앙쿠르 록스’를 인지하여 울릉도에 대한 서양 호칭과 영국 해군의 측량지도 및 제임스 와일드의 지도<sup>82</sup>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sup>83</sup> 외무성 관리 사카다 모로토(坂田諸遠)는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가 제작한 관허 지도 「대일본 사신전도(大日本四神全圖)」(1871)에 동남쪽 오키 방향<sup>84</sup>에 松島가 그려져 있고 ‘호우리루 로크’라고

80 일본의 수로 측량 기술은 1853년 10월 나가사키해군전습소를 개설하여 네덜란드 사람을 교관으로 삼아 교수 받으면서, 해도 제작 기술은 영국 측량함과 함께 행동하면서 습득했다(菊池眞一, 2007, 앞의 글, 5쪽).

81 ‘鬱陵島一名 松島(서양명 다즐레트)에 대하여 “○해군 해도 제95호 제141호 제169호, 영국 해군 해도 제2459호를 참조할 것”으로 기재했다.

82 아르코노트 섬, 부술 록스·Seal I, 마쓰시마·다즐레 섬, 호넷 섬. 『竹島考證』 원문에는 제임스 와일드의 ‘일본 조선국’으로만 되어 있는데, 역자(정영미)는 「일본 열도」(1859)라고 역주를 붙였다. 가와키미는 지도명엔 없이 1859년과 1868년의 지도를 언급했고, 게재한 지도는 1868년판이다.

83 와일드 지도를 언급한 자는 1876년 기록국장 와타나베 고키의 의견이다. 『竹島考證』(1881), 363쪽

84 원문은 “그 동남쪽 같은 위도의 오키 방향에 松島가 기재되어 있고, ‘호우리루 로크’라고 쓰여 있으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쓰여 있는 사실도 언급했는데<sup>85</sup> 이 지도에는 ‘마쓰시마(松シマ)’, ‘다케시마(竹シマ)’, ‘리앙코루토 로크(リエンコラルト ロック)’, ‘셀 사키(セコルサ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지도가 1869년에 시작하여 1871년에 간행되었으므로 가쓰의 해도 이후 ‘리앙쿠르 로크’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하지만, 외무성 관리는 ‘리앙코루토 로크’를 주목하지 않았던 듯하다.<sup>86</sup>

당시 외무성의 관심은 주로 개척 대상으로 언급된 마쓰시마(松島)에 있었다. 이 섬이 어느 섬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해지자 1880년 9월 아마기함은 현지를 조사하여 마쓰시마가 옛날부터 울릉도로 불리던 섬임을 확인했다. 수로국장 야나기 나라요시(柳橋悦)가 해군성에 보고한 「수로보고」 제33호(1880.9.13) 첨부 지도에는 ‘松島 一名 鬱陵島’와 竹嶼, Boussole Rk, 北亭嶼가 기재되어 있지만 ‘호넷 섬’이나 ‘리앙쿠르 록스’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81년 내무성 지리국이 제작한 「대일본국 전도」에도 두 섬과 관련해서 아무 표기가 없었고, 1882년 오무라 쓰네시치(大村恒七)가 제작한 「조선전도」에는 竹島와 松島가 기재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내무성 지리국이 제작한 「조선전도」에는 마쓰시마와 리앙쿠르 로크가 기재되어 있고, 해군성 수로국이 발행한 「일지한 항로 이정 일람 약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略圖)」에도 마쓰시마와 리앙쿠르 로크가 기재되어 있다.<sup>87</sup>

내무성이 1882년경 리앙쿠르 록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 1883년 수로지에 ‘리앙쿠르 록스’가 명기된 것은 자연스럽다. 『환영 수로지』 제2권(1883)은 ‘리앙코루토 열암’을 표제어로 하고 다음 〈표 3〉과 같이 기술했는데 이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 답습되므로 길지만 인용하기로 한다.

85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II: 竹島考證』,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461쪽.

86 후에 가와카미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리앙코루토 로크, 호우리루 로크를 언급했다(『竹島の領有』, 1953, 外務省条約局, 22쪽).

87 가와카미 겐조, 1953, 위의 책, 33쪽. 내무성의 「朝鮮全圖」와 해군성의 「日支韓 航路里程 一覽略圖」는 국내에 소장된 곳이 없으며, 따라서 내용도 소개한 연구자가 없다.

이는 『중국 수로지』(1861)의 내용에 아마기합의 조사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1886년 『환영 수로지』(제2권 제2판의 제4편 「조선동안」), 1894년 『조선 수로지』와 1897년 『환영 수로지』(제2권 제2판의 제4편 「조선동안」), 1899년 『조선 수로지』(제2판의 제4편 「조선동안」)에서 답습된다. 『중국 수로지』와 『환영 수로지』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수로지』와 『환영 수로지』의 내용 비교

중국 수로지(1861)	환영 수로지(1883)
<p>1849년 이 섬들을 발견한 프랑스 선박 Liancourt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며, 러시아 프리깃함 Pallas88는 1854년 Menalai와 Olivutsa라고 명명했고, 1855년 영국 함정 Hornet은 'Hornet islands'라는 이름을 붙였다.</p> <p>Forsyth 함장에 따르면, 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이다. 이들은 불모의 두 개의 작은 섬(two barren rocky islets)으로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거리는 약 1마일이다. 두 섬 간의 거리는 약 1/4리로 하나의 초맥(reef)이 있어 이들을 잇고 있다. 서쪽 섬(western islet)의 해면상의 높이는 410피트로 모양은 사탕탑 같다. 최동단의 섬(easternmost)은 약간 낮고 평탄하다. 수심은 깊어 보이지만, Hakodadi로 항하기 위해 sea of Japan을 항행하는 선박의 직항로에 위치해 있으므로 위험하다.</p> <p>(John W. King, <i>The China Pilot</i>, Third edition, 1861, London, p. 379에서 인용, 번역)</p>	<p>1849년, 프랑스 선박 '리양코루토'가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였으므로 선명을 취하여 '리양코루토' 열암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의 '프리깃형 함대 '팔라다'호가 이 열암을 '메닐라이'와 '올리부차' 열암이라 불렀고, 1855년, 영국 함선 '호넷'호가 이 열암을 탐험한 뒤 '호넷' 열도(列島)라고 이름 붙였다.</p> <p>호넷호 함장 Forsyth에 따르면, 이 열암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두 개의 불모의 바위섬으로 새똥이 섬 위에 항상 퇴적되어 있어 이 때문에 섬의 색깔이 하얗다.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는 모두 약 1해리로 두 섬 간의 거리는 약 1/4리이다. 하나의 초맥이 있어 이들을 잇고 있다.</p> <p>서도는 해면상의 높이가 약 410피트이며 모양은 사탕탑 같다. 동도는 약간 낮고 정상이 평평하다. 이 열도 부근은 수심이 제법 깊은 것 같으나 하지만 그 위치는 하코다테로 향하는 일본해를 항행하는 선박의 직항로에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p> <p>(밑줄친 내용은 『중국 수로지』에는 없는 내용이다-필자)</p>

이렇듯 일본의 수로지는 『중국 수로지』에 바탕하여 기술되었으므로 '리양쿠르 록스'를 주칭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서양이 칭하는 리양쿠르 록스가 자국이 오랫동안 칭해 오던 '마쓰시마'라는 사실은 한 줄도 적지 않았다. 당시는 일본에서 마쓰시마가 거의 울릉도 명칭으로 정착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를 편입할 때 '다케시마'로 명명하면서 '리양쿠르 록스'를 주칭의 지위에서 끌어내렸다. 『조선 수로지』(1907)에 '竹

88 1861년의 『중국 수로지』(*The China Pilot*)에는 Pallas로 되어 있다. 아키오카와 가와카미 등 일본학자들은 Pallada로 적었고, 『독도사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311쪽)에는 Palada로 적혀 있다.

島(Liancourt rocks)’로 기재한 것이 이를 보여 주지만 그림에도 여전히 ‘리앙쿠르 록스’를 병기하고 있다. 더구나 『조선 수로지』는 명칭을 영어로 표기했고, “한국인은 이 섬을 獨島라고 쓰고, 본방 어부들은 리앙코島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추가 기술했다.

『일본 수로지』(1907)도 『조선 수로지』와 마찬가지로 ‘오키 열도’에서 ‘竹島(Liancourt rocks)’로 병기했다. 이 수로지는 1883년의 『환영 수로지』와 유사하지만, 서양 호칭을 생략하는 등 이전보다 소략해졌고 독도의 경위도를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다르게 기재했다. 1911년의 『일본 수로지』도 ‘竹島(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 일본이 수로지에서 ‘다케시마’만 표기하게 되는 것은 『조선 연안 수로지』(1933)에 와서다. 표기도 ‘竹島(タケシマ)’로 하며 ‘죽도’와는 다른 섬임을 명확히 했다.

이렇듯 일본은 『환영 수로지』에 ‘리앙코루토 열암’을 주칭으로 했다가 독도를 편입한 뒤로는 ‘竹島(Liancourt rocks)’로 병칭했고, 『조선 연안 수로지』에서는 ‘竹島(タケシマ)’로 표기했다. 일본이 서양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독도를 편입하면서 과거 울릉도 명칭이던 ‘다케시마’를 무리하게 독도 명칭으로 전칭한 것 자체가 괴리된 인식을 보여 준다. 독도를 마쓰시마로 부르던 전통적인 인식의 단절은 일본으로 하여금 다케시마로 정하기 전까지 리앙쿠르 록스로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한편 일본은 지역에 따라 전통적으로 부르던 ‘마쓰시마=독도’ 인식을 여전히 온존하고 있었다.

독도를 칭하는 형태소를 보면, 프랑스는 Roche에서 Rochers로, 영국은 rocks로, 러시아는 설명에서는 ‘섬’으로, 호칭에서는 ‘바위(Скала)’로 표기했다. island로 표기하는 경우, 영국은 Hornet Islands로 표기하고 일본도 ‘열도(islands)’로 표기하여 두 개의 섬으로 보았으나 열암(rocks)으로도 표기했다. 문헌에서의 ‘리앙쿠르 록스’ 관련 표기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문헌에서의 '리양쿠르 록스' 관련 표기

연도	문헌(간행 국가)	명칭	비고
1850	로페즈 보고서(프랑스)	Roche	
1850-1851	수로지(프랑스)	Roche	
1851	태평양전도(프랑스)	Rocher du Liancourt	
1857	조선동해안 지도(러시아)	Сканы(巖)	두 개의 독도 명칭
1861	항해지침(프랑스)	Rochers Liancourt	
1861	중국 수로지(영국)	Liancourt rocks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863	해도 2347호(영국)	Liancourt Rks	'Hornet I.' 병기
1867	대일본국 연해약도(일본)	리양코루토 암	다케시마 등 여러 명칭 병기
1883	환영 수로지(일본)	리양코루토 열암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886	환영 수로지(일본)	리양코루토 열암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894	조선 수로지(일본)	리양코루토 열암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899	조선 수로지(일본)	리양코루토 열암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907	조선 수로지(일본)	竹島(Liancourt rocks)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907	일본 수로지(일본)	竹島(Liancourt rocks)	다른 명칭 언급 없음
1911	일본 수로지(일본)	竹島(Liancourt rocks)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920	일본 수로지(일본)	竹島(Liancourt rocks)	러시아와 영국 명칭 언급
1933	조선 연안 수로지(일본)	竹島(タケシマ)	다른 명칭 언급 없음

### 3. '리양쿠르 록스'의 한국 유입

한국 학자로서 Liancourt를 가장 먼저 언급한 자는 신석호이다.<sup>89</sup> 그는 『史海(사해)』 창간호(1948)에서 “광무 9년 노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이 섬을 점령한 후부터 獨島라 하는 우리나라의 명칭은 사라지고 일본명 竹島(Dakeshima)와 불국명 리양쿠르(Liancourt) 영국명 호네트(Hornet)로서 현행 해도상에 표시하게 되었다.”(필자 윤편)라고 했다. 이어 그는 “리양쿠

89 앞서 신문과 지리지에서 보였는데, 『제국신문』(1901.4.1)이 '양고'에 대해 보도했다(유미림·최은석, 2010, 앞의 책, 76쪽), 지리지에서는 김건중의 『신편 대한지리』(1907)에 '양고'가 보인다. 『신편 대한지리』는 다부치 도모히코의 『韓國新地理』(1905)를 번역한 것이다(유미림·최은석, 앞의 책, 2010, 89쪽; 심정보, 2021, 『동해바다 독도 톨아 읽기』, 민속원, 229쪽).

**‘리양쿠르 록스’ 명칭의 전승과 잔존의 역사적 배경**

르(Liancourt)은 憲宗 15년(서기 1849)에 佛國捕鯨船 리양쿠르號가 이 섬을 發見하고 그 船名을 따서 命名한 것이요, 호네트(Hornet)는 哲宗 6년(서기 1855)에 英國支那艦隊 所屬汽船 호네트號가 이 섬을 發見하고 또한 그 船名을 따서 이름지은 것이다. 이와 같이 獨島 한 섬에 對하여 현재 4개의 이름이 있으나 원래 이 섬은 이조 成宗朝에 三峯島라 칭하든 것이며…”라고 했다.

신석호를 비롯하여 최남선 등 한국 학자가 독도에 대한 서양 명칭을 알게 된 것은 일본인의 글을 통해서일 것이다. 1930년에 쓰보이 구메조가, 1931년에 다보하시 기요시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신석호와 다보하시는 『조선사』 편찬에 함께 참여했던 자이다. 가와카미도 다보하시의 글<sup>90</sup>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전해진 명칭 유래를 알려면 수로지 및 이를 언급한 내용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표 5>가 그것이다.((는 원주)

<표 5> 명칭 관련 「수로지」 인용의 전승 계보

출처	내용
환영 수로지 (1883)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양코루트'가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였으므로 선명을 취하여 '리양 코루트' 열암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의 '프리깃형 함대 '팔라다'호가 이 열암을 '매넬라이'와 '올리부차' 열암이라 불렀고, 1855년, 영국 함선 '호넷'호가 이 열암을 탐험한 뒤 '호넷' 열도(列島)라고 이름 붙였다.
쓰보이 구메조 (1930) <sup>91</sup>	외국 제도(外國製圖)에서 검토하면, Is, Dagelet(Matson Sima) (Jap) Is, Liancourt on Hornet (Jap.)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인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오키의 이른바 전설에서 말하는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
다보하시 (1931)	리양쿠르라는 명칭은 1849년 이 섬을 발견한 프랑스 선박(아마 포경선) Liancourt의 이름을 취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섬이 해도상에 정확히 기록된 것은 '팔라다'의 탐험이 효시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음해 1855년 영국 지나 함대 소속(소속) 코루벳 'Hornet' 함장의 해군 중좌 Commander Charles Codrington Forsyth가 실측했다. 영국 해군성 해도에 호넷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이 때문이다.
신석호 (1948) <sup>92</sup>	리양쿠르(Liancourt)은 憲宗 15년(서기 1849)년에 佛國捕鯨船 리양쿠르號가 이 섬을 發見하고 그 船名을 따서 命名한 것이요, 호네트(Hornet)는 哲宗 6년(1855)에 英國支那艦隊 所屬汽船 호네트號가 이 섬을 發見하고 또한 그 船名을 따서 이름지은 것이다. 이와 같이 獨島 한 섬에 對하여 현재 4개의 이름이 있으나 원래 이 섬은 이조 成宗朝에 三峯島라 칭하든 것이며…

90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제3호, 11쪽, 靑丘學會.

91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 1930, 「竹島に就いて」, 『歴史地理』 56권 1호, 33쪽, 歴史地理學會.

92 신석호, 1948,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창간호, 91~92쪽

<p>秋岡武次郎 (1950, 松島と 竹島, 8쪽)</p>	<p>1849년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가 오키와 다줄레島 사이 즉 다줄레島 동남쪽에서 하나의 섬을 발견했다. 여기에 리양쿠르島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것이 에도시대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던 마쓰시마(松島)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어 러시아의 Putiatin 휘하의 군함 Pallda가 나가사키를 떠나 일본해를 북상하여 연해주로 향하던 중 다줄레島에 와서 그 위치를 측정, 라 페루즈가 측정한 이 섬의 위치를 수정함과 동시에 리양쿠르島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했다. 또 1855년 영국의 중국함대 소속의 기주함(汽走艦) Hornet의 함장 Charles Codrington Forsyth가 이 섬을 실측했다. 현재 영국이 제작한 지도에 리양쿠르島 대신 호넷島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p>
<p>가와카미 (1953, 17쪽)</p>	<p>유럽에서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인정한 것은 1849년의 프랑스 선박(아마 포경선) Liancourt의 발견을 호시로 하는 것 같다. 이어 1854년에는 러시아 Putiatin 휘하의 군함 Pallada가 그 위치를 측정하여 이를 Manalai 와 Olivutsa rocks라고 이름 붙였다. 또 그 다음해인 1855년에는 영국의 중국함대 소속의 기주 콜벳 Hornet호의 함장 해군 중좌 Charles Codrington Forsyth가 실측하여 이 섬은 영국 해도에 Hornet rocks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었다. 이 때문에 그 후 유럽이 제작한 지도에는 아르고노트, 다줄레, 호넷이라는 3개의 섬이 그려진 것이 나타났다.</p>
<p>최남선 (1953, 697쪽)</p>	<p>이 群嶼가 世界 海圖上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름은 '리양쿠르(Liancourt)나 '리양쿠르'는 西紀 一八四九年에 비로소 이 群嶼를 발견한 佛國 捕鯨船의 名稱이라 한다. 日本 山陰地方 漁民間에서 사용하는 リヤンコ는 곧 이 '리양쿠르'의 略稱이다. 一八五四年 '팔라다'의 再發見時에는 '리양쿠르'를 '메네라이' 及 '올리브차' 列島라고 命名하고, 翌 一八五五年에 英國 支那艦隊 所屬 汽走艦 '호네트'(Hornet)號의 艦長 海軍 中領 포어사이드(Charles Codrington Forsyth)는 와서 實測을 새로 한 뒤에 英國 海軍省 地圖에는 '호네트'島라고 記載하게 되었다. 日本 海軍 水路部の 『朝鮮水路誌』에는 自來로 'リヤンコルト 列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왔다.</p>
<p>독도문제개론 (1955, 7쪽)</p>	<p>'리양쿠르'는 憲宗 15년(西紀 1849년)에 佛國捕鯨船 리양쿠르號가 이 섬을 發見하고 그 船名을 따서 命名한 것이요, '호네트'는 哲宗 6년(西紀 1855年)에 英國支那艦隊 所屬 汽船 호네트號가 이 섬을 發見하고 그 船名을 따서 이름지은 것이다. 靑丘叢書 第3號(昭和 6년 2월간) 『鬱陵島의 發見과 그 領有』 田保橋 潔에 이것이 明記되어 있다. 이와 같이 獨島 한 섬에 對하여 現在 네 개의 이름이 있다.</p>

이렇듯 일본에 전해진 '리양쿠르 록스'의 명칭과 유래는 일본에서 간행되는 수로지를 통해 전승되었고 일본 연구자들은 이를 답습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함 명칭이나 도서 표기가 와전되었다. 최남선은 『조선 수로지』의 '리양코루토 열암'을 운운했는데, 이를 언급한 『조선 수로지』는 1894년 판이다. 1955년에 외무부가 다보하시를 언급한 것은 다보하시를 답습한 신석호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리양쿠르 록스'의 유래는 이런 방식으로 전승되어 1960년대가 되면<sup>93</sup> 대부분의 학자들이 언급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지만 잘못된 내용까지 답습되었고<sup>94</sup> 일부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93 대한공론사에서 간행한 『독도』(1965)에 실린 대부분의 글이 이를 언급하고 있다.

94 朴庚來, 1962, "獨島領有權의 史·法的인 研究"(『독도』, 1965, 162쪽 수록).

## IV. 미국의 ‘리앙쿠르 록스’ 인식

### 1. 미국 간행 수로지의 ‘리앙쿠르 록스’

미국은 ‘리앙쿠르 록스’를 언제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일본이 미친 영향은 없는가? 이 장에서는 이를 고찰하되 독도 호칭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박병섭이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표기의 추이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박병섭에 따르면, 미국 수로국은 1909년부터 『아시아 수로지(Asiatic Pilot)』를 간행했는데, 영국이 간행한 『중국 수로지』를 바탕으로 했다. 그리하여 『중국 수로지』 제2판(1855)에 의거,<sup>95</sup> 호넷호가 독도를 처음 발견하고 호넷섬(Hornet islands)이라고 명명한 사실을 수로지에 기술했다. 제3판(1861)은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1849년에 발견한 사실을 소개하되 리앙쿠르 록스를 한국 연안에만 기재하고 일본 연안에는 기재하지 않았다.<sup>96</sup> 그런데 미국은 『아시아 수로지』에서 표제어는 ‘Hornet islands(Liancourt rocks)’로 하고<sup>97</sup> 내용은 “호넷 섬(리앙쿠르암)은 두 개의 불모의 바위섬이며, 새똥이 하얗게 쌓여 있다...”<sup>98</sup>라고 기술했다. 이어진 『아시아 수로지』 제1권 제2판(1918)도 제1판의 내용과 같다. 『아시아 수로지』 제2권 제2판(1920)에서는 ‘Liancourt rocks(Hornet islands)’로, 제3판(1930)에서는 ‘Hornet islands(Take Shima)(Liancourt rocks)’로 기재되어 편입 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sup>99</sup>

95 박병섭은 제2판의 연도를 1855년(2020, 앞의 글, 84쪽)으로, 2판은 1858, 3판을 1861년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이진명은 2판의 연도를 1858년, 3판의 연도를 1861년으로 보았다(2011, 앞의 책, 81쪽).

96 박병섭, 2020, 앞의 글, 85쪽.

97 Hydrographic Office, 1909, *Asiatic Pilot* Vol 1, East Coast of Siberia, Sakhalin Island and Korea, No.122, Hydrographic Office, (박병섭, 2020, 위의 글, 84쪽에서 재인용)

98 박병섭, 2020, 위의 글, 84쪽.

99 박병섭, 2020, 위의 글, 86쪽.

미국이 1909년에는 한국 연안을 기술한 수로지(제1권)에서 ‘리앙쿠르 록스’를 기재하다가 제2권(1910)의 ‘일본의 도서’에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1920년 제2권 제2판부터 일본 연안을 기술한 수로지에서는 ‘Liancourt rocks(Hornet islands)’로 기재했다.<sup>100</sup>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아시아 수로지』를 『일본 항해지침』과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으로 분리·간행했는데 일본은 전자에서, 한국 연안은 후자에서 다루었다. 『일본 항해지침』 제1권 초판(1945)의 표제어는 ‘Take Shima(Liancourt Rocks)’였다가 제3판(1967)의 표제어는 ‘Tok To(Take Shima)(Liancourt Rocks)’였다.<sup>101</sup> ‘Tok To’가 처음 주칭으로 추가된 것이다.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1947)은 ‘Liancourt Rocks(Take Shima)’를 표제어로 하고, 일본 수로부가 1933년에 간행한 『조선 연안 수로지』에 실렸던 독도 원경 사진을 실었다. 제2판(1951)의 표제어는 ‘Liancourt Rocks(Tak shima)’였다. 이는 여러 번 수정되어 1967년판에서는 ‘Tok To(Take Shima)(Liancourt Rocks)’로 변경되었다.<sup>102</sup> 제1회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가능하면 외래 지명을 피하도록 결의한 데 따른 결과였다. 1972년 미국 수로국은 국방부 국방지도 제작국(DMA)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한국·중국 연안 항해지침』(1976)을 냈는데 ‘다케시마(TAKE SHIMA)’로 칭하고 동도와 서도를 언급했다. 제5판(1989)에서는 ‘Liancourt Rocks(Dok To)(Take Shima)’로 바꾸었다.<sup>103</sup> 2004년 국립 지리공간정보국으로 변경된 뒤에 간행된 제19판(2018)에서도 ‘Liancourt Rocks(Dok To)(Take Shima)’로 기재했다.

이렇듯 미국은 수로지에서 섬의 소속과 명칭을 표기할 때 일관성 있게 기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 관련 수로지에서 ‘Take Shima(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고 해서 일본 소속으로, 한국 관련

100 박병섭, 2020, 위의 글.

101 박병섭, 2020, 위의 글, 86-87쪽.

102 이진명, 1998, 『서양 자료로 본 독도』, 138쪽(박병섭, 2020, 위의 글, 89쪽에서 재인용).

103 박병섭, 2020, 위의 글, 91쪽.

수로지에서 ‘Liancourt Rocks(Take Shima)’로 표기했다고 해서 독도를 한국 소속으로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04</sup> 미국은 외래 지명을 피하라는 결의에 따라 1967년에 ‘Tok To’를 추가했을 때도 ‘Take Shima’ 외에 ‘Liancourt Rocks’를 병기했고, 『일본 항해지침』(1967)에서도 ‘Tok To(Take Shima)(Liancourt Rocks)’로 표기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sup>105</sup> 또한 『한국 및 중국 연안 항해 지침』에서도 ‘TAKE SHIMA’로 하거나 ‘Liancourt Rocks(Dok To)(Take Shima)’로 기재하는 등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06</sup> 이는 국무부도 마찬가지다.

##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의 ‘리앙쿠르 록스’

주한 미군은 1948년 6월의 독도 폭격사건을 계기로 ‘Liancourt Rocks’ ‘Takeshima’와 함께 ‘Dok Do’ 명칭을 인지했다. 그리고 이를 국무부에 알린 바 있다.<sup>107</sup> 그럼에도 국무부는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Liancourt Rocks(Takeshima)’로 병기했다. 미 국무부의 불분명한 인식은 연합국 총사령부(GHQ/SCAP)가 발령한 SCAPIN-677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SCAPIN-677은 일본 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명기할 때 “Utsu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라고 하여 독도를 ‘Liancourt Rocks(Take Island)’로 병칭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하여 최초의 불완전한 초안이라는 1947년 3월 20일 자<sup>108</sup> 초안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부속 도서를 “Quelpart

104 박병섭, 2020, 위의 글, 89~90쪽.

105 박병섭, 2020, 위의 글, 90쪽.

106 박병섭, 2020, 위의 글, 93쪽.

107 주한 미군은 폭격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국무부에 서장을 보낼 때 ‘TOK DO BOMBING INCIDENT’라고 칭한 바 있다(박병섭, 2020, 위의 글, 94쪽).

108 정병준은 19일로 보았다(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yo) Island, Liancourt Rock (Takeshima)<sup>109</sup>로 기재했다. 이어 완성된 최초의 공식 초안(1947.8.5)도 “Quelpart(Saishu To), Port Hamilton,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sup>110</sup>로 기재했다.

강화조약 초안에서 ‘Liancourt Rocks(Takeshima)’ 표기는 지속되어 1949년 10월 13일 자 초안에서도 “Quelpart(Saishu To),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로 기재했는데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했지만 ‘Liancourt Rocks(Takeshima)’였다. 이 초안은 10월 27일과 31일에 수정되었다가 11월 2일 자 초안으로 승계되었는데,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했다. 여전히 “Quelpart(Saishu To), and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sup>111</sup>로 기재하였다.

한편 연합국은 극비리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49.12.19)를 체결했는데 이는 윌리엄 시볼드가 조약 초안 검토보고서(11.19)에서 주장했던 영토 조항 처리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다. 이 합의서는 제3조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대한민국에게 전권으로 부여한다는 데 동의한다.”로 규정했다.<sup>112</sup> 독도를 ‘Liancourt Rocks (Takeshima)’로 명기했다. 그러나 1949년 12월 29일 자 초안 및 논평(주석)에서는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독도 표기를 ‘Takeshima (Liancourt

109 이석우, 2006, 『대일강화조약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50쪽.

110 정병준은 8월 5일로 보았고(2010, 앞의 책, 400쪽), 이석우는 8월 6일로 보았다(2006, 위의 책, 68쪽).

111 이석우, 2006, 위의 책, 119쪽.

112 영문 표기는 “Quelpart(Saishu To), and the Nan How Group(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이다(이석우, 2006, 위의 책, 140쪽; 정병준, 2010, 앞의 책, 480쪽).

Rocks)’로 바꾸었다.<sup>113</sup>

1950년 1월 3일 국무부의 지리담당관 보그스는 해밀턴과 피어리에게 「대일 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이라는 비망록을 송부했는데,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명에서 독도를 배제했다. 이후 1950년 7~8월 사이에 개정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논평」에서는 독도를 ‘Takeshima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울릉도(Dagelet)와는 달리 Takeshima에는 한국 명칭이 없으며, 한국이 단 한 번도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고 했다. 이후 덜레스가 간단한 조약을 추구하며 만든 1950년 8월 7일 자 초안에서는 일본에 대한 영토 규정이 사라졌고, 이 방침은 9월 11일 자 개정 초안에도 적용되었다.

덜레스가 호주·뉴질랜드와 회담한 직후 영국은 독자적으로 강화조약 초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51년 2월 28일 자 초안에서 “Utsuryo(Ulling) island, Miancourt rocks(Take island) Quelpart(Shichi or Chejudo) island”<sup>114</sup>를 일본령으로 표기했다. Liancourt를 Miancourt로 오기할 만큼 영국의 인식은 불분명했다. 영국은 3월 초안에서 2월 28일 자 초안의 오류를 정정하여 제주도 와 울릉도·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독도를 ‘Take Shima’로 표기했고, 지도를 첨부한 4월 7일 자 초안도 ‘Take Shima’로 표기했다.

한편 덜레스는 1951년 3월 초 본격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고, 3월에<sup>115</sup> 「대일 평화조약 임시 초안(제안용)」을 확정하였다. 한국 등 15개국에 송부되었는데 독도 관련 조항이 삭제된 초안이었다. 미국과 영국의 초안은 회담을 거쳐 1951년 5월 3일 「영미 합동초안」으로 완성되었는데 제2장 제2조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를 “한국(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를 포함한)”으로 규정했다. 독도

113 이석우, 2006, 위의 책, 150쪽; 정병준, 2010, 위의 책, 488쪽.

114 정병준, 2010, 위의 책, 569쪽.

115 정병준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를 누락한 것이다. 1951년 6월 14일 자 영미 합동초안에서도 독도와 일본 북방 4도에 관한 기술이 누락되었고, 7월 3일 자 초안이 관련국에 송부되었다.

이런 사실은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다.<sup>116</sup> 외무부가 초안을 검토했는데, 법학자 유진오는 조약 초안의 제2조 (a)항에서 한국의 도서를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으로 규정한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라리 德島(울릉도 동단에 있는 가튼 YIANCOURT ROCKS) 가튼 것을 넣는 것이 조울 것이다. 덕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지만 이것을 명기해두지 안 하면 장래 말성이 이리날 여지가 업지 안키 때문이다”<sup>117</sup>라고 했다. 獨島를 ‘德島’로, Liancourt Rocks를 ‘YIANCOURT ROCKS’로 오기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은 델레스에게 한국 정부가 요청한 세 가지 사항의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Dokdo) 및 파랑도(Parangdo)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다.<sup>118</sup>

이때 델레스는 양유찬과 동행한 한표욱 서기관에게 Dokdo와 Parangdo의 위치를 질문했지만, 한표욱은 두 섬 모두 울릉도 인근에 위치한다는, 잘못된 답변을 했다. 다만 이 만남은 한미 간 협의과정에서 처음으로 Dokdo<sup>119</sup>를 언급한 만남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3. 미국 국무부의 리앙쿠르 록스

이즈음 미 국무부에서는 정보조사국 지리담당관 보그스를 중심으로 독도와 관련된 보고서가 세 건(7월 13일, 16일, 31일)에 걸쳐 작성되고 있었다. 7월

116 조선일보는 7월 12일 자료 대일 강화조약 초안 전문이 20일에 공표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117 정병준, 2010, 앞의 책, 744쪽에서 재인용, 7월 25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이다.

118 정병준, 2010, 위의 책, 749쪽.

119 7월 17일 주한 미국대사 존 무초가 국무부에 전보를 보내 외무장관의 수정 사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K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rangdo”로 되어 있었다. 이에 7월 19일 자 문서에 Dokdo로 표기한 것이다(원문은 이석우, 2006, 앞의 책, 247쪽 참조).

13일 자 보고서는 로버트 피어리가 Splatly Islamds(남사 군도)와 Paracel Islands(서사 군도) 그리고 Liancourt Rocks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보그스는 “1949년 조약 초안에는 일본이 한국에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섬들 가운데 Liancourt Rocks(Takeshima)가 들어 있었다.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일본의 부속 소도」 라는 제목의 출판물 제IV부에는 Liancourt Rocks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약 초안 중 (2조) 다음에 일정한 형식으로 이를 특정해서 언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며 본문에 Liancourt Rocks를 넣을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의 표제는 「Liancourt Rocks」인데 본문에서는 ‘Liancourt Rocks(Takeshima)’라고 했다.<sup>120</sup> 보그스는 미국 수로국이 1945년에 낸 『일본 항해지침(Sailing Directions for Japan)』을 인용했고, ‘Take Shima(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sup>121</sup> 보그스는 7월 16일 자 보고서에서도 ‘Take Shima(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 또한 그는 “Dagelet에 대해서는 한국 명칭이 있지만, Liancourt Rocks에 대해서는 한국명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기해야 한다.<sup>122</sup> 만약 이 섬을 한국에 주도록 결정한다면, 제2조 (a) 항 끝에 ‘및 리앙쿠르암(and Liancourt Rocks)’이라고 추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sup>123</sup>라고 했다.

이 보고서가 있는 뒤 7월 19일, 양유찬 대사가 독도와 파랑도의 한국 영유를 주장한 일이 있었고, 이에 보그스는 다시 두 섬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7월 31일 자 보고서다. 그러나 보그스는 한국이

120 정병준, 2010, 앞의 책, 755~756쪽.

121 정병준은 「일본항해지도」라고 표기했으나(2010, 위의 책, 757쪽) 앞에서 『일본 항해지침』이라고 했으므로 통일했다. 『일본 항해지침』에는 ‘Take Shima(Liancourt Rocks)’로 되어 있다.

122 이는 1947년 일본 외무성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낸 『일본의 부속소도 I(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의 「태평양 소도, 일본해 소도서(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는 ‘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Dagelet에 대해서는 한국 명칭이 있지만, Liancourt Rocks에 대해서는 한국명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p. 9)

123 정병준, 2010, 앞의 책, 756쪽.

주장하는 파랑도와 독도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Liancourt를 유럽명으로, Take-shima를 일본명으로 보았으나 한국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별도로 Dokdo를 명기했다. 이로써 국무부 안에서 Dokdo가 운위되었음에도 독도가 리앙쿠르암, 다케시마와 관계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다. 보그스는 Liancourt Rocks의 한국 명칭이 ‘독도’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보그스가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 확인에 실패하자 피어리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문의하기로 결정했고, 대사관은 독도가 울릉도 인근 혹은 다케시마 암 인근에 있다고 회신했다.<sup>124</sup> 덜레스는 다시 무초 주한 미국대사에게 독도와 파랑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조약 실무책임자였던 앨리슨이 작성하여 무초에게 발송한 8월 7일 자 전문은 “우리 지리담당관이나 한국대사관 모두 독도와 파랑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섬의 위치에 대해) 즉각 (정보를) 들을 수 없다면, 이들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인해 달라는 한국 측의 이 제안을 고려할 수 없다”<sup>125</sup>는 내용이었다. 이어 미 국무부는 최종 입장을 양유찬에게 통보했는데 그것이 바로 극동담당 차관보 딘 리스크의 8월 10일 자 서한이다. 리스크가 “Dokdo, 다른 이름으로 Takeshima 혹은 Liancourt Rocks로 불리는 섬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위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 도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다...”<sup>126</sup>라고 기술한 데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로써 한국의 요구는 기각되었고, 미 국무부는 1951년 8월 15일 강화조약 최종 초안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미국에서 독도 인식을 드러내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무부, 중앙정보부, 내무부 등 여러 곳인데, 이 가운데 명칭과 소속을 결정하는 최종기관은 내무

124 정병준, 2010, 위의 책, 765쪽.

125 정병준, 2010, 위의 책, 775쪽. Outgoing Telegram by Secretary of State(Acheson) to Amembassy, Pusan(Mussio)(1951.8.7)(정병준, 775쪽에서 재인용).

126 원문은 신용하, 2020, 『독도 영토 주권의 실증적 연구』 하권, 동북아역사재단, 390~391쪽에 실려 있다.

부 지명위원회이다. 중앙정보부의 독도 인식에 대해서는 정병준과 박병섭의 연구가 있으므로 상론하지 않겠으나, 다만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명칭 표기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CIA 웹사이트는, 독도에 대하여 “NAME: Liancourt Rocks (claimed by Japan)”라고 하고 ENTRY는 한국(South Korea)으로 적혀 있다. Liancourt Rocks를 “일본이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무부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은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지닌다. 그런데 2007년 8월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의 귀속 국가를 ‘한국’에서 ‘주권 미확정 지역’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운영하는 지명 검색 웹사이트에는 독도의 토착 지명을 ‘Chuk-to’로 기재했다.<sup>127</sup>

‘죽도’로 발음한 것이다. 미국이 독도를 ‘주권 미확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되었고, 결국에는 변경 직전 상태인 ‘한국 영유권 보유’로 되돌려졌다. 현재 지명위원회 웹사이트에 등재된 독도의 공식 명칭은 ‘Liancourt Rocks’이고, 그 외에 별칭(Variant-V)으로 Chuk-to, Dog-do, Dog-Do, Dogdo island, Hornet islands, Take-shima, Take Sima, Tök-do, Tok-to가 있다.<sup>128</sup> 다만 미국은 독도의 공식 명칭을 ‘Liancourt Rocks’로 기재하고 이들 명칭 관련 데이터가 지리적 특징에 대한 주권(sovereignty)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단서로 붙였다. 이렇듯 미국은 부처에 따라 독도 표기가 다른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지명위원회는 ‘Liancourt Rocks’, ‘Chuk-to’, ‘Take-shima’, ‘Dog-do’ 등을 열거하고 있다.

127 박병섭, 2020, 앞의 글, 104쪽.

128 GeoNames Search, <https://geonames.nga.mil/namesgaz/>(검색일: 2021년 12월 17일), 박병섭은 “한국의 공식 이름인 ‘Dokdo’가 없고 대신 ‘개똥’을 의미하는 ‘Dogdo’가 표시되는 상태가 1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박병섭, 2020, 위의 글, 105쪽)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는 ‘개똥’의 의미이기보다는 ‘독도’의 발음을 그렇게 듣고 표기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늘날까지 BGN 웹 사이트에 ‘Dog-do’ 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이며 거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 V. 맺음말

한국의 작은 섬 독도에 대하여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각각 차례로 부여한 명칭이 영어 표기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나는 프랑스가 가장 먼저 부여한 명칭이 ‘리앙쿠르 록스’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에 관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영국 해군이 수로지에 프랑스식 명칭을 영어로 표기하여 이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영국이 부여한 ‘Liancourt rocks’가 각국의 수로지에 답습되었고, 그 내용이 확산하여 오늘날 ‘Liancourt rocks’로 잔존하게 된 것이다.

영국은 1861년에 간행한 『중국 수로지』에서 이 명칭을 처음 소개했는데 일본이 1883년의 『환영 수로지』에서 계승하였고 이후의 수로지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영국의 『중국 수로지』는 ‘리앙쿠르 록스’만 언급한 것이 아니었고 일본의 『환영 수로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본은 『환영 수로지』에서 ‘리앙코루토 열암’을 표제어로 삼았고, 이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은 1905년 이후에도 수로지에 ‘다케시마(Liancourt rocks)’로 병기할 정도로 Liancourt Rocks를 독도의 이칭으로 오랫동안 유지했다. 일본이 수로지에서 ‘다케시마’를 단독 표제어로 기술하게 되는 것은 1933년에 와서다.

영국의 『중국 수로지』는 미국의 수로지 편찬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이 1909년에 『아시아 수로지』를 간행할 때부터 호넷 섬과 리앙쿠르 록스를 병기했다. 그러므로 수로지 간행 초기에는 ‘Hornet islands(Liancourt rocks)’로 병기하되 ‘호넷 섬’을 주칭으로 했으나 1920년에는 ‘Liancourt rocks(Hornet islands)’로 바꾸어 주칭이 ‘리앙쿠르 록스’로 바뀌었다. 이것이 1930년에는 ‘Hornet islands(Take Shima)(Liancourt rocks)’로 바뀌었다. 한국 연안을 주로 다룬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1947)에는 ‘Liancourt Rocks(Take Shima)’로 병기했듯이 ‘Hornet island’를 배제하고 다시 ‘Liancourt Rocks’를 주칭으로 삼았다.

이렇듯 미국은 ‘Dokdo’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한 채 여러 명칭을 차용하여 표기하다가 1967년에 와서야 수로지에서 ‘Tok To’를 명기했다. 이때도 미국은 ‘Tok To(Take Shima)(Liancourt Rocks)’로 명기할 만큼 불완전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Tok To(Take Shima)(Liancourt Rocks)’ 표기는 같은 해에 간행된, 일본 연안을 주로 다룬 『일본 항해지침』(1967)에서도 답습되었다.

미국의 인식 부재는 국무부도 마찬가지여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주로 ‘Liancourt Rock(Takeshima)’로 표기했다. 국무부 관리 보그스는 ‘Takeshima(Liancourt Rocks)’로 명기하되, “Takeshima에는 한국 명칭이 없으며, 한국이 단 한 번도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는 인식을 지닌 채 조사에 임했다. 당시 미국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일본 측이 제공하는 정보였으므로 명칭에서도 일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관료들은 강화조약 초안에서 누락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독도’를 삽입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지만, Liancourt Rocks를 Dokdo로 대체할 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Takeshima가 일본 명칭이라는 인식과 함께 ‘Liancourt Rocks’를 잔존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독도의 명칭과 소속을 결정하는 최종 기관인 내무부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토착 지명을 ‘Chuk-to’로 기재하게 된 배경에 미국의 인식 부재가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도 원인(遠因)의 일단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2021년 현재 지명위원회 웹사이트에 등재된 독도 표기의 공식 명칭이 ‘Liancourt Rocks’로 남게 된 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명칭 표기는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래어를 번역하는 경우 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원문을 명기할 필요가 있지만 직접 인용문일 경우 표기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독도에 관한 15가지 일문일답』의 Q12를 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어떻게 취급했나요?”를 질문하고, SCAPIN-677이 규정한 일

본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기술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제시한 SCAPIN 제677호<sup>129</sup>의 원문에는 “Utsu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리앙쿠르암(독도)” 형태로 병기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기는 원문에 두 명칭이 병기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리앙쿠르암’(독도)이라고 쓰거나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그것이 독도임을 따로 주기(註記)할 필요가 있다.<sup>130</sup>

129 SCAPIN-677로 쓰는 것이 맞다. SCAPIN 제677호라고 쓰는 것은 “제 제677호”라고 쓰는 것과 같다. 2011년(『독도사전』)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잘못 쓰고 있다.

130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의 7항 인용문도 마찬가지다. “이 각서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로 구성된다.(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의 원문은 “(a) Utsu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이다. 원문에 리앙쿠르 록스와 다케 아일랜드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원문대로 표기하고 그것이 독도임을 주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렬, 1998,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 김영수, 2019, 『제국의 이중성』,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동북아역사재단, 2020, 『자료로 보는 우리땅 독도 30장면』, 동북아역사재단.
- 박구병, 1989, 『한반도 연해 포경사』, 태화출판사.
- 신석호, 1948,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창간호.
- 신용하, 2020, 『독도 영토 주권의 실증적 연구』 하권, 동북아역사재단.
- 이상균, 2016,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 \_\_\_\_\_, 2021,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 이석우, 2006, 『대일강화조약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_\_\_\_\_, 2011,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 \_\_\_\_\_,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 박병섭, 2020, 「독도의 소속 및 호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 『영토 해양연구』 제19호, 동북아역사재단.
- 이현중, 1979, 「조선 후기 독도의 관할」,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연구』, 한국사학회.
- 정인철,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 해양연구』 제7호, 동북아역사재단.
- 최선웅, 2020, 「19세기 서양의 독도 측량과 해도 제작」, 『韓國古地圖研究』 제12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 한승훈, 2022, 「근대 시기 영국의 울릉도 인식 연구」, 『남도문화연구』 제4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한철호, 2014a,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제17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4b, 「일본 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1875) 간행 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과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_\_\_\_\_, 2015a,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제50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5b,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호, 한국사연구회.

Jean Thierry DU PASQUIER, 「프랑스船의 東海 進出史 - 리양꾸르號의 獨島 發見을 중심으로 -」, 『領土問題研究』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기쿠치 신이치(菊池眞一), 2007, 「幕末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本近海英國海圖 - 日本水路部創設前の海圖史」, 『海洋情報部 研究報告』 第43号.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제3호, 11쪽, 靑丘學會.

스즈키 준코(鈴木純子), 2018, 「伊能圖利用の軌跡」, 『地圖』 56-1호, 日本地圖學會.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歷史地理』 38권 3호, 歷史地理學會.

\_\_\_\_\_, 1930, 「竹島に就いて」, 『歷史地理』 56권 1호, 33쪽, 歷史地理學會.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2008, 「『三國通覽輿地全圖』と『伊能圖』の中の獨島」, 『日本文化研究』 제2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John W. King, *The China Pilot*, Third edition, 1861, London.

## 국문초록

독도의 이칭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는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에서 온 명칭이지만 현재는 영어식 표기가 정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명칭이 국제적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서양이 발견한 최초의 독도 명칭을 수로지에 소개했고 이 명칭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영국은 리앙쿠르 록스뿐만 아니라 자국이 붙인 Hornet islands, 러시아가 붙인 명칭 등을 수로지에 소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Hornet은 Liancourt로, islands는 rocks로 바뀌어 Liancourt rocks가 정착했다. 프랑스 식 표기가 영어식 표기로 정착하여 잔존하게 된 이유는 당시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던 영국이 이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은 자국이 간행하는 수로지에서 영국의 기술을 답습했다. 특히 일본은 여러 개의 독도 명칭 가운데 ‘리앙쿠르 록스’를 표제어로 삼고 이를 주칭으로 다루었다. 이런 경향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한 뒤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수로지 제작 초기에는 호넷 섬과 리앙쿠르 록스를 병기하다가 1947년에는 ‘Liancourt Rocks (Take Shima)’로 표기하고 ‘호넷 섬’을 아예 배제했다.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잔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국 지명위원회 웹사이트에 등재된 독도의 공식 명칭이 ‘Liancourt Rocks’라는 사실은 이 명칭이 얼마나 강고하게 지속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주제어〉

독도, 리앙쿠르 록스, 호넷 섬, 수로지, 해도

## ABSTRACT

###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ransmission and Continuation of the Name Liancourt Rocks

Yoo Mi-rim

(Director,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Liancourt Rocks, another name of Dokdo which wa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name of a French whaling ship, has been established as the English-style designation of the islands and used internationally to date. The English name, Liancourt Rocks, has taken root globally, as the British introduced Dokdo with that name in its pilots.

Not only Liancourt Rocks but also Hornet Islands, a name given by the British, and another name created by Russia were used in describing Dokdo in the British pilots. However, "Hornet" was eventually replaced by "Liancourt;" and "Islands" by Rocks; since then the name "Liancourt Rocks" has been used widely. The reason that the French term has been defined as the English name of the islands is because Britain, which had influence over the oceans around the planet, adopted and continued to use i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so used the British naming in their own pilots. In particular, Japan took Liancourt Rocks as the headword among several names of Dokdo and regarded it as the primary name of the islands. This trend continued for some time after Japan named the islands "Takeshima." The United States was also influenced by the British; "Hornet Islands" and "Liancourt Rocks" were marked in parallel in the early stage of its pilot publica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referred to the islands as "Liancourt Rocks (Take Shima)" in 1947; the name "Hornet Islands" was completely removed. The name "Liancourt Rocks" was also used while draft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urther, the present official name of Dokdo is "Liancourt Rocks" on the website of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This also shows the strong presence of the name "Liancourt Rocks."

#### Keywords

Dokdo, Liancourt Rocks, Hornet islands, pilots, navigational charts

#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I. 문제제기
- II.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
- III.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과 과도정부의 지원
- IV. 과도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군정장관의 출장 명령
- V. 맺음말

## I. 문제제기

조선산악회는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실시 조사하였다. 이때 남조선과도정부(이하 과도정부)<sup>1</sup> 차원에서 독도조사단을 조직하여 울릉도와 독도 현지로 파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조사대의 구성 및 일정, 조사 내용에 관한 연구 성과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었다.<sup>3</sup> 그럼에도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파견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을 밝혀 줄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연히 극히 제한된 기록에 의존하여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기록이 1955년 외무부 정무국의 『독도문제개론』의 내용이다.<sup>4</sup> 외무부 정무국에서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47년 7월 11일 발표한 극동위원회가 채택한 ‘항복 후의 대일기본정책’  
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독도에 대한 소속문제가 세인의 주목을 끌게 하였

\* 논문 투고일: 2022.4.25, 심사 완료일: 2022.5.31, 게재 확정일: 2022.6.2

1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41호에 따라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在朝鮮美軍政廳朝鮮人機關)’을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渡政府)’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에 따라 ‘남조선과도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이란 명칭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는 ‘독도시찰대’, ‘중앙에서 4명의 답사원’, ‘중앙청 각 국장’, ‘답사대’, ‘독도조사단’, ‘중앙으로부터 4명으로 된 조사단’, ‘남조선과도정부에서 파견한 독도조사원 4명’ 등으로 표기하였다(『독도시찰대, 오늘 출발』, 『영남일보』, 1947년 8월 17일, 3면; 『독도조사단, 16일 등장』, 『대구시보』, 1947년 8월 17일, 2면;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독도조사단’이라고 호칭한다.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들녘, 110~114쪽.

3 정병준, 2010, 위의 책, 110~168쪽 참조.

4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외교문제총서 제11호), 34쪽.

다. 따라서 동년 8월 16일부터 동월 25일까지의 10일간 한국산악회<sup>6</sup>가 주축하여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 보고케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다음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단 파견이 1947년 7월 11일 이후 계획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단 파견이 과도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정부에서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산악회의 울릉도 학술조사 계획서상 '후원 문교부'라는 글귀를 통해 문교부에서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또한 울릉도학술조사대원 중 학술반원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참가하였다는 것이나,<sup>8</sup> 해안경비대에서 학술조사대의 이동을 위해 경비함 대전호를 제공했다<sup>9</sup>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편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파견에 관한 내용도 국사관장 신석호의 글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되는 정도이다. 신석호는 1948년 12월 『사해(史海)』 창간호에 게재한 「독도 소속에 대하여」에서 독도조사단의 구성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sup>10</sup> 즉 과도정부 공무원들의 독도 실지 답사는 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에 의해 1947년 8월 1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그때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등 4명이 참가하였다. 이

5 28일의 오기이다. 조선산악회의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1947년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다.  
6 1947년 당시에는 '조선산악회'라고 이름하였다. 조선산악회는 1945년 창설되어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산악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7 조선산악회의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한국산악회 소장자료).  
8 정병준, 2010, 앞의 책, 113~114쪽.  
9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2)", 『한성일보』, 1947년 9월 24일, 2면.  
10 신석호, 1948, 「독도 소속에 대하여」, 『사해』 창간호(12월호), 90쪽.

때 신석호는 울릉도청에 보관되어 있던 1906년 심홍택 군수의 독도 보고서 부분을 찾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11</sup>

1955년 외무부 정무국의 『독도문제개론』에서도 신석호의 글이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독도조사단에 관한 내용 정도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sup>12</sup> 즉 1947년 울릉도·독도 현지조사에 참가한 과도정부 관계자는 추인봉 등 조사원 4명 외에 경상북도 지방과장 등 2명과 제5관구경찰청에서 온 4명이었다.<sup>13</sup> 그리고 조사원들은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와 함께 독도를 실지 답사한 후 '남면 소속 독도'라는 표주(標柱)를 설치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했다.<sup>14</sup>

최근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관한 자료가 부분적으로 발굴되긴 했지만,<sup>15</sup>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필자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를 한국산악회 측으로부터 입수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그 자료들 중에서도 현 한국산악회 변기태 회장이 2022년 3월 시중 고문서 판매상에게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자료들이 눈에 띄었다.<sup>16</sup> 이 자료들은 그 내용을

11 신석호, 1948, 앞의 글, 96쪽.

12 "독도시찰대, 오늘 출발", 『영남일보』, 1947년 8월 17일, 3면; "독도조사단, 16일 등장", 『대구시보』, 1947년 8월 17일, 2면;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13 외무부 정무국, 1955, 앞의 책, 34~35쪽.

14 외무부 정무국, 1955, 위의 책, 38쪽. 그런데 홍종인은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라는 내용 등이 적힌 이 표주들을 1947년 8월 20일 조선산악회에서 간립했다고 적었다. 당시 독도의 동도에 2개의 표주를 설치했는데 다른 표주에는 '울릉도 독도 학술 조사대 기념'이라고 적었다(홍종인, 1977, 「독도」,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년), 102쪽).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표주는 과도정부 독도조사단과 조선산악회가 함께 설치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5 외교부 홈페이지의 독도 사이트에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악회 소장자료가 4점 게시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1947.8), 「조선산악회 → 해안경비대 공문」(1947.7.30), 「위원 피선 및 제22회 위원회 소집 통지의 건」(1947.5.12), 「1947년도 조선산악회 사업계획(보고)」, (외교부 홈페이지: [https://dokdo.mofa.go.kr/kor/pds/part\\_list03.jsp](https://dokdo.mofa.go.kr/kor/pds/part_list03.jsp)) (2022.4.29. 열람.)

16 이 글에서는 이 자료들을 자료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변기태 소장자료'로 표기한다. '변기태 소장자료'는 2022년 5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탁을 받아 소장하고 있다. 그 외 한국산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1947년 조선산악회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산악회 소장자료'라고 표기한다.

불 때, 1947년 당시 조선산악회장이자 울릉도학술조사대장을 맡았던 송석하가 소장하였던 것들로 보인다.

이 자료들은 간단한 메모에서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육필 원고, 울릉도 지도, 울릉도 각석문 탁본, 서신과 공문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43점이 나 된다. 그 자료들 중에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과 관련된 조선산악회의 회의 소집 통지문을 비롯하여, 경비함정 협조와 관련하여 조선산악회와 해안경비대 간에 오간 서한,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 그리고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의 울릉도·독도 출장과 관련된 미군정청의 공문서 등이 있다.<sup>17</sup>

이 문서들은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들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파견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파견 경위를 재구성해 보고 당시 과도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

### 1.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 시기와 추진 경과

앞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1947년 7월 11일 극동위원회의 ‘항복 후의 대일기본정책’ 발표 이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은 아래의 몇 가지 자료

17 이 글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관련 자료는 모두 10점으로 ‘변기태 소장 자료’ 6점,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4점이다. 그 자료의 목록은 후술하는 ‘V. 맺음말’의 <표 2> 참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료는 1947년 9월 21일 『한성일보』에 게재된 울릉도학술조사대 부대장 홍종인이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후 쓴 기고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홍종인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과 관련하여 “작년 가을부터 의도한 것이 이제 실현을 보았던 것”이라고 했다.<sup>18</sup> 즉 조선산악회에서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1946년 가을부터’ 의도했다는 것이다.

둘째 자료는 조선산악회의 1947년 5월 12일 통지문이다. 이 통지문은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에 관한 것으로, 1947년 4월 16일 조선산악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역원 선출 결과를 알리고 향후 역원회가 있으니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자료 1〉 조선산악회 1947년 5월 12일 통지문

K. A. A 총발(總發) 제31호

서기 1947년 5월 12일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

\_\_\_\_\_ 씨 귀하

역원(役員) 피선(被選) 급(及) 제22회 역원회(役員會) 소집 통지의 건

과반 4월 16일 본회 제2회 정기총회의 역원 선거의 결과 별지 금년도 역원 표와 같이 귀하께서 “\_\_\_\_\_ 사(事)”에 피선되옵기에 자의(玆以) 앙고하옵고 일래 다망하실 것이나 본회 발전에 기여해주시심을 복회하오며 좌기 요항(要項)의 역원회 소집 기타를 앙고하오니 소만(掃萬) 참석하심을 경요하옵니다.

기(記)

18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1. 본회 사무국 설치의 건

시내 을지로 입구 조선여행사 본사 내

1. 역원회 급 회원 집회의 건

월례 역원회           매월 제3 금요일 하오 4시

임시 역원회           수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월례 회원집회       매월 제1 금요일 하오 4시

1. 제22회(월례) 역원회 소집의 건

(1) 일시 5월 16일(금) 하오 4시

(1) 장소 을지로 입구 조선여행사 본사

(1) 의사(議事)

1. 각부 보고

1. 특별회원·단체회원 급(及) 지부에 관한 규정의 건

1. 회표장(회원장) 결정의 건 총무부 제안

1. 표창장 발송의 건

백운대 시설에 관하여   총무부 제안

1. 북한산 산막 건설의 건   사업부 제안

1. 당면사업의 건

(ㄱ)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시기, 방법)

(ㄴ) 신록(新綠) 광릉(光陵) 막영회(幕營會)

(ㄷ) 기타

1. 기타 사항

이상

역원회는 1947년 5월 16일 조선산악회 사무국인 조선여행사 본사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sup>19</sup>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역원회 안건을 보면 ‘울릉도학

19 조선산악회의 주사무소는 그 후 조선산악회장 송석하가 재직하는 국립민족박물관 내 등으로 이동하였다.

술조사대 파견(시기, 방법)'이 첫 번째 당면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통지문은 5월 12일 발송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이 이미 5월 12일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16일에 개최된 조선산악회 역원회에서는 통지문에 있는 바와 같이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자료 2> 1947년 6월 2일 임시총회 안내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자료는 조선산악회의 1947년 6월 2일 임시총회 안내장이다.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명의로 작성된 이 안내장은 6월 11일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는 것이다.

<자료 2> 조선산악회 1947년 6월 2일 임시총회 안내장

임시총회 안내

좌기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상호 연락하시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심을 자(玆)에 안내하나이다.

1947년 6월 2일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백

회원 제위  
기(記)

(부기: 附記) 1947년도 회비(일백오십원) 미납하신 분은 6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주심을 양망하나이다.

1. 시일(期) 장소 6월 11일(수) 오후 4시  
서린동 42(종로 광교 서편) 후생관

1. 의사(議事) 1. 회무 보고 2. 단체 회원 규약 3. 회칙 수보(修補)  
4. 회원장의상(會員章意象) 결정 5. 광릉(光陵) 캠핑회 경과보고  
6. 사업계획 발표

(ㄱ) 속리산 추풍령 탐사회

(L)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이상

임시총회 안건을 보면, 두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째 사업은 ‘속리산 추풍령 탐사회’였고, 둘째 사업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었다.<sup>20</sup> 두 사업 중 ‘속리산 추풍령 탐사회’는 5월 12일 역원회 소집 통지문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역원회 안건으로 잡혀 있었던 사업이다. 추정컨대 5월 16일 역원회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결정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속리산 추풍령 탐사회’가 제안되어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의 사업이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은 「조선산악회의 1947년 회무사업개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속리산 추풍령 탐사회는 ‘소백산맥(속리산 ↔ 죽령) 학술조사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7월 중순에 추진되었고,<sup>21</sup>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8월 중순에 추진되었다.

요컨대 조선산악회의 1947년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1946년 가을부터 의도되었으며, 5월 16일 역원회에서 파견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고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여기서 1946년 가을부터 의도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5월 16일 역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 추진을 구체화한 데는 1947년 4월 조선산악

20 참고로 이 안내장을 보면, 회의 안건 중 ‘광릉 캠핑회 경과보고’가 있는데 이는 5월 16일 개최된 역원회의 당면사업 중 하나였던 ‘신록 광릉 막영회’에 대한 경과보고였다. 조선산악회 자료를 보면 광릉 막영회는 5월 24일과 25일 열렸는데, 그 결과를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보고한 것이다. 당시 행사 참가 인원이 어떤 자료 ①에는 17명, 다른 자료 ②에는 6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한국산악회 소장자료)(자료①); 한국산악회, 1977, 『한국산악회 연혁(1945년 8.15 해방~1976년 12월 31일)」, 『한국산악』 제 11권(1975·1976), 264쪽(자료②) 참조.

21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중에는 소백산맥 학술조사단(제3차 학술조사단) 파견 일정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어떤 자료 ①에서는 7월 15~16일간 대원 17명이 편성되어 추진되었다고 하고, 다른 자료 ②에서는 7월 12~25일간 대장 홍종인 등 17명이 참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자료①); 한국산악회, 1977, 위의 책, 264쪽(자료②) 참조.

회 정기총회와 연결시켜 생각할 부분이 있다. 즉 조선산악회에서는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역원을 선출하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추동력을 갖고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사업 추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 2.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관련 추가적 고려 사항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1946년 가을부터 의도했다면 다음 두 가지 부분을 보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어떤 배경 또는 의도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계획되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하게 된 배경 또는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광복 후 독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47년 6월이었다. 광복 후 독도와 관련된 첫 번째 기사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1947년 6월 20일 『대구시보』 기사이다.<sup>22</sup> 1946년 가을에는 독도에 관한 사항이 아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어떻게 의도되었는지는 1947년 9월 21일 『한성일보』에 게재된 홍종인의 기고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sup>23</sup>

1947년의 하기(夏期) 사업으로 소백산맥 학술조사 행사의 뒤를 이어 획기적인 규모로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하게 된 것은 울릉도가 동해의 고도(孤島)로 그 실정(實情)이 소개된 바가 전부터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적(倭敵)과의 전쟁 중 십수 년간은 군사 요충지로서 본토와의 일반적 왕래가 매우 어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실정을 알 수 없었다. 지도상으

22 이에 대해서는, 홍성근 편, 2021,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II: 1945~1954년의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9~32쪽 참고.

23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로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에서도 언제까지나 절해의 고도(孤島)로 버려둘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였던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부터 의도한 것이 이제 실현을 보았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산악회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울릉도가 이전부터 거의 소개된 바 없었고 일반적 왕래도 어려운 동해의 고도인데, 언제까지나 절해의 고도로 버려둘 수 없다는 점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홍종인이 1977년 『한국산악』에 쓴 글과도 연결된다.<sup>24</sup>

산악회 창립 직후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던 때문에 일찍부터 송 회장과 나는 자주 만나 흥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 그는 독도 답사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울릉도도 우리 국토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버린 자식 같은 대접을 받아왔을뿐더러 ‘독도’라고 하면 문헌과 일부 소수의 학자 외에는 아는 사람도 드물다. 금후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국토의 영역을 규정지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도 그 전모를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일본이 독도에 야심을 품고 영유권을 주장해온 사실도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와 저와의 사이에 영유권의 시비가 일어나기 쉬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국토의 영역을 규정지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도 그 전모를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즉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광복 후 국가의 지형지세 및 동·식물, 지질, 방언 등에 대한 각종 학술조사를 통해 국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국토구명사업(國土究明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sup>25</sup> 그리

24 홍종인, 1977, 앞의 글, 101쪽.

25 한국산악회의 국토구명사업에 대해서는 이기석, 2017,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고 홍중인은 독도 답사를 제안한 사람이 조선산악회장 송석하였다고 회고했다.<sup>26</sup>

둘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도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참고로 미군정기 미군정청에서는 1947년 2월 한국인 부처장을 통괄하는 민정장관에 안재홍을 임명하고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41호로 '38선 이남 지역의 입법, 행정, 사법 각 부문의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在朝鮮美軍政廳朝鮮人機關)을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渡政府)로 호칭'하기로 하였다.<sup>27</sup>

시간적으로 볼 때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파견은 안재홍이 민정장관으로 임명된 1947년 2월 이전부터 의도되었고 그 후 과도정부에서 조사단의 파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도정부의 역할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 III.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과 과도정부의 지원

#### 1. 조선산악회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조선산악회의 1947년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사업은 그 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더욱이 이 시기 독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이 1947년 6월 20일 『대구시보』를 통해 처음 기사화되었다.<sup>28</sup> 기사에 따르면, 일본 어민이 독도를 자기 어장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어선에 대해 기총소사를 했

파견 계획서, 『영토해양연구』 제14호, 135~137쪽 참조; 정병준, 2010, 앞의 책, 118~121쪽 참조.

26 홍중인, 1977, 앞의 글, 101쪽.

27 법령 제141호(1947년 5월 17일 시행, 남조선과도정부의 명칭) 제2조.

28 “왜적 일인의 얼빠진 수작, 울릉도 근해외 소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어구(漁區)로 소유”, 『대구시보』, 1947년 6월 20일, 2면.

다는 것이다.<sup>29</sup> 그 기사에는 경상북도 최희송 지사가 독도에 관한 문헌과 실정을 19일 중앙당국으로 송달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중앙당국은 과도정부의 중앙당국으로 생각된다. 1947년 7월 23일 『동아일보』에는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울릉도 도민들이 경상북도를 거쳐서 군정 당국에 진정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sup>30</sup>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과도정부에서는 1947년 6월 조선산악회 임시총회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결정되고, 또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그 시기를 즈음하여 독도 관련 사항에 주목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산악회에서는 1947년 7월 소백산맥 학술조사를 완료한 후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 회원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3) 조선산악회 1947년 7월 30일 회원 통지문

서기 1947년 7월 30일 시내 예장동 1, 국립민족박물관 내  
조선산악회

회원 통지

좌기 월례회 급 하기(夏期) 사업 요항(要項)을 통지하옵니다.

1. 회원 월례회

- (1) 일시 8월 6일(수) 하오 4시
- (2) 회장(會場) 시내 왜성대(倭城臺) 국립과학관 강당
- (3) 강연 '소백산맥 학술조사대' 보고  
사회과학 홍종인 씨, 식물학 최기철 씨

29 이에 대해서는 일본 어민의 기초소사가 아니라 비행기의 폭격이라는 증언도 있다. 홍성근 편, 2021, 앞의 책, 30~31쪽.

30 "판도에 야욕의 축수, 못버리는 일인의 침략성, 울릉도 근해 독도 문제 재연", 『동아일보』, 1947년 7월 23일, 2면.

동물학 석주명 씨, 등반반 김정태 씨

1.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 (1) 일시 자(自) 8월 11일 지(至) 8월 23일 12일간
  - (2) 참가 규정 본회원으로서는 생물, 지질, 기상, 농림, 의학, 사회, 경제 등 학술부문을 책임 담당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정원 30명. 참가 결정은 역원회(役員會)에서 심사함.
  - (3) 참가 신청 8월 6일 한(限), 시내 읍지로 조선여행사 본사 준비 본부
  - (4) 준비, □□, 기타 상세한 것은 신청 시 지시함.
- 이상

조선산악회에서는 이 통지문을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을 알리고 8월 6일 회원 월례회가 있는 날까지 참가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가 자격은 조선산악회 회원으로서 생물, 지질, 기상, 농림, 의학, 사회, 경제 등 학술부문을 책임 담당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신청 접수에 의한 참가자 정원은 30명으로 하였는데, 참가가 예정된 역원(役員) 등 20명을 제외한 숫자로 보인다. 같은 날 해안경비대로 보낸 서한에는 참가자 인원을 전체 50명이라고 적고 있다.<sup>31</sup> 신청자의 학술조사대 참가 여부는 역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 통지문에는 울릉도 답사 기간이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의 문건을 보면 출발일자가 8월 16일로 변경되어 있다. 실제 출발일도 8월 16일이었다.

2.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

홍종인은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후 쓴 기고문에서 해안경비대에서 경

31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서한」(1947년 7월 30일)(자료 4) 참조.

비합정 대전호를 지원해 주어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sup>32</sup> 해안경비대의 협력은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에서는 회장 송석하 명의로 과도정부의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앞으로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

(자료 4)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1947년 7월 30일)

경계자(敬啓者) 유하(榴夏) 건국 축성지시하

귀체도금안(貴體度錦安)하심을 앙축(仰祝)하나이다. 취백(就白) 본회에서는 금년도 제 2차 하기(夏期) 사업으로 래(來) 8월 11일 울릉도에 학술탐사대(자연과학 급 문화부문)를 파견하여 적으나마 건국 성업(建國 聖業)에 이바지하고자 하와 자이(茲以) 계획서를 양정(仰呈)하옵고 고견(高見)을 배사(拜頌)하오니 일래다망(日來多忙)하신 중 죄송하오나 귀하의 절대찬찬조를 복희(伏希)하오며 본 거사(擧事)에 필요하온 좌기(左記) 제반 편의 혜사(惠賜)를 삼가 앙청(仰請)하나이다.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 (직인)

통위부(統衛部) 해안경비대  
총사령 귀하

기(記)

별지 계획서에 의하온 본 학술탐사대 대원 50명의 포항, 울릉도 간 왕복 선행 운송에 특별 편의 혜사(惠賜)를 앙청하옵.

이 협조 요청 서한에는 8월 11일 울릉도에 학술조사대를 파견하는데 그

32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2)", 『한성일보』, 1947년 9월 24일, 2면.

인원이 50명이며 조사대가 포항과 울릉도 간 왕복 이동에 필요한 선박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서한에는 포항과 울릉도 간 운항만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 간 운항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이것은 조선신악회에서 처음부터 독도 답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술조사대 부대장인 홍중인은 그때 학술조사가 비공개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독도행은 실행 전까지 외부 발표를 시종 보류하고 있었으나 이는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해온 기습의 여정이었던 것”이라고 했다.<sup>33</sup> 그는 1977년에 쓴 글에서도 “독도 답사를 표면에 내세우는 일은 현명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표면의 명칭을 ‘울릉도 학술답사’로 했다”고 썼다.<sup>34</sup>

한편, 이 서한의 발신일자는 조선신악회에서 회원들에게 통지문(〈자료 3〉)을 발송한 날과 같은 1947년 7월 30일이다. 이어 다음날인 8월 1일 조선신악회에서는 회장 명의로 해안경비대에 서신을 다시 보냈다. 그 서신의 제목은 ‘각서’로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명, 물품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울릉도학술조사대와 대원 각자가 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자료 5〉 조선신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1947년 8월 1일)

각서

본회 주취 울릉도학술조사대 일행 50명<sup>35</sup>의 포항, 울릉도 간 왕복 해상 수송을 귀관 영솔하의 해안경비대 함선 편에 의촉(依囑)함에 제(際)하야 항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명, 물품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본 대(本隊)와 대원 각자가 부(負)할 것을 약(約)함.

33 홍중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34 홍중인, 1977, 앞의 글, 101쪽.

35 이 문서는 활자화되어 있는데, ‘학술조사대 일행 50명’이란 내용 중 ‘50’이란 숫자가 연필로 ‘63’이란 숫자로 정정이 되어 있다. 63명은 울릉도학술조사대에 실제 참가한 학술반원 숫자이다.

서기 1947년 8월 1일

서울시 예장동 2  
국립민족박물관 내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귀하

조선산악회에서 이 각서를 해안경비대에 보낸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7월 30일자 협조 요청 서한을 받은 해안경비대에서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7월 30일 이후 조선산악회에서는 해안경비대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도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것은 조선산악회에서 아예 협조 요청 서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자료 6) 참조).

(자료 6)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1947년 8월 4일)

1947년 8월 4일

조선산악회장 송 석 하 (직인)

\_\_\_\_\_ 귀하

1. 요건: 조선산악회 주최 울릉도학술조사대 후원 양청(仰請)에 관한 건
2. 설명

(가) 본회 금년도 하(夏) 사업으로 8월 16일로부터 2주간의 기간으로 우리 학계의 중진을 망라하여 울릉도의 사회, 자연 제반에 관한 학술조사대를 편성 파견하여 조사의 결과를 보고 강연, 전람 급(及) 보고서의 간행으로써 동도(同島)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금후(今後)의 문화, 산업 제방면에 기여코저 함.

(나) 조사대의 편성은 사회과학반, 생활실태조사반, 생물학반, 농림반, 수산반, 지질광물반, 기상반, 보도촬영반, 본부행동반 등으로 하여 전원 50명으로 예정함.

(각 반원 명부는 추후 제출함)

(다) 검하야 동도(同島)가 동해상에 고립(孤立) 편재(偏在)하여 문화적으로 혜택이 빈핍(貧乏)함에 감(鑑)하야 의약품, 도서, 학용품 등의 위문품을 휴행(携行)코저함.

이상 취지에 귀(貴) \_\_\_\_\_로서 적극 찬동하시와 본 조사대 사업을 \_\_\_\_\_ 후 원으로 성원(聲援) 편달(鞭達)해 주심을 양청함.

1. 후원 조건: 본대(本隊) 사업 실행에 제(際)하야 관계 관공서(官公署) 명(名) 방면과의 절충, 협력 요청에 편의를 도모해주실 것임.

이 협조 요청 서한에는 조선산악회의 1947년 하기사업으로 울릉도학술 조사대를 파견하여, 울릉도의 사회, 자연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사대는 사회과학반 등 8개 학술반과 본부 행동반으로 편성하는데 대원은 50명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협조 요청 서한에는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에게 의약품, 도서, 학용품 등 위문품도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고, 각 기관 및 단체에 맞게 협조 요청 사항을 적을 수 있게 공란을 두었다. 맨 마지막에는 각 관공서와의 절충이나 협조 요청에 있어서도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산악회에서는 이 협조문 양식에 근거하여 8월 4일 대구역장 앞으로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내었는데, 대구역장에게는 ‘승차 운송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sup>36</sup> 조선산악회에서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필요한 선박뿐만 아니라 기차 등 편의 제공을 위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및 대구역장 등 각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요청 서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일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전까지 문서를 보면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출발일이 8월 11일로

36 「조선산악회장이 대구역장에게 보낸 후원 요청 서한」(1947.8.4)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되어 있었는데, 이 서한에는 8월 16일로 변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3.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답신

해안경비대는 1947년 8월 5일 총사령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선박 협조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이 공문은 조선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준장 손원일)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것인데, 문서 번호(조해경총 제373호)도 있고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직인도 찍혀 있다.

(자료 7)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공문(1947년 8월 5일)

조해경총(朝海警總) 제373호

서기 1947년 8월 5일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준장 손원일 (도장, 직인)

조선산악회장 귀하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

수제지건(首題之件)에 관하여 포항 울릉도 간의 해상 운송에 대하여는 귀하의 요청에 응하겠으나 8월 25일, 26일의 울릉도 독도 간의 왕복은 군정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으로 확답기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고 해(該) 허가를 수령 후 1차 통보하 여주심을 앙망함.

추신: 울릉도 항내는 수심 관계로 안벽(岸壁)에 정박 불가능하오니 동도(同島) 관계청에 의뢰하여 18, 28일의 출입항 시에는 소주(小舟)를 이용하여 승퇴정(乘退艇)하시양.

해안경비대는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을 위한 선박은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서는 군정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안경비대에 다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울릉도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수심관계로 경비함정의 접안이 어려우니 울릉도 관계 부서에 의뢰하여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퇴선과 승선을 하라고 하였다.

이 공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세 부분 있다.

첫째는 조선산악회의 7월 30일 협조 요청 서한에는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에 관한 사항만 있고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해안경비대의 답신에는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자료 7〉 참고). 조선산악회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 간 선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조선산악회가 독도 답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해안경비대가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 선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서는 확답이 곤란하다고 하며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으라고 한 점이다. 공문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일본인들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았다. 1946년 2월 연합국최고사령관 행정관할지도를 보면 독도는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sup>37</sup> 국내외적으로 한국인들의 독도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은 1947년 4월 총격사건에 관한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sup>38</sup> 1948년 폭격사건 직후 미군정청에서 독도 주변수역이 한국민들에게는 최고의 어장 중 하나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sup>39</sup>

37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February 1947).

38 홍성근 편, 2021, 앞의 책, 30~31쪽 참고.

39 Bombing off Liancourt Rocks (June 24, 194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R6 554 Entry A1 1378 Box 141 (USAF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674 Heating to 686 Air Army Bases and Aviation Fields),

기존 연구 성과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이 당시 해안경비대의 원래 경계임무 관할을 벗어나는 사항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40</sup>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 간 운항이 해안경비대의 관할을 벗어나는 사항이라면 군정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 주체는 조선산악회가 아니라 해안경비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정이 관할범위 밖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조선산악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해안경비대의 관할범위 및 임무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미군정청의 독도 등 도서지역에 관한 내부 지침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는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조사단은 8월 18일 울릉도에 입도하고 8월 28일 울릉도에서 나오고, 독도 답사는 8월 25일과 26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까지 조선산악회에서 8월 11일부터 2주간 답사할 것이라고 한 것과 다르다. 조선산악회에서 작성한 6월 2일 임시총회 통지문과 7월 30일 해안경비대에 보내는 협조 요청 서한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학술조사대의 출발일자는 8월 11일이었다. 그런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월 4일 각 기관 단체에 발송하는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 서한에는 출발일자가 8월 16일로 되어 있고, 8월 5일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답신에도 그러한 일정을 염두에 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선산악회의 울릉도 답사 계획은 1947년 8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처음 알려졌다. 그 기사에는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18일 포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1</sup> 이날 신문에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조직 및 첫 회의에 관한 내용도 기사화되었다.

8월 3일 무렵에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일정이 변경된 것은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컨대 조

40 정병준, 2010, 앞의 책, 131쪽.

41 “울릉도답사대, 조선산악회서 파견”, 『부녀신보』, 1947년 8월 3일, 2면; “울릉도학술조사대, 조선산악회서 파견”, 『서울신문』, 1947년 8월 3일, 2면; “울릉도답사대, 조선산악회서 파견”, 『한성일보』, 1947년 8월 3일, 2면.

선산악회가 해안경비대의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8월 11일이면 관할 업무 등으로 선박 제공이 어렵디는가, 또는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이 적극 관여하여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일정 변경(11일에서 16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울릉도학술조사대는 변경된 일정으로 8월 16일 서울을 떠나 8월 17일 대구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포항에서 1박을 하고, 18일 아침 7시 10분 대 전호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다.<sup>42</sup> 한편 8월 17일 해안경비대 포항기지에서는 부사령관 명의로 조선산악회에 울릉도학술조사대 일행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 8〉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사무 연락 서한

사무 연락

본 각서에 귀 일행의 명부를 첨부하시와 당 기지 사령관에게 제출하시옵.

1947년 8월 17일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

조선산악회장 귀하

비고

명부 □식

소속 단체/ 직명/ 씨명(氏名)/ 연령

산악회 서류 중에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가 있는데, 추정컨대 이 때 제출된 것의 부분으로 보인다.

42 “문제 많은 독도도 탐험, 울릉도학술조사대 안착 활동 중”, 『자유신문』, 1947년 8월 21일, 2면.

## IV. 과도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군정장관의 출장 명령

### 1.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개최

8월 3일 신문에는 과도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문제를 중대하게 보고, 민정장관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여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실렸다.<sup>43</sup> 그 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 중앙청 민정장관실에서 열렸는데, 관계 방면의 권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sup>44</sup> 이 회의에서 독도가 우리의 판도라는 유력한 증거물을 얻었다고 하며, 주도 면밀한 조사를 거듭하여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sup>45</sup>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가 개최된 다음날(8월 5일) 해안 경비대에서 조선산악회에 서신을 보내어 포항과 울릉도 간 선박 편의 제공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는 제5관구경찰청에서 경무부장 통첩에 의하여 4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1명, 사진사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sup>46</sup>

### 2. 외무처와 업무 협의

과도정부에서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적 태도를 보인 것은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에 보낸 8월 7일 서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도정부 외무처 일본과에서는 1947년 8월 7일 조선산악회장(송석하)에게 서한을 보내어, ‘울릉도 여행 건’으로 상의

43 “독도 문제 중대화, 수색위원회 조직코 협의”, 『동아일보』, 1947년 8월 3일, 4면; “독도는 우리 판도, 역사적 증거 문헌을 발견, 수색회사 맥 사령에 보고”, 『동아일보』, 1947년 8월 5일, 2면; “독도조사단, 16일 등장”, 『대구시보』, 1947년 8월 17일, 2면.

44 “독도는 우리 판도, 역사적 증거 문헌을 발견, 수색회사 맥 사령에 보고”, 『동아일보』, 1947년 8월 5일, 2면.

45 홍성근 편, 2021, 앞의 책, 32~33쪽.

46 “독도에 조사단, 경찰청서 파견”, 『대구시보』, 1947년 8월 12일, 2면.

코자 하니 당일 오후 2시경 외무처 일본과로 내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서한을 보낸 그날 바로 일본과로 내방해 달라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sup>47</sup>

(자료 9)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1947년 8월 7일)

설대(舌代)  
 울릉도 여행 건으로 상의코저 하오니 미안하오나 금일 오후 2시경 외무처 일본과로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7일  
 외무처 일본과

산악회장 좌하(座下)

외무처 일본과 서한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울릉도로만 가는 여행이었다면 굳이 일본과에서 상의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울릉도 여행 건’에 대해 상의하지는 것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좀 더 사안을 좁히면 독도 답사에 관해 상의하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리에서는 해안경비대에서 조선산악회에 요청한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관한 군정장관의 허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에는 실제 외무처 일본과장(추인봉)도 당시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1882년 울릉도 개척령 공포 직후 울릉도에 입도하여 생활한 주민 홍재현의 진술서를 받기도 하였다.<sup>48</sup>

47 이 서신은 ‘외무부’가 표시된 용지를 사용하였고 그 봉투에는 조선총독부가 적혀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외무처 일본과’를 수기로 써놓았다.

48 외무부 정무국, 1955, 앞의 책, 35~37쪽.

### 3. 군정장관의 출장 허가 명령

해안경비대에서 8월 5일 조선산악회에 요청한 군정장관의 허가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미군정청(USMGIK) 본부에서 시행된 1947년 8월 15일 공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공문은 제목이 ‘여행 명령(Travel Orders)’으로, 미군정청 군정장관 아처러치(Archer L. Lerch)의 명령에 따라 1947년 8월 15일 시행된 것이며 미군정청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 공문에는 과도정부 소속 한국인 공무원들(6명)의 울릉도와 독도 출장을 허가하는 내용도 있다. 이 시행 공문은 영어로 작성되었고 부관참모보 대리 워드(H. M. Ward) 중위가 서명하였다.

(자료 10) 미군정청에서 발행한 출장 명령 공문(1947년 8월 15일)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PO 235 UNIT 2

MGXAG 300.4 (T-186) 15 August 1947  
SUBJECT: Travel Orders  
TO: Distribution "X"

1. (중략)

2. Fol named individuals, civilian employees, this Hq are authorized to proceed from APO 235 Unit 2 o/a dates indicated to such destinations in Korea as are set forth opposite their respective names:

ACTIVITY	NAME	DATE	DATE OF RETURN	DESTINATION
	(중략)			
Ofc of For Aff	Mr Chyu In Bong	16 Aug 47	29 Aug 47	Tokto & Ullung
Ofc of For Aff	Mr Lee Bong Soo	16 Aug 47	29 Aug 47	Tokto & Ullung
Ofc of For Aff	Mr Hahn Ki Joon	16 Aug 47	29 Aug 47	Tokto & Ullung
Ofc of For Aff	Mr Cyn Suk Ho	16 Aug 47	29 Aug 47	Tokto & Ullung
Dept of Edu	Mr Sohng Suk Ha	16 Aug 47	31 Aug 47	Uhl Yong Do, Dok Do and Po Hand
Dept of Edu	Mr Choi Yun Shik	16 Aug 47	31 Aug 47	Uhl Yong Do, Dok Do and Po Hand

(※ 필자 주: 표의 내용은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와 관련된 사항만 발췌함)

3. (중략)

4. Supply Officer, this Hq, will furnish authorized rations.

5. Tvl by Govt rail and/or mtr T auth. Upon compl of mission personnel will ret to proper orgn and sta. TDY, TDN, Auth: Ltr, Hq, XXIV Corps, file TFXAG 300.4, dtd 1 Oct 45.

※ Personnel marked by asterisk are auth tvl by air.

BY COMMAND OF MAJOR GENERAL LERCH:

(서명)

H. M. WARD

1<sup>st</sup> Lt CE

Actg Asst Adj Gen

출장 명령은 울릉도학술조사대가 서울을 출발하기 전날(8월 15일)에 내려졌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산악회장이 8월 7일 외무처 일본과에서 협의를 한 후 군정장관에게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장자 명단은 관련부처, 이름, 출발일, 귀환일, 목적지로 되어 있다.

〈표 1〉 출장자 명단 및 일정

관련 부처	이름	출발일	귀환일	목적지
외무처	추인봉	1947.8.16	1947.8.29	독도, 울릉도
외무처	이봉수	1947.8.16	1947.8.29	독도, 울릉도
외무처	한기준	1947.8.16	1947.8.29	독도, 울릉도
외무처	신석호	1947.8.16	1947.8.29	독도, 울릉도
문교부	송석하	1947.8.16	1947.8.31	울릉도, 독도, 포항
문교부	최연식	1947.8.16	1947.8.31	울릉도, 독도, 포항

### 1) 출장자 명단

과도정부의 울릉도, 독도 출장자 명단을 보면 외무처 관련자 4명과 문교부 관련자 2명으로 되어 있다. 관련부처는 출장자의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출장 업무 또는 출장 신청과 관련된 부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무처 관련 출장자들을 보면,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문교부 편수사 이봉수, 수산국 기술사 한기준, 국사관 관장 신석호 등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과도정부 독도 조사원들이다. 그런데 과도정부의 독도 조사원들은 중간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악회에서는 8월 17일 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의 요청으로 최종 명단을 제출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조사대 편성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 명부들 중에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편성 명부)」로 되어 있는 자료에는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이란 표시는 없지만 독도조사단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sup>49</sup> 그 편성 명부의 총원은 67명이고, 명단 제일 마지막에 4명의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데, 과도정부 독도 조사원들이다.

이름과 소속(직위)은 신석호(申奭鎬, 국사관 부관장), 이봉수(李鳳秀, 문교부 편수사), 이준(李遵, 외무처 일본과), 최창근(崔昌根, 상무부 공업국 전기과 기사)까지 4명이다. 그리고 이름이 없이 소속만 적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소속은 ‘수산국 수산과’로 되어 있다. 이 편성 명부는 활자화되어 있는데, 외무처 일본과 이준에

49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편성 명부)(조선산악회)」(번기태 소장자료).

대해서는 연필로 줄을 그어 지우고 대신 ‘추인봉(秋仁奉)’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과도정부 독도조사단 4명 중 신석호, 이봉수는 변경이 없었지만, 외무처 일본과의 이준은 과장 추인봉으로 변경되었고, 수산국 수산과 공무원은 한기준(韓基俊)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상무부 공업국의 최창근은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학술반원으로 재배치되었다.<sup>50</sup>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일행 4명이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문교부 관련 출장자들을 보면,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 관련자들로 보이는데, 송석하(Sohng, Suk Ha)와 최연식(Choi, Yun Shik)이다. 송석하는 국립민족박물관장으로 당시 조선산악회장 겸 울릉도학술조사대장을 맡고 있었다. 최연식은 과도정부의 독도 조사원도 아니고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에도 없다. 그가 출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면 미군정청 소속 한국인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울릉도·독도 현지조사에 참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관련부처가 ‘문교부’로 되어 있는 것은 울릉도학술조사대가 표면적으로는 울릉도 학술조사 계획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문교부 후원’으로 추진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이것은 정작 문교부 편수사인 이봉수가 문교부가 아니라 외무처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출장 일정과 목적지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의 출장 일정을 보면, 출장자 6명의 출발일은 8월 16일로 같으나, 귀환일은 추인봉 등 외무처 관련자는 8월 29일인데, 송석

50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조선산악회)」(변기태 소장자료). 이 명부는 각주 49에서 언급한 명부가 작성된 후 다시 정리한 명부로 보인다. 여기에는 신석호, 추인봉 등 과도정부 독도 조사원의 이름은 없다.

51 이 울릉도 학술조사 계획서에는 “주최 한국산악회, 후원 문교부”로 되어 있다.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한국산악회 소장자료).

하 등 문교부 관련자는 8월 31일이다. 출장 목적지는 출장자 6명 모두 울릉도와 독도이나, 문교부 관련 출장자로 되어 있는 송석하와 최연식의 출장 목적지에는 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문에는 이들의 출장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내의 출장 목적지(such destinations in Korea)’로 표현되어 있는데, 독도가 미군정청의 출장허가 구역 내지 한국의 관할구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문상 영어 지명이 Tokto와 Dokdo, Ullung과 Uhl Yong Do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나 동일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고, 또한 Po Hand는 Po Hang(포항)의 오타로 보인다.

### 3) 보급품 등 편의 제공

참고로 이 시행 공문에는 출장자들을 위한 보급품 제공 및 교통편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의 출장이 사적 여행이 아니라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출장 명령에 의해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가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다.

미 군정장관이 울릉도학술조사대장 송석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로의 출장을 허가하고, 또 보급품 제공 및 교통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공문은 8월 5일 해안경비대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의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기초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를 재구성해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내용을 소개한 자료는 모두 10점으로 그중 6점(변기태 소장자료)은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이고 나머지 4점은 한

국산악회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이다(〈표 2〉 참조).<sup>52</sup> 이들 자료들은 내용 상 서로 연결된 자료들로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를 밝혀주고 있다.

〈표 2〉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관련 자료 목록

연번	문서명	시행일자	소장처
1	조선산악회 역원회 소집 통지문 -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	1947.5.12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2	조선산악회 임시총회 안내문 - 임시총회 안내	1947.6.2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3	조선산악회 회원 통지문 - 회원 통지	1947.7.30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4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	1947.7.30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5	조선산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 - 각서	1947.8.1	변기태 소장자료
6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	1947.8.4	변기태 소장자료
7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공문 -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	1947.8.5	변기태 소장자료
8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	1947.8.7	변기태 소장자료
9	미군정청에서 발행한 출장명령 공문 - Travel Orders	1947.8.15	변기태 소장자료
10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사무 연락 서한 - 사무 연락	1947.8.17	변기태 소장자료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1946년 가을부터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1947년 4월 조선산악회 제2차 정기총회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추동력을 갖게 되었고, 그 후 5월 역원회와 6월 임시총회를 통해 1947년 하기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6월 이후 일본 측의 독도 도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과도 정부에서도 독도 관련 사항에 주목하게 되었다. 조선산악회에서는 또 하나의 하기 사업인 7월 소백산맥 학술조사를 마친 후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52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4점 중 2점은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 2〉의 1번과 4번 자료이다. ([https://dokdo.mofa.go.kr/kor/pds/part\\_list03.jsp](https://dokdo.mofa.go.kr/kor/pds/part_list03.jsp)) (2022.4.29 열람)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산악회에서는 7월 30일 통지문으로 울릉도학술조사대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해안경비대에 포항 ↔ 울릉도 ↔ 독도 간 이동을 위한 선박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과도정부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발 일정이 8월 11일에서 16일로 변경되었다.

8월 3일 국내 신문을 통해 두 가지 소식이 기사화되었다. 하나는 과도정부에서 민정장관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8월 4일 연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산악회에서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울릉도학술조사대를 8월 16일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 시기 과도정부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파견도 추진하게 되었다.

8월 5일 조선해안경비대는 선박 편의 제공을 약속하였고, 8월 7일 외무처 일본과에서는 울릉도학술조사대장 송석하를 외무처로 불러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도정부의 독도 조사원이 정해지고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 참가인원도 확대되었다. 조선산악회에서는 조사단의 규모를 당초 50명으로 예정했지만 이후 63명으로 늘어났고,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과 경상북도 공무원, 제5관구경찰청 직원까지 합하면 80여 명이나 되었다.

한편 학술조사 추진 과정에서 해안경비대 경비함정이 울릉도학술조사대원들을 태우고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데는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8월 20일 경비함정의 독도 운항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으로 참가한 한국인 공무원들은 민정장관의 지시와 군정장관의 출장 허가 명령을 득한 후 독도 현지로 공무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이다.

요컨대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조선산악회의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조직, 독도조사단 파견, 해안경비대의 독도 운항, 독도 영토표주 설치, 공무원들의 독도 방문, 조선

산악회에 대한 과도정부의 독도 관련 활동 지원 등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주권국으로서 의사와 의지를 표시하고 국가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과도정부의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법상 독도의 소속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sup>53</sup>

특히 미군정청 군정장관이 한국인 공무원들에 대해 독도를 ‘한국 내 출장 목적지’로서 출장을 허가한 것은 독도가 미군정청의 출장 허가 구역 내지 한국의 관할구역임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군정기 독도의 소속을 밝혀주는 공문서 등 자료의 발굴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나아가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평화적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되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53 박현진, 2015,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간합동 학술과학조사: 1947년 및 1952-53년 (과도) 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60권 제3호, 61~96쪽 참조; 유하영, 2020,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65~92쪽 참조.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박현진, 2015,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1947년 및 1952-53년 (과도) 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60권 제3호.
-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 개론』(외교문제총서 제11호).
- 유하영, 2020,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 이기석, 2017,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파견 계획서」, 『영도해양연구』 14호.
-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 한국산악회, 1977, 「한국산악회 연혁(1945년 8.15 해방~1976년 12월 31일)」,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 한국산악회.
- 홍성근 편, 2021,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II: 1945~1954년의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 홍종인, 1977, 「독도」,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 한국산악회.

### 2. 기타 자료

-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1947.5.12).
- 「임시총회 안내」(1947.6.2).
- 「회원 통지」(1947.7.30).
-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1947.7.30).
- 「조선산악회장이 대구역장에게 보낸 후원 요청 서한」(1947.8.4).
-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1947.8).
-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편성 명부)(조선산악회)」(1947.8).
-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

• 변기태 소장자료

「조선산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1947.8.1).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1947.8.4).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1947.8.5).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1947.8.7).

Travel Orders(1947.8.15).

「사무 연락」(1947.8.17).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조선산악회)」(1947.8).

• 국내 신문

『대구시보』, 『동아일보』, 『부녀신보』, 『부인신보』, 『서울신문』, 『영남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성일보』 등.

• 해외 문서보관소 소장자료

Bombing off Liancourt Rocks (June 24, 194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RG 554 Entry A1 1378 Box 141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674 Heating to 686 Air Army Bases and Aviation Fields)].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February 1947).

## 국문초록

1947년 8월 조선산악회와 과도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파견 경위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와 관련하여 발굴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정부의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조선산악회에서는 이미 1946년 가을부터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의도하였다. 조선산악회는 1947년 4월 정기총회 이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추동력을 갖고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1947년 하계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1947년 6월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과도정부는 독도 관련 사항에 주목하였다. 1947년 7월 말 이후 조선산악회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도조사단도 조직하여 독도 현지로 파견하였다.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조선산악회의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다.

한편, 이 시기 과도정부가 행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조직, 독도조사단 파견, 해안경비대의 독도 운항 등은 독도에 대한 주권국으로서 의사와 의지를 표시하고 국가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군정청 군정장관이 명령으로서 한국인 공무원들의 독도 출장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공문서는 독도가 미군정청 내지 한국의 관할구역임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미군정청, 과도정부, 조선산악회, 송석하

## ABSTRACT

### The Dispatch of Ulleungdo Scientific Research Team by Corean Alpine Club in 1947 and the Roles of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Hong, Seung Keun

(Senior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August 1947, Corean Alpine Club (hereafter CAC) and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conducted a scientific research on Ulleungdo and its annexed island, Dokdo. However,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dispatching of this Research Team has not been studied in detail due to lack of references and resources.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analyze newly-discovered documents related to the scientific research, with the goal of revisiting the dispatch process of the CAC's Ulleungdo Scientific Research Team and evaluating the roles of the Interim Government.

Since the fall of 1946, the CAC was already planning to dispatch the Ulleungdo Scientific Research Team. In April 1947, the reorganization of the CAC, conducted after the regular assembly meeting, provided a momentum and it made efforts to send the research team as part of its summer project in the same year.

As Japan's provocation on Dokdo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late June 1947,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paid close attention to the Dokdo issues. Since the end of July in 1947, the CAC's efforts for dispatching the Ulleungdo Scientific Research Team went into full swing. The 1947 research of Ulleungdo and Dokdo wa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preemptive planning and leadership of the CAC, along with the activ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im Government.

In addition, the Interim Government expressed its will and commitment as the sovereign state of Dokdo and exercised its sovereign functions by organizing a Dokdo search committee, dispatching a Dokdo Investigation team, and operating the Coast Guard's navigation to Dokdo. In this regard, The official documents containing the records of the military governor of USAMGIK which permitted Korean officials' business trip to Dokdo particularly has great significance in proving that Dokdo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SAMGIK or Korea.

#### Keywords

Ulleungdo, Dokdo, USAMGIK, Korean Interim Government, Corean Alpine Club, Song Suk Ha





# 자료소개



- 정영미 | 「秘 다케시마(竹島)」와 1906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
- 조규현 | Archives New Zealand와 ANZUS 조약을 중심으로 본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秘 다케시마(竹島)」와 1906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들어가며
- II. 「秘 다케시마」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
- III. 시마네현 관민의 독도와 울릉도 시찰
- IV.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
- V. 나오며

## I. 들어가며

「秘 다케시마」는 메이지 38년(1905)에서 메이지 41년(1908년)에 생산된 독도 관련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철이다. 총 28개 문서군 37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각 문서는 (1)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강치 독점적 사업 추진 계획 (2) 독도 편입 신청 (3) 독도 편입 관련 시마네현의 행정 조치 (4) ‘다케시마 강치 어업 회사’의 1905~1908년 실적 관련 문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문서의 주요 내용은 [붙임 1]과 같다. 현재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에 소장되어 있다.<sup>1</sup> 이 글에서는 「秘 다케시마」 소수 문서로서 그동안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독도·울릉도 시찰 8 항목」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 II. 「秘 다케시마」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

「秘 다케시마」에 수록된 모든 문서는 필사본이다. 1905년 독도 편입 이후 1908년까지의 경과를 알 수 있는 공한, 행정 문서 등을 필사하여 묶은 것으로 보인다. 편집 시기는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기(1952~1965)일 것이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1965년까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이 기간 동안 독도/다케시마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다수의 외교 각서가 오고갔고<sup>2</sup> 근거 자료로서 독도/다케

1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특정역사공문서 목록 群1-1111 「秘(朱印) 竹島」(제작 연도 미상).

2 이때 오고 간 문서들은 다음의 문서집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 27통, 일본 29통)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2-53,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5;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4,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6;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5-59,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7;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60-64,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8;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65-71, 분류번호 743.11JA, 또한 위 내용은, 외무부 정무국 편, 1955, 『독도문제개론』, 외무부;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편, 2012, 전면 개정판 『독도문제개론』(전면개정판), 외교통상부로 정리되어 있다. 동문서 중 한일 간 왕복 각서는 다음의 문헌에 해제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신용하, 2000, 『독도 연구총서 7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서울; 신용하, 2001, 『독도연구총서 8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서울.

시마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논증하는 ‘정부견해’도 서너 차례 주고 받았다.<sup>3</sup> 「秘 다케시마」의 소수 문서는 이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이 준비한 문서로 추정된다.<sup>4</sup>

「秘 다케시마」 소수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竹島) 竹島の島根県編入)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竹島問題について明治期における竹島の島根県編入)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 중 1905년 독도 시마네현 편입 논리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구축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문서의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어 주목할 만하다. 그와 같은 문서 중 이 글에서는 1906년 시마네현의 독도 시찰과 관련된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시마네현의 독도 시찰에 대해 살펴보겠다.

### III. 시마네현 관민의 독도와 울릉도 시찰

1906년 3월 22일 시마네현 관민 45명이 독도 시찰길에 올랐다. 독도 시찰단은 시마네현 마쓰에(시마네현 현청 소재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시마네현 사카이항(港)에 도착, 23일 사카이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키 섬 사이고항에 도착했다. 다음 날인 24일 사이고항에 머물며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다가 25일 사이고항을 출발, 26일 독도에 도착하여 둘러본 후 울릉도로 갔고 이틀 후인 28일 울릉도 도동을 출발하여 29일 사이고항으로 되돌아 왔다. 그

3 한국 3회, 일본 4회의 정부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 1953.9.9, 『韓國政府見解①』, 1954.9.25, 『韓國政府見解②』, 1959.1.7, 『韓國政府見解③』.

일본: 1953.7.13, 『日本政府見解①』, 1954.2.10, 『日本政府見解②』, 1956.9.20, 『日本政府見解③』, 1962.7.13, 『日本政府見解④』.

4 제작자, 제작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시마네현 현사편찬실 주관이며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신 연구(島根県竹島の新研究)』(1965)를 집필한 다무라 세이사부로(田村清三郎)가 관여하여 1965년 전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리고 30일 사이고항을 출발, 사카이항을 경유하여 마쓰에로 복귀했다.<sup>5</sup>

독도 시찰단에는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등 시마네현과 오키 섬 소속 공무원과 야스카군(郡) 아이카촌(村) 심상고등 소학교장 오쿠하라 후쿠이치(奥原福市) 등 민간인이 참여했다. 독도 편입을 신청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도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 사원으로서 참여했다. 이때 참여한 면면의 구성은 [붙임 2] <표 2>와 같다.<sup>6</sup>

1906년 독도 시찰단에 대해서는 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오쿠하라 후쿠이치가 집필한 『다케시마와 울릉도(竹島及鬱陵島)』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가 쓴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1906년 9월 7일자 서문에 따르면, 독도를 편입한 해인 1905년 여름에 먼저 마쓰나가 다케키치(松永武吉)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시찰한 후 1906년 봄에 진자이에게 다시 독도 시찰과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진자이가 40여 명의 시찰단을 꾸려 ‘제2 오키마루’를 타고 독도를 시찰, 그 위에 있는 울릉도까지 시찰한 후 복명했으며, 이후 오쿠하라가 복명서 등을 참조하여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집필했다고 한다.<sup>7</sup> 오쿠하라가 집필한 「범례」 말미에 “메이지 39년(1906) 5월 28일 대해전 1주년 기념일 오키하라 헤키운(碧雲) 씀”이라는 기술이 있다.<sup>8</sup> 헤키운은 후쿠이치의 호(號)다.

이 책은 당시가 아닌, 약 60년 후인 1965년에 4월에 발간되었으며 다케시마라는 명칭의 독도는 「지리·기후·생물·어업·어민생활 상황·연혁」에 대해, 울릉도는 「지리·기후·생물·생업·상업무역·교통·주민·교육·정치·토지·우리나라 이주민·연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외 시찰 중 찍은 사진과 독도 주변 해도, 항해일지, 시(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울릉도 입도 후의 독도 시찰단의 동향에 대해서는 울도군수 심홍택

5 奥原碧雲, 2005(복각판 1쇄),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99~112쪽.

6 奥原碧雲, 2005, 위의 책, 112~114쪽.

7 奥原碧雲, 2005, 위의 책, 3쪽, 1939년 7월 집필.

8 奥原碧雲, 2005, 위의 책, 5~6쪽.

보고<sup>9</sup>로 통해서 알려져 있다. 심흥택은 ‘울도군 소속 독도가 100여리 밖 먼 바다에 있는데 초4일(음력) 일본 관인 일행이 울도 군청으로 와서 독도가 일본 영지가 되어서 시찰차 왔다고 한 후, 울릉도 호수와 인구, 토지, 생산의 다소, 군청 인원 및 경비에 대해 조사해 갔다’고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보고했다.

여기에서 독도 시찰단이 ‘울릉도 호수와 인구, 토지, 생산의 다소, 군청 인원 및 경비’에 대해 조사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 독도 시찰단이 울릉도에 입도한 이유는 ‘기상악화로 인한 피난’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에 따르면, 독도 시찰이 끝나자 “한동안 파도가 높이 일고 기상이 나빠져서 우선 울릉도로 피난했다”<sup>10</sup>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한 피난’은 울릉도 입도 이유로서는 가(可)하나 입도 후 울릉도 호수와 인구 등의 조사 이유는 되지 않는다. 또한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울릉도에 대한 것이 「지리·기후·생물·생업·상업무역·교통·주민·교육·정치·토지·우리나라 이주민·연혁」으로 나뉘어 상세히 집필된 배경으로서 ‘기상 악화로 인한 피난’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秘 다케시마」의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은 『다케시마와 울릉도』와 심흥택 보고서의 간극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료다. 즉, 두 사료에 기록된 독도 시찰단의 울릉도 시찰 활동이 왜 추진되었는지를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하 동 사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 IV.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

「秘 다케시마」에는 1906년 시마네현 관민 시찰단의 독도·울릉도 시찰

9 各 관찰도거래안 및 「보고서호외」(규장각 17990).

10 위의 문서, 108쪽.

관련 문서가 3건 수록되어 있다. 「상(商) 제889호」 '다케시마 및 울릉도 시찰 조사 사항에 관한 조회 건'<sup>11</sup>, 「을농(乙農) 제 169호」 '다케시마 및 울릉도 시찰 조사 사항에 건 회답 건'<sup>12</sup>, 「다케시마 시찰(竹島の視察)」<sup>13</sup>의 3건이다. 이 중 전자 2건은 독도와 울릉도 시찰 관련 시마네현과 오키도청 사이에 오간 공문서이고 후자 1건은 독도 시찰 상황을 집필한 것인데 작자는 미상이다. 여기에서는 독도 시찰단의 울릉도 시찰이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알려 주는 전자의 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는 불임 31 참조)

### 商第八八九号

竹島及鬱陵島視察調査事項ニ就キ、御意見之廉有之候ハ、承知致度候間、御申報被表度、尚右件ニ付面議之必要有之候ハ、御出県被成候テモ差支無之、此段照会候也。

明治三十八年八月廿四日

島根県第三部長 事務官 神西由太郎

隱岐島司 東文輔殿

### 상(商) 제889호

다케시마 및 울릉도 시찰 조사 사항에 관해 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알려 주시길 바라며, 또한 동 건 관련 대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현청으로 출장 나오셔도 되십니다. 이에 대해 조회하는 바입니다.

메이지 38년(1905) 8월 24일

11 목록번호 022-00.

12 목록번호 022-01.

13 목록번호 023-00.

시마네현 제3부장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 님

### 乙農第一六九号

商第八九九号ヲ以竹島及麟陵島ノ視察調査事項ノ件ニ付云々御照会之趣了承致候。左記之扁々ハ可来調査相成候様致度見込ニ有之候。此状回答およひ候也。

明治三十八年八月廿八日

隱岐島司 東文輔

島根県第三部長 事務官 神西由太郎殿

### 竹島ニ対スルモノ

- 一、沿海潮流ノ狀況緩急
- 二、恒風
- 三、海深底質魚礁ノ有無
- 四、磯モノ、種々(魚介藻)
- 五、回遊魚ノ有無去就ノ狀況期節
- 六、漁獵採取方法ノ見込
- 七、草木栽培ノ能否其種類
- 八、常住ヲ為スヘキ見込ノ有無、飲料水ノ有無良否

### 麟陵島ニ対スル事

- 一、沿海潮流ノ緩急
- 二、恒風
- 三、海深底質魚礁ノ有無
- 四、磯モノ、種々(魚介藻)

- 五、回遊魚ノ有無去就ノ狀況期節
- 六、漁獵採取方法ノ見込
- 七、漁港及避難所ノ狀況
- 八、農漁凡何戸位移住生活シ得ラルヘキ乎
- 九、農作物ノ種類、耕作ノ概略、借地ノ手續
- 一〇、煙草作付ノ能否
- 一一、造林ノ能否

### 을농(乙農) 제169호

상(商) 제 899호<sup>14</sup>로써 다케시마 및 울릉도 시찰 조사 사항 건 관련 내용을 조회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조회하신 각각에 대해서는 곧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메이지 38년 8월 28일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

시마네현 제3부장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 님

### 다케시마에 대한 것

- 1. 연해 조류의 상황, 느린지 빠른지
- 2. 바람의 방향
- 3. 바닷속 깊은 곳 상태, 암초(魚礁)의 유무
- 4. 수산 동식물의 종류(어패류, 해초)
- 5. 회유어의 유무, 오가는 상황과 때
- 6. 어업 채집 방법, 가능성

14 직전 문서 상(商) 제889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7. 초목 재배 가능 여부와 그 종류
8. 상주 기능성의 유무, 음료수의 유무와 좋은지 나쁜지

### 울릉도에 대한 것

1. 연해 조류가 느린지 빠른지
2. 바람의 방향
3. 바닷속 깊은 곳 상태, 암초(魚礁)의 유무
4. 수산 동식물의 종류(어패류, 해초)
5. 회유어의 유무, 오기는 상황과 때
6. 어업 채집 방법, 기능성
7. 항구 및 피난소의 상황
8. 농·어업(재) 대개 밭 호 정도가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9. 농작물의 종류, 경작의 개략, 토지 입차 절차
10. 담배 경작 기능성의 유무
11. 식목 기능성의 유무

## V. 나오며

위에서 소개한 사료를 통해 1906년 시마네현 관민 시찰단의 울릉도 시찰은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상 악화로 인한 피난’으로 인한 우연의 결과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명확한 기술은 없으나 울릉도 시찰의 주요 목적은 8~11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인의 울릉도 입식(入植) 가능성 조사가 주요 목적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인의 울릉도 입식을 위한 지방 관청의 정책이 19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 수 증가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 후쿠하라 교수가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울릉도 거주 조선인과 일

본인의 호수 및 인구의 변화를 정리한 표<sup>15</sup>에 따르면 1906년 6월 30일 현재 울릉도에 거주하던 한국인은 737호 5,859명, 일본인은 118호 493명으로,<sup>16</sup> 호수로는 16%, 인구수로는 8.4%를 일본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의 인구 추이를 보면, 1900년대 중반부터 조선인도 일본인도 인구가 증가하여 1910년 시점에 일본인 거주자 수는 1천 명을 돌파하는데 이는 당시의 한반도 전 인구수에서 일본인 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한다.<sup>17</sup>

1881년과 1882년 고종의 명에 따라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보고서<sup>18</sup>에 따르면 1869년 이전에 이미 일본인이 들어왔던 것이 확인된다. 이규원의 5월 6일자 기록에 '사동에서 통구미로 향하는 해변에 「대일본국 마쓰시마 규곡. 메이지 2년(1869)년 2월 13일 이와사키 다다야키」라고 쓴 표목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이후 후쿠하라 교수에 따르면 1910년 시점까지 울릉도에 1천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들 초기 이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져 있지 않다. 「다케시마·울릉도 시찰 8 항목」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이후의 이주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는 사료로서 앞으로도 관련 사실들이 계속 발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5 福原裕二, 2013, 『たけしまにくらした日本人たち』, 風響社, 20쪽.

16 福原裕二, 2013, 위의 책, 20쪽.

17 福原裕二, 2013, 위의 책, 21쪽.

18 『壬午四月 日 鬱陵島檢察日記』, 1882, 국립제주박물관.

[붙임 1] 「秘 다케시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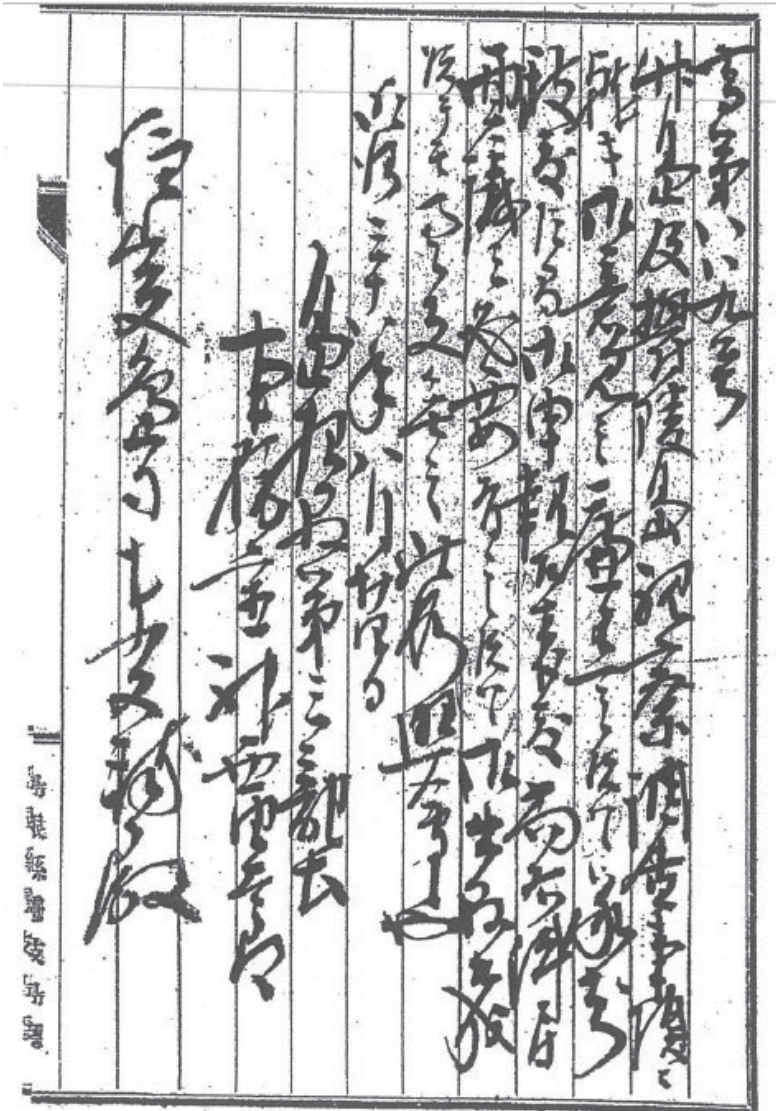
목록 no.	내용 약기
1	사쓰마 번사이며, 니조파 음악가인 다카하시 마사카제가 메이지 38년(1905년) 6월에 궁내 쓰키나미 제(月差祭)에서 읊은 독도 및 강치 관련 시(詩)
2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 및 동일자로서 오키도사에게 독도 편입 사실을 훈령한 문서
3	목록 4 문서 관련 오키도사가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낸 찬성의 의견을 개진한 서한
4	시마네현 지사가 오키도사에게 새로 편입할 섬에 대해 '다케시마'로 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서한(1904,11,15)
5	나카이 요자부부가 내무 · 외무 · 농상부 대신 앞으로 제출한 「랑코도 영토편입 및 대여 청원」(1904,9,29) 및 붙임 문서 「랑코도 영토편입 및 대여 청원 설명서」
6	독도 편입 후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시마네현에 제출한 독도로의 출어 신청에 대해 오키도사가 시마네현 지사에게 허가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서한(1905,3,7)
7	시마네현이 출어 신청자 중 독도 강치 어업 관련 공로가 있는 자들을 선정하여 허가를 내주는 방침을 세우고 출어 신청자 목록을 오키도사에게 보내 공로 유무에 대한 의견을 구한 서한(1905,4,11)
8	목록 7 문서 관련 오키도사가 독도 강치 어업 관련 나카이 등 공로가 있는 4명을 추천, 이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공동으로 청원하게 하고 공동 청원에 한해 허가를 해 주자는 의견을 개진한 서한(1905,5,6)
9	목록 8 문서 관련 시마네현 지사가 오키도사의 의견에 동의한 서한(1905,5,10)
10	위의 경과에 따라 오키도사가 나카이 등 4명을 설득하여 공동 청원을 하게 한 후 시마네현에 허가를 요청한 서한(1905,5,22)
11	위의 경과에 따라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강치 어업 허가를 청원한 「강치 어업 허가 청원」(1905,5,20)
12	이와 함께 지난번 각자 제출한 청원서는 각하하고 이번에 제출하는 청원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다케시마」 강치 어업 청원 상신서(1905,5,20)
13	나카이 요자부로 등 공동 청원자 4명이 공동으로 강치 어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약을 정하고 그 내용을 오키도사에게 보고한 「신고서」(1905,5,20) 및 시마네현 지사가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하고 발급한 「허가증」(1905,6,5)
14	강치 어업 신청은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요도에 도쿠와카 등 8명에게 보낸 불허가 통보(1905,6,5)
15	강치 어업 허가를 받은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이 어업법 취급 규칙 제84조에 의거 나카이 요자부로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시마네현 지사에게 신고한 신고서(1905,6,12)
16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이 회사를 설립하고 정관 및 부속 제규약을 갖추어 재판소 등록(1905,6,6)을 마쳤음을 오키도사에게 신고한 「다케시마」 강치 합자회사 설립 신고서(1905,6,13)
17	시마네현 지사가 오키도사에게 독도 면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서한(1905,5,3)
18	오키도사가 독도 면적을 23정(町) 3반(反) 1무보(畝步)로 정하여 보고한 서한(1905,5,14)
19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 강치 포획 관련 사세보 진수 사령 장관으로부터 받은 항의 내용을 알리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키도사에게 지시한 서한(1905,7,22) 및 지시를 따르겠다는 오키도사의 답변(1905,7,26)과 오키도사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응낙서」(1905,7,25)
20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 외, 어업권 없이 독도 강치를 포획하는 무리에 대해 기록한 문서. 어업권이 없는 밀렵자 8개조 인부 70명, 엽선 17척이 4월~6월 사이에 강치 1,800마리를 포획했다고 기술.
21	1905년 5월 27일과 28일에 동해에서 벌어진 러일 해전 관련 해군성으로부터 받은 전보 내용(5월 30일 수신분) 및 동 해전 관련 오사카 아사히 신문 기사 「영광의 다케시마」(6월 1일자),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순시하고 오키도사에게 보낸 군사우편엽서(1905,8,19)

22	시마네현 3부장이 독도와 울릉도 시찰 관련 오키도사에게 의견을 구한 서한(1905,8,24) 및 오키도사의 답변(1905,8,28)
23	나카이 요자부부가 대표로 집필한 '다케시마' 강치 합자회사의 1905년분 어업 실적 관련 문서 및 「다케시마 강치 어업 성적표 메이지 38년」
24	시마네현이 1906년에 추진한 독도와 울릉도 시찰 관련 문서
25	나카이 요자부부가 독도의 독점적 경영을 위해 오키도사에게 제출한 「다케시마 경영에 관한 진정서」 (1906,4,30)
26	나카이 요자부부의 독도 경영 계획서, 강치 번식 보호, 강치 포획을 위한 특수 시설 설치 등 10가지 계획 기술(1906,4,28)
27	다케시마 강치 합자회사가 1907년에 오키도사에게 보고(7,11)한 1905년 및 1906년의 회사 경영 상황 보고서
28	1908년 강치 어업에 대해 나카이가 오키도사에게 보고한 「다케시마 상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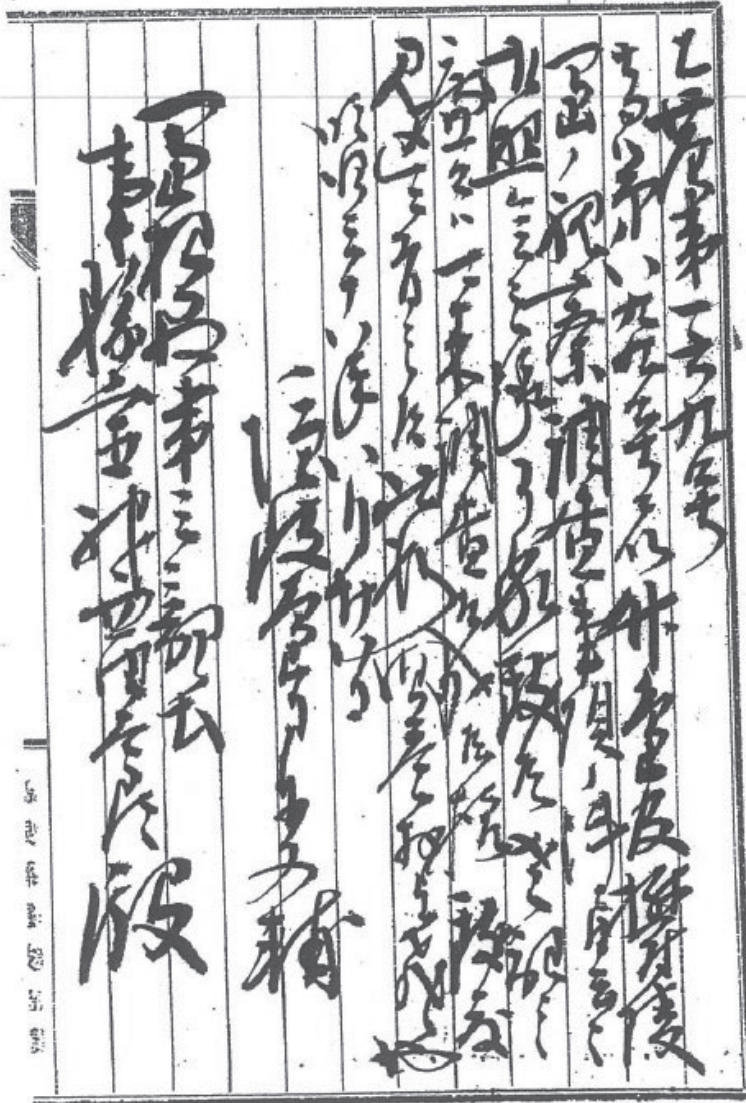
[붙임 2] <표 2> 「1905년 독도 시찰단 구성」

구분	참여자	인원
시마네현청 오키도청	시마네현청 사무관 · 직원 · 기술자/오키도사 및 도청 직원	12명
세무	마쓰에 세무감독국 국장 및 직원	2명
치안	시마네현 경부/우라고 경찰 분서장 경부	2명
의료	위생기술원 촉탁 의사	1명
산하 기관	시마네현 농 · 수산 시험장 기술자	2명
의회	시마네현 현의회 의원	1명
교육	오키 교육 회장/시마네현립 사범학교 교사/시마네현립 중학교 교사/야쓰카군 아이카촌 삼상고등 소학교장	4명
언론	소요(松陽) 신문 기자	1명
민간	수산업자, 야쓰카군 수산조합 이사, 약제사, 학생, 사진사, 재목상, 수산업 수선 안내자, 어부, 잡역	17명
다케시마 어업 합자회사	사원	3명
계		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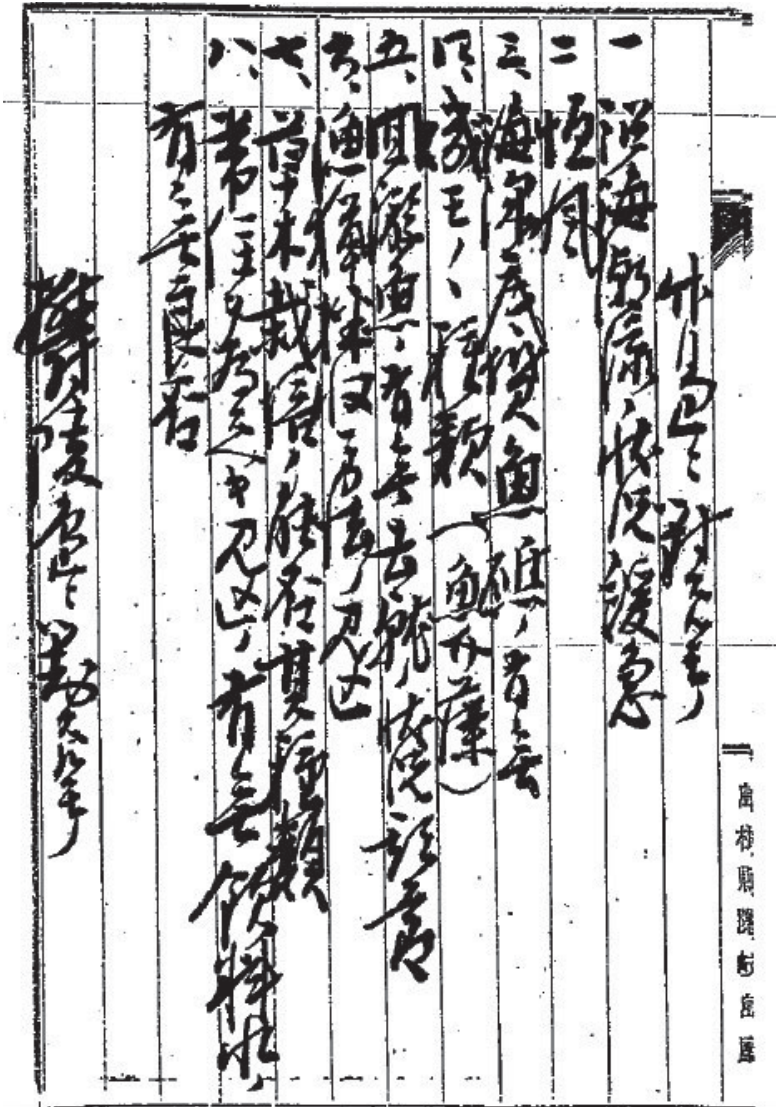
[붙임 3] 원문 이미지



상 889



을능 16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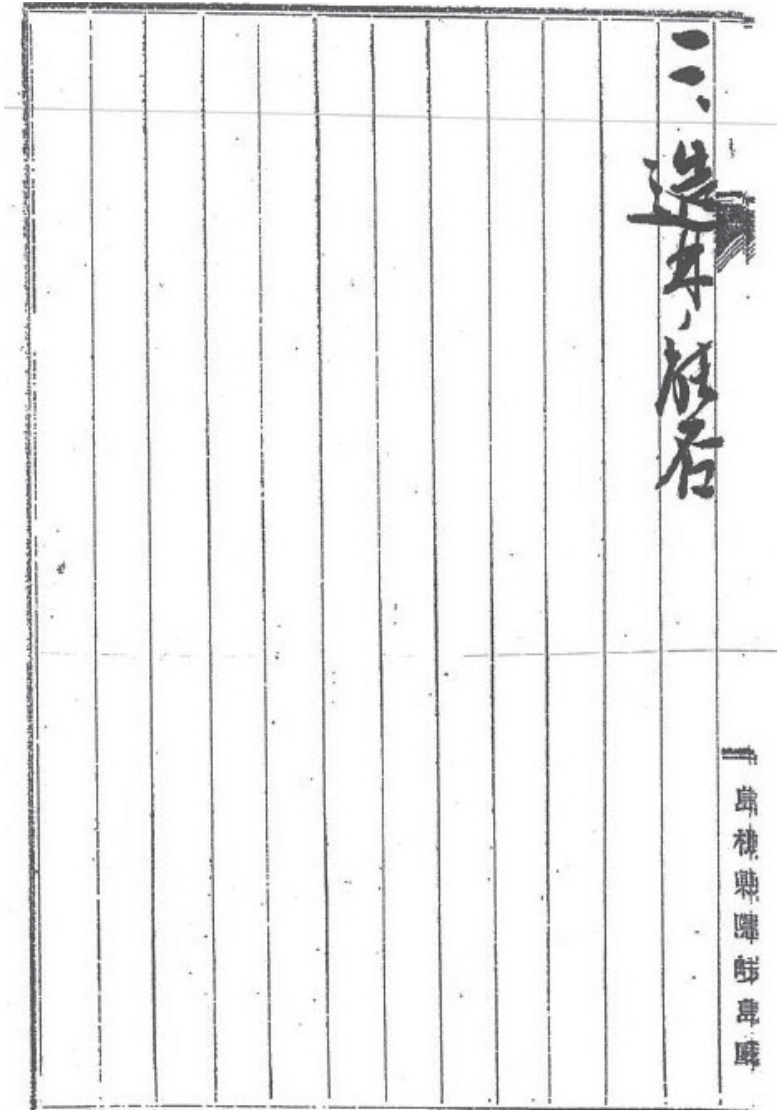


을능 169 (2)

一、沿海數家，其地復舊。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동북아역사재단

을능 169 (3)



을릉 169 (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Archives New Zealand와 ANZUS 조약을 중심으로 본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조규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 I. 서론
- II. Archives New Zealand
- III. ANZUS 조약을 중심으로 본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 IV. 결론: 일본의 군사력 억제와 호주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 I. 서론

2022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국내의 수많은 논문 및 책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논함에 있어 독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 그리고 조약의 제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다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강화조약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뉴질랜드의 조약에 대한 시각과 일본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sup>1</sup> 근본적인 이유는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고유 영토론” 및 “국제법론”이 한국과 해외 논문들의 핵심 주제들이고, 특히 후자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독도 영유의 증거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국제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본질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안보 강화 및 일본의 군사력 억제에 최우선 과제였던 뉴질랜드의 입장 또한 충분히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다. 대영제국에서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독립적인 외교 활

---

1 독도와 관련하여 영문으로 쓰인 논문으로는 Alexander Bukh, 2014, “Japan’s Quest for Dokdo and the South Kurile Islands: A Sub-State/Non-State Actors Analysis,”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1, No. 2 (July, 2014), pp. 115–133; Duckjoon Chang, 1998, “Breaking Through a Stalemate?: A Study Focusing on the Kuril Islands Issue in Russo–Japanese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22, No. 3, pp. 169–206; John Chase, 1995, “Unconditional Surrender Reconsidere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70, No. 2 (June, 1955), pp. 258–279; Sung-jae Choi, 2005, “The Politics of the Dokdo Issu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5, No. 3 (September–December, 2005), pp. 465–494; Kimie Hara, 2001, “50 Years from San Francisco: Re-examining the Peace Treaty and Japan’s Territorial Problems,” *Pacific Affairs*, Vol. 74, No. 3 (Autumn, 2001), pp. 361–382; Kyu-hyun Jo, 2021, “Korean Newspapers,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and Ulleungdo and Early Japanese Intru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3, No. 1 (Spring/Summer, 2021), pp. 22–44; Kyu-hyun Jo, 2021, “The Shadow of Cold War Politic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s Implications for Japan’s Territorial Disputes with Korea and Chin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8, No. 2 (Summer/Fall, 2021), pp. 98–113 등이 있다.

동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서라도 일본의 군사력 억제를 이뤄야 한다는 정치적 현실이 어떻게 서로 접목하였는가를 알아보는 후기 식민주의와 냉전의 만남이 이룬 미묘한 과제로 뉴질랜드가 1950년대 초에 맞이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사실 한국 내에서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기에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고,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시점이 1907년이며, 그 전에는 뉴질랜드의 외교 노선이 기본적으로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가 미국의 핵심동맹국이고 뉴질랜드보다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의 그늘에 가려진 인상이 짙었다. 근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Archives New Zealand(뉴질랜드 국립 문헌 보관소)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아직 체계적으로 이 문서들을 연구한 책이나 논문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1990년대가 되어서야 뉴질랜드의 일본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뉴질랜드의 입장을 상세히 다룬 책은 영어로 출판된 2권 그리고 논문은 14편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미국 간의 강화조약이라는 큰 틀 속에서 뉴질랜드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Archives New Zealand에 가야 하지만 원고를 작성중인 현시점에서 뉴질랜드의 국경은 코로나 19 통제 때문에 닫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Archives New Zealand와 조금이나마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의 흐름을 논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간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rchives New Zealand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1990년에 앤 트로터(Ann Trotter)와 2018년에 앤드루 켈리(Andrew Kelly)가 쓴 책들을 비롯하여 영어권에서 쓰인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가 일본의 군사력 억제에 온 힘을 기울였고, 호주의 친영국 성향의 외교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들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Archives New Zealand

Archives New Zealand는 웰링턴에 소재한 뉴질랜드의 국립 문헌 보관소로,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이나 미국의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미 국립 문서 관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뉴질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다룬 모든 외교 사안들에 대한 정부 문서들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서들은 개별적인 상자들로 정리되어 있고 일부분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Archives New Zealand에서 살펴봐야 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문서철은 세 가지가 있다. Japanese Peace Conference, San Francisco, California—Documents Issued—Comparative Study of the March 1951 and August 13, 1951 Tex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는 마이크로필름 한 상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1951년 3월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사본과 1951년 8월의 사본을 비교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세부 단어 및 문장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조약의 의도는 어떻게 조금씩 변해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Japanese Peace Conference, San Francisco, California—Documents Issued—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강화조약과 관련된 여러 뉴질랜드 정부 문서와 외교 관련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마이크로 필름 한 상자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들의 시간적인 범주는 1951년 전체를 다룬다.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필름이 강화조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면, 이 자료집은 강화조약에 대해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넓은 시간적 축 속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자료집들은 Conferences and Commissions (회의와 위원회 관련 자료)라는 더 큰 자료 시리즈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연방 소속으로 1947년까지 있었던 뉴질랜드의 정치적 현실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Office of Dominion and Colonial Affairs(영연방 및 식민지 관리국)의 문서들과 병행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외교 정책이 주로 영국을 지지하는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서들이 영국 외교부와 주고받은 서신들로 이뤄져 있고, 간혹 호주 또는 미국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으나, 영국 정부를 많이 의식한 외교 정책 때문에 이웃인 호주보다 영국과 교환한 정보가 훨씬 많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영국의 큐 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을 방문해서 애틀리(Attlee) 내각의 문서들과 같이 비교하며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미국 외교 관계 자료집)의 1951~1952년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 “Pacific”(태평양 지역)이라는 부제목 아래에 뉴질랜드와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뉴질랜드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Archives New Zealand를 방문해서 각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문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가 사실상 뉴질랜드가 단독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한 유일한 사례이자 외교적 자주권을 온전히 행사한 유일한 회의여서 대부분의 문서들은 자연스럽게 뉴질랜드의 일본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짙다. 5,000건의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1951~1952년의 문서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일 안에 들어 있는 문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과제가 뉴질랜드의 일본 강화조약 정책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의 외교는 1947년 전까지 영국과 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Archives New Zealand에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뉴질랜드의 외교 전략과 목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호주의 국립 문헌 보관소 그리고 영국의 국립 문헌 보관소를 방문해서 두 나라의 외교 노선과

비교해 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뉴질랜드는 호주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큰 이웃나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호주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이용해 캔버라가 웰링턴을 ‘조종’하고자 했다는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호주의 친미노선을 대체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ANZUS(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설립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뉴질랜드가 호주의 ‘발 밑’에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게 심어 주는 것이 뉴질랜드 입장에서선 굴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뉴질랜드는 일본의 군사적 도발과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호주의 친미노선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외교 노선 및 1950년대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 문서들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다.

### III. ANZUS 조약을 중심으로 본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뉴질랜드의 입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인 ANZUS 조약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 1989년이 되어서야 ANZUS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E. D. 킬런(E. D. Killen)이 강화조약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응들을 친한 논문이 있지만, 이 논문은 강화조약에 사용된 표현들에서 미국이 호주와 뉴질랜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캔버라와 웰링턴으로부터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윌리엄 토(William Tow)의 논문이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을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었다.<sup>2</sup>

그 이유는 1984년에 뉴질랜드가 ANZUS의 핵무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미국이 너무 자국 중심으로 운영하고 뉴질랜드를 소외하려는 인상을 받아 ANZUS 동맹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핵무기의 사용에 있어 동맹국 정치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 윌리엄 토가 밝혔듯이, 뉴질랜드는 1980년대부터 비핵화를 기본적인 국방정책으로 삼고 있었는데, 미국은 소련에 대한 견제 강화와 중동 지역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보다 더 활발한 군사 파견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가 핵무기의 사용도 용인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미국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호주는 1986년에 부분적인 핵무기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미국에게 통보했지만, 뉴질랜드는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맞서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효율적인 안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윌리엄 토가 논문을 쓴 지 2년 후에 소련이 붕괴되어서 미국이 뉴질랜드에 대해 압박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뉴질랜드는 ANZUS에 재가입하지 않은 채 미국과 협조만 이어 가겠다고 밝힌 점에서 뉴질랜드가 미국 앞에서도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하지만 토는 뉴질랜드가 ANZUS를 탈퇴한 지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탈퇴 자체의 원인만 분석하는 데 힘썼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기본적으로 뉴질랜드가 ANZUS 동맹의 과거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과 그 과정에 집중했을 뿐 전체적으로 어떻게 ANZUS가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입장과 상통하였는지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인 1940년대 초의 미국-뉴질랜드 관계, 1951

2 E. D. Killen, 1952, "The ANZUS Pact and Pacific Security," *Far Eastern Survey*, Vol. 21, No. 14 (October, 1952), pp. 137-141; William Tow, 1989, "The ANZUS Dispute: Testing U. S. Extended Deterrence in Alliance Politic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4, No. 1 (Spring, 1989), pp. 117-149.

3 Tow, 1989, *ibid.*, pp. 117-149.

년 무렵의 뉴질랜드-미국-영국 간의 관계들이 다뤄져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2005년에 조지프 시라쿠사(Joseph Siracusa)가 호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 대표였던 J. 에버트(J. Evatt)를 지목하며 호주가 태평양에서 더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 에버트와 존 덜레스(John Dulles) 사이의 신경전 때문에 ANZUS의 효력이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이 논문은 뉴질랜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짚는 데 한계가 있었다.<sup>4</sup> 킬런과 시라쿠사의 논문들이 갖는 한계들을 생각하면, 토가 뉴질랜드-미국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있어 ANZUS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이 돋보인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 토의 논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동맹이 탄생하게 된 원인 및 정치적 배경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ANZUS의 역사적인 의미를 전부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앤 트로터와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의 연구를 살펴보면 ANZUS의 역사적인 의미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부터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뉴질랜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07년에 공식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1931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조약을 통해 자주적인 외교권을 완전히 얻어 내야 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1947년이 되어서야 뉴질랜드 의회가 승인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험 무대였기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과 외교권이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둘째, 옆 나라 호주와 마찬가지로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뉴질랜드는 일본의 군사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으며, 특히 1950년에 들어서서 한국전쟁을 필두로 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산업 기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튼튼했던 일

4 Joseph M, Siracusa, 2005, "The ANZUS Treaty Revisited," *Security Challenges*, Vol. 1, No. 1, pp. 89-104.

본을 기점으로 반공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sup>5</sup>

실제로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가 일본의 외교 노선을 친미 성향으로 설정한 상태였고, 미국 또한 반공진영의 지도자로 일본이 가장 안심맞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뒤로 한 채 일본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sup>6</sup> 실제로 미국이 전혀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이나 공문을 강화조약 이전에 보낸 적이 없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강한 불만을 존 델레스에게 종종 표현하였고, 델레스는 일본을 지나치게 편애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긴 하였지만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델레스의 약속이 감언이설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sup>7</sup> 즉, 존 프라이스(John Price)가 지적한 대로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이 처음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철저히 “냉전의 유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컸다.<sup>8</sup>

헨리 리스틴(Henry Wriston)이 언급했듯이,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이 필요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 목적의 중요성이 냉전 시대의 세계 질서를 아시아에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미국이 뉴질랜드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

5 Ann Trotter, 2001, "San Francisco Peace-ma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New Zealand" in *San Francisco: 50 Years On*, London, Engl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John Williams, 1987, "ANZUS: A Blow to Britain's Self-Estee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No. 4 (October, 1987), pp. 243-263.

6 요시다 시게루에 관해서는 John Dower, 1988, *Empire and Aftermath: Yoshida Shigeru and the Japanese Experience, 1878-195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7 John M. Allison, 1952, "The Japanese Peace Treaty and Related Security Pact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1921-1969)*, Vol. 46 (April 24-26, 1952), pp. 35-43; John F. Dulles, 1952,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 2 (January, 1952), pp. 175-187.

8 John Price, 2001, "Cold War Relic: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Politics of Memory," *Asian Perspective*, Vol. 25, No. 3, pp. 31-60.

다는 인상을 받았다.<sup>9</sup> 또한, 트로터와 윌리엄스가 주장했듯이, 뉴질랜드 입장에서 미국의 안전 보장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지어서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자신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이웃인 호주에게 외교권이 휘둘러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을 이용해서 뉴질랜드의 독립적인 안전 보장을 확보하고 싶어 했다.<sup>10</sup>

하지만 토머스 롱(Thomas Robb)과 데이비드 길(David Gill)이 자세히 보여 주듯이, 뉴질랜드의 이러한 희망을 현실화하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영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의해 소멸되는 현상에 대해 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비록 “독립국”으로 인정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영국이라고 여전히 취급하고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를 이용해서 이 위기감을 불식시키려고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유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영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많은 부채에 시달리던 영국에게 매우 유리하였다. 이미 제국의 보석이라 칭할 수 있던 인도가 독립한 이후라 만약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시에 영국을 버릴 경우 이것은 대영제국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국 정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제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나 뉴질랜드가 영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1948년에 겪은 말레이시아 공산당과의 치열한 전투를 홍콩에서 중국과 또 벌일 경우 혼자 힘으로는 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가 외교적으로 늘 영국을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록 호주와 뉴질랜드가 미국의 안전 보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라는 존재 때문에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어렵게 얻어 낸 외교권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본의

9 Henry Wriston, 1951, "The Validity of Limited Objective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4, No. 9, pp. 1-32.

10 Trotter, 2001, *op. cit.*; Williams, 1987, *op. cit.*, pp. 243-263.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 호주가 독단적으로 먼저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뉴질랜드는 자신 있게 반대 의사를 호주에게 던질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뉴질랜드가 호주와 최소한 동등한 입장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White Australia’ 정책과 ‘White New Zealand’ 정책<sup>11</sup>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던 1950년대의 정서를 고려해 보면, 뉴질랜드는 두 가지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White New Zealand’라는 정책을 뉴질랜드 정부가 스스로 선택해서 시행했지만, 국내에서의 독립적인 행정력을 대외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영국이 ANZUS 조약에 참여하게 될 경우 캔버라와 런던에게 휘둘러질 가능성이 높아 1947년에 보장받은 독립적인 외교권이 무실해질 우려가 있었다. 영국과 전통적으로 연대가 강한 뉴질랜드였지만 이미 대영제국이 와해되고 있다는 징조들을 1947년에 인도와 1948년에 미얀마의 독립으로 뉴질랜드는 목격할 바 있었다. 또한, 아무리 영국과 유대가 깊을지라도 자국의 안보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영국 한 국가 때문에 뉴질랜드가 포기한다면 일본을 견제하려는 실리적인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sup>12</sup>

이 때문에 영국을 ANZUS에 배제시켜서라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들이 뉴질랜드 외교부로부터 많이 쏟아져 나왔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반응을 전해들은 영국 정부는 당연히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존 윌리엄스가 주장했듯이, 결과적으로 ANZUS 조약은 영국의 자존심을 크게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딘 맥헨리(Dean McHenry)와 리처드 로젠크랜스(Richard Rosenkrance)가 지적한 대로 영연방 내의 지역주의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태평양

11 White Australia Policy와 White New Zealand Policy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1901년 그리고 1899년에 제정한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두 나라는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을 1970년대까지 유지하였다.

12 Thomas K. Robb and David James Gill, 2015, “The ANZUS Treaty during the Cold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7, No. 4 (Fall, 2015), pp. 109–157.

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뉴질랜드는 결국 대영제국의 추락하는 위상을 대가로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실리를 챙긴 셈이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세월 앞에 제국으로 뺏어진 유대감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조약이었다.<sup>13</sup>

두 번째 콤플렉스는 뉴질랜드가 과연 ‘태평양 국가’라는 ‘변두리’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선진적인’ ‘서방 국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였고, 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 과연 필리핀 같은 나라들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및 조력자 역할을 거의 반세기 동안 해온 공로로 1946년에 독립하였고, 미국은 나아가 반공체제에서의 유대감이 깊은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뉴질랜드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동맹국으로 인정할 경우 뉴질랜드가 더 이상 ‘서방 국가’가 아닌 ‘동남아 국가’로 위상이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고려한 뉴질랜드는 결국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저물어 가는 영국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최고 상태인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보다 일본을 더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국을 선택하는 독립적인 역량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ANZUS는 의미가 컸다. 또한 호주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을 법제화한 점은 아쉽지만, 자국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서 앞서 언급한 두 콤플렉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 ANZUS이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독립국가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 준 계기로서 ANZUS는 뉴질랜드에게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호주와 영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과는 별도로, 뉴질랜드 내

13 Williams, 1987, *op. cit.*, pp. 243–263. Dean E. McHenry and Richard Rosencrance, 1958, “The ‘Exclusion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ANZUS P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2, No. 3 (Summer, 1958), pp. 320–329.

14 Robb and Gill, 2015, *op. cit.*, pp. 109–157.

에서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1951년의 호주의 인식과는 온도가 많이 달랐다. 앤 트로터가 주장했듯이, 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유럽 전선에 투입되어 있었고, 일본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싸운 것은 파푸아뉴기니를 중심으로 저항했던 호주 군대였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일본이 같은 태평양 국가이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인식들은 뉴질랜드 역시 호주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으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뉴질랜드에게 호주에 비해 그렇게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아니었으며, 일본의 보통 국가로의 회귀를 위한 수단들로서 무장해제, 경제적 제재들의 강화, 그리고 일본의 민주화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또한, 주 미국 뉴질랜드 대사였던 칼 베런덴센(Carl Berendensen)에 대한 논문에서 트로터가 밝혔듯이, 뉴질랜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의 와해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 뉴질랜드가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세계에 뉴질랜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뉴질랜드에게 있어 일본의 무장해제는 과정과 결과 모두 국가의 위상과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sup>15</sup>

일본의 무장해제가 얼마나 뉴질랜드에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뉴질랜드가 얼마나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강력하게 원했는지는 앤 트로터와 앤드루 켈리의 책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트로터는 *New Zealand and Japan, 1945-1952*에서 뉴질랜드가 “태평양 국가”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바로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직후였으며, 미국의 지원을 바란 주된 이유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미국의 주도로 세워진 극동연합군사령부, 전쟁범죄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연합군 사령부가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

15 Ann Trotter, 1990, *New Zealand and Japan, 1945-1952: The Occupation and the Peace Treaty*, London, England: Bloomsbury Academic.

구였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행사한 영향력은 작았지만 일본을 제어하고자 실천한 노력들을 트로터는 자세하게 보여 주며 뉴질랜드가 연합군사령부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에 참여한 공로가 나중에 ANZUS 조약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연합국의 일본 감시 및 관리를 활발하게 지원했으며, 이러한 지원은 미국의 뉴질랜드 안전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의 미미한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하지만 처음부터 뉴질랜드가 ANZUS 조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고 영국과의 관계 및 대외 정세를 고려한 실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켈리는 *ANZUS and the Early Cold War* (2018)에서 뉴질랜드가 냉전 초기에는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꺼렸다고 주장하며, 핵심적인 이유는 오랫동안 영연방 안에서 혜택들을 누리 왔고, 미국과 동맹을 맺는 순간, 이 혜택들을 단번에 잃어버려 영국과의 신뢰가 영원히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영국 또한 뉴질랜드와 미국의 연대가 영국의 위상 추락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ANZUS의 결성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한국전쟁, 수에즈 운하 사태, 그리고 베트남전쟁 등의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뉴질랜드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영국과 상담 및 유대를 이어 갔기 때문에 ANZUS 조약이 완전한 뉴질랜드-영국의 외교관계의 파탄을 의미하진 않았다고 켈리는 주장한다.<sup>17</sup>

이 두 책들이 공통적으로 알려 주는 중요한 사실은 호주의 외교장관을 지냈던 퍼시 스펀더(Percy Spender)가 *Exercises in Diplomacy*에서 주장했듯이 호주가 독자적으로 ANZUS 조약을 체결시켰다는 주장은 뉴질랜드가 연합국 측에 제공한 도움을 무시하며 호주를 돈보이게 만들고 싶은 허영심

16 Trotter, *New Zealand and Japan., 1945-1952*

17 Andrew Kelly, 2018, *ANZUS and the Early Cold War*, Open Book Publishers.

이 투영된 판단이라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윌리엄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맞고, 영국은 여전히 ANZUS 조약 조인 이후에도 뉴질랜드에게 중요한 국가임을 알려 준다.<sup>18</sup>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ANZUS 조약 체결 전에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면, 호주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뉴질랜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중요성이 뉴질랜드의 가장 오래된 외교관계를 무시할 정도였다는 주장은 강화조약의 의도와 영향력을 과장해서 생긴 오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매뉴얼 쉬(Immanuel Hsu)가 주장했듯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본의 군사력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이었고, 이 방침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수많은 전쟁범죄들을 미래에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에게 국제적 효력이 있는 족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본은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과거 식민지로 삼았던 울릉도, 조어도, 대만 등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2조에 의거하여 제국으로서의 과거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연합국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도 있었다.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특히 제2조가 가장 만족스러웠다. 무장해제의 기본적인 조건인 대외 팽창을 못하게 함으로서 전쟁을 일으킬만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없애서 앞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제국주의를 꿈꿀 수 있는 근간을 일본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9</sup> 1951년에 진행되고 있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그리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부상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강하게 의식한 “냉전 시대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바로 존 델레스와 존 앨리슨

18 Percy Spender, 1969, *Exercises in Diplomacy: The ANZUS Treaty and the Columbo Plan*,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Press.

19 Immanuel Hsu, 1951, “Japan: A Progress Report,” *Current History*, Vol. 21, No. 121 (September, 1951), pp. 137-142.

(John Allison)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약”이라고 평가한 기반이었다. 뉴질랜드는 미국과의 동맹을 맺는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전쟁 수행능력의 완전한 무력화를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2조를 인정했다는 것은 뉴질랜드와 동맹을 맺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었다.<sup>20</sup>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뉴질랜드 외교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뉴질랜드 외교사상 제일 위대한 선물”이라고 부른 것도 과장은 아니었다. 앤 트로터가 밝혔듯이, 뉴질랜드가 주 미국 대사인 칼 베런덴센을 내세워서 세계에 뉴질랜드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했고, 베런덴센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마지막 세계대전으로 만드는 데 뉴질랜드가 능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외교적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어서 온전한 독립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베런덴센의 생각을 고려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뉴질랜드에게 있어 단순히 한 조약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안위를 모두 지켜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준 중요한 포석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형식적으로 호주와 연합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이끌어 냈지만, ANZUS 조약이 체결될 수 있는 근간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뉴질랜드가 독립적으로 얻어 냈으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뉴질랜드가 오랜 염원이었던 영국과 호주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루게 해 준 기념비적인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20 John M. Allison, 1952, “The Japanese Peace Treaty and Related Security Pact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1921–1969)*, Vol. 46 (April 24–26, 1952), pp. 35–43; John F. Dulles, 1952,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 2 (January, 1952), pp. 175–187.

21 Ann Trotter, 1990, “New Zealand in World Affairs: Sir Carl Berendsen in Washington, 1944–1952,”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12, No. 3 (August, 1990), pp. 466–490.

## VI. 결론: 일본의 군사력 억제와 호주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뉴질랜드는 1907년에 독립한 ‘젊은 국가’, 그리고 호주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아류 국가’의 모습들을 털어버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1931년 웨스트민스터 조약으로 자치권을 온전히 얻고 1947년이 되어서야 자주적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는 사실상 뉴질랜드의 국제 외교 데뷔 무대였다. 뉴질랜드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세계에 뉴질랜드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일본이 다시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적, 제국주의적 활동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두 문제는 뉴질랜드의 자존심과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과제였다. 오랫동안 영국과 호주의 그늘에 가려 제 목소리를 못 낸 세월들을 보상받고 일본에 대응할 힘을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통해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대영제국의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던 1950년대 초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빨리 동맹을 맺는 실리적인 선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뉴질랜드는 같은 목표를 지닌 호주와 연대해서 ANZUS 동맹을 맺었다. 비록 단독으로 성사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앤 트로터가 밝혔듯이, 칼 베런덴센이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1944년 워싱턴에게 알린 이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 뉴질랜드만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이루어 낸 첫 외교적 성과로서의 의미는 컸다. 냉전의 그림자가 빠르게 드리워오던 1950년대에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진영의 선두로 세우고자 했지만 뉴질랜드는 끝까지 일본을 불신하였기에 미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삼자 간의 독자적인 동맹을 맺어서라도 뉴질랜드는 일본을 배제하고 싶은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sup>22</sup> 물론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국내의 인종차별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동

22 Trotter, 1990, "New Zealand in World Affairs: Sir Carl Berendsen in Washington, 1944-1952," pp. 466-490.

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을 뉴질랜드가 서양 국가로 인식되는 데 방해되  
는 이유로 범태평양 조약의 형성을 반대한 것은 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일관되게 자국 안보에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인 일본을 미국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전달하였기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미국  
과의 ANZUS 동맹이 “외교사 이래 가장 큰 선물”이라 칭할 만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 아무리 명백해 보  
일지라도, 뉴질랜드가 오랜 세월 동안 영국과 호주의 그늘 아래에서 지지자  
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Archives New  
Zealand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자료집들을 비롯하여 호주 국립  
문헌 보관소, 영국 국립 문헌 보관소에서 호주 그리고 영국과 관련된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 문서들, 호주와 영국 외교부 문서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런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 뉴질랜드가 어떻게 독자적인 외교  
노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난관들을 이해하는 것도 이  
글에서 다룬 뉴질랜드의 외교적 성과들만큼 중요하다. 국가로서의 독립 그  
리고 외교권의 독립이라는 두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40년이나 걸린 뉴질랜  
드이기에 호주와 영국 외교 문서들을 뉴질랜드의 문서들과 병행해서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참고문헌

- Allison, John M., 1952, "The Japanese Peace Treaty and Related Security Pact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1921-1969)*, Vol. 46 (April 24-26, 1952).
- Bukh, Alexander, 2014, "Japan's Quest for Dokdo and the South Kurile Islands: A Sub-State/Non-State Actors Analysis,"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1, No. 2 (July, 2014).
- Chang, Duckjoon, 1998, "Breaking Through a Stalemate?: A Study Focusing on the Kuril Islands Issue in Russo-Japanese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22, No. 3.
- Chase, John, 1955, "Unconditional Surrender Reconsidere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70, No. 2 (June, 1955).
- Choi, Sung-jae, 2005, "The Politics of the Dokdo Issu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5, No. 3 (September-December, 2005).
- Dower, John, 1988, *Empire and Aftermath: Yoshida Shigeru and the Japanese Experience, 1878-195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Dulles, John M., 1952,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 2 (January, 1952).
- Hara, Kimie, 2001, "50 Years from San Francisco: Re-examining the Peace Treaty and Japan's Territorial Problems," *Pacific Affairs*, Vol. 74, No. 3 (Autumn, 2001).
- Hsu, Immanuel, 1951, "Japan: A Progress Report," *Current History*, Vol. 21, No. 121 (September, 1951).
- Jo, Kyu-hyun, 2021, "Korean Newspapers,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and Ulleungdo and Early Japanese Intru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3, No. 1 (Spring/Summer, 2021).
- \_\_\_\_\_, 2021, "The Shadow of Cold War Politic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s Implications for Japan's Territorial Disputes with Korea and Chin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8, No. 2 (Summer/Fall, 2021).
- Kelly, Andrew, 2018, *ANZUS and the Early Cold War*, Open Book Publishers.
- Killen, E. D., 1952, "The ANZUS Pact and Pacific Security," *Far Eastern Survey*, Vol. 21, No. 14 (October, 1952).

- McHenry, Dean E. and Richard Rosencrance, 1958, "The 'Exclusion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ANZUS P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2, No. 3 (Summer, 1958).
- Price, John, 2001, "Cold War Relic: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Politics of Memory," *Asian Perspective*, Vol. 25, No. 3.
- Robb, Thomas K. and David James Gill, 2015, "The ANZUS Treaty during the Cold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7, No. 4.
- Siracusa, Joseph M., 2005, "The ANZUS Treaty Revisited," *Security Challenges*, Vol. 1, No. 1.
- Spender, Percy, 1969, *Exercises in Diplomacy: The ANZUS Treaty and the Columbo Plan*,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Press.
- Tow, William, 1989, "The ANZUS Dispute: Testing U. S. Extended Deterrence in Alliance Politic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4, No. 1 (Spring, 1989).
- Trotter, Ann, 1990, "New Zealand in World Affairs: Sir Carl Berendsen in Washington, 1944-1952,"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12, No. 3 (August, 1990).
- \_\_\_\_\_, 1990, *New Zealand and Japan, 1945-1952: The Occupation and the Peace Treaty*, London, England: Bloomsbury Academic.
- \_\_\_\_\_, 2001, "San Francisco Peace-ma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New Zealand" in *San Francisco: 50 Years On*, London, Engl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 Williams, John, 1987, "ANZUS: A Blow to Britain's Self-Estee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No. 4 (October, 1987).
- Wriston, Henry, 1951, "The Validity of Limited Objective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4, No. 9.





# 서평



- 이 훈 | 『동해바다 독도 툇아읽기』; 심정보 저, 2021, 민속원
- 석주희 | 『제국의 섬-류큐·센카쿠에 대한 식민주의와의 투쟁』; 松島泰勝, 2020, 『帝国の島-琉球·尖閣に対する植民地主義と闘う』, 明石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해바다 독도 톺아읽기』

(심정보 저, 2021, 민속원)

이훈 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I. 일본에 대한 이슈로서의 동해바다와 독도
- II. 역사 속에서 동해바다와 독도를 종합적으로 이해
- III. 절실해지는 독도 교육과 종합교과서의 필요

## I. 일본에 대한 이슈로서의 동해바다와 독도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순식간에 먼 나라로 돌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 있다. 바로 동해바다를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라는 표기문제와 독도 영유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뉴스나 언론에서 해마다 언급되는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의 역사적 경위와 성격,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을 넘어 국제사회 설득도 필요한 까다로운 이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독도 이슈는 한일 양국의 영유권 논쟁의 기원이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말 신한일어업협정 이후로는 한일 간에 독도 이슈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2005) 제정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2014년에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서 영토 관련 내용만을 개정하여 국제법상의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다케시마’ 등 영토 관련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2년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지리·역사·공민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는 것으로 서술되게 되었다.

현재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교과서 기술 등, 지속적으로 독도 도발을 일으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이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법에 근거한 판결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한국의 독도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1950년대 초반 독도 이슈로 한일관계가 요동

친 이래 역사학을 비롯하여, 지리학, 국제법, 국제관계,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반세기 이상 축적된 성과는, 어느새 ‘독도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인 학문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각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가 상호 간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역사학이나 지리학에서 추구해 온 연구방법과 성과들이 국제법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역사적 경위보다는 국제법적 관점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 분야 간의 상호교류나 검증이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역사학에서는 한국이 언제부터 독도를 조선의 영유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독도 인지가 고전적(古典籍)과 고지도(古地圖)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도 인지가 국제법상의 영유권 논쟁에서는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고민 끝에 최근에는 근대 이전 안용복 사건을 둘러싼 조일 간의 영유권 주장 논리와 외교 교섭 관행을 근대 이후의 영유권 논리와 조약에 바탕을 둔 국제법 논리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독도는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따른 한국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영토로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귀속에 대한 문구가 누락됨에 따라 한일 간에 독도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따라서 독도 이슈는 한일 양국을 넘어 현대의 국제정치 속에서도 따져 봐야 할 과제가 되었다.

동해 표기 문제 역시 일본 제국주의 확장과 관련이 있지만 해결 방법이나 대응은 독도 이슈와는 또 다르다. 20세기 초반 러일전쟁을 계기로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이 동해바다를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이후 국제적으로도 일본해 지명이 확산·정착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의 해양과 바다를 구분하고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간할 당시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명명하였다.

물론 광복 이후 동해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국제무대에서 동해 이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90년대 이후에서야 본격화되었다. 국제수로기구의 1992년 총회에서, 한국은 이때 처음으로 ‘동해/일본해’ 병기문제를 공식 제기하였다. 당사국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병기를 권고하는 국제수로기구의 방침을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은 오직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 이슈와는 달리, 동해 표기에 있어서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여 오히려 지명 분쟁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입장이다.

이렇듯 독도 이슈와 동해 표기는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이슈의 성격이나 해결 방법, 해결 가능성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두 가지 이슈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일반인은 물론,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조차도 독도와 동해바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II. 역사 속에서 동해바다와 독도를 종합적으로 이해

최근 『동해바다 독도 퉁아읽기』(심정보 저, 2021, 민속원)라는 제목의 책이 간행되었다. 동해바다와 독도 이슈를 한 책에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음에도, 이 책에서는 두 이슈의 복잡함을 마치 이야기하듯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다음은 각 장의 내용이다.

서장 동해와 독도이야기

01 동해 지명의 역사

02 독도의 지리적 환경

- 03 전근대 한국의 독도 인지
  - 04 전근대 일본의 독도 인지
  - 05 전근대 서양의 독도 인지
  - 06 근대 일본의 독도 인식과 침탈
  - 07 근대 한국의 독도 인식과 대응
  - 08 현대 초기의 독도 이슈와 대응
  - 09 21세기 전후의 독도 이슈와 대응
  - 10 독도영유권의 쟁점
- 종장 동해와 독도 이슈의 전망

저자가 서문에서 이 책의 중심은 독도의 역사에 있다고 했듯이, 전체 구성에서 독도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해바다도 결국은 독도 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의 역사(제3~9장)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제3장(전근대 한국의 독도 인지)에서는, 전근대 시기 한국의 독도에 대한 행정 및 정책, 고문헌·고지도의 표기를 바탕으로 독도의 인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이 시기 독도 이슈에 대한 핵심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신라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는 시기, 울릉도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이다. 신라시대에는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하여 신라에 병합한 이래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여러 섬에도 행정적 통치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관리들이 울릉도(우산도)에 파견되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역사서(『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의 존재를 명기하여 고려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쇄환정책을 펼쳤으며, 1425년 중앙에서 파견된 안무사(김인우)의 임무가 ‘우산무릉등처안무사’였던 것으로 보아, 독도를 조선의 영역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조선의 영역을 다룬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울릉도·독도 기술 가운데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지리적 정황, 지리지 제작 절차상의 오류 등을 바탕으로 울릉도·독도의 위치를 바로 잡았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 무릉 두 섬이 …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대목에 대해, 지리적 정황을 바탕으로 우산·무릉이 울릉도에서 흐린 날에도 볼 수 있는 죽도·관음도가 아니라, 울릉도·독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는, 독도지킴이 안용복의 활동과 그의 독도 인지가 조선 정부의 수토제 실시 및 조선 후기 관찬·사찬 고문헌·고지도의 울릉도·독도 기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이다. 안용복의 2차례(1693·1696)에 걸친 일본 도해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독도 두 섬을 수호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그 결과 울릉도에 수토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일본인의 도해 여부 등 섬 사정을 조사하는 수토제가 1699~1894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 후기에 간행된 관찬·사찬의 고문헌·고지도에 울릉도·독도의 두 섬의 위치·크기·명칭 등이 이전에 비해 더욱 현실에 가깝게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였다. 『숙종실록』은 물론, 『강계고』(1756),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 독도(우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로 기재된 것이 그것이다.

제4장(전근대 일본의 독도 인지)에서는, 전근대 시기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경위,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2차례나 금지한 막부 법령의 의미, 지리지 및 관찬·사찬 지도의 울릉도·독도 표기를 바탕으로 전근대 일본의 독도 인지를 살피고 있다.

먼저, 전근대 시기 조선의 쇄환정책으로 무인도나 다름없게 된 울릉도에 일본인이 도해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된 배경으로, 16세기 말경 일본 혼슈 서부의 산인지방 사람들의 울릉도 인삼 채취 및 유통을 들고 있다. 그리고 17세기 전반에는 돗토리번 요나고 주민(오야·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를 왕래 하면서 채취해 온 전복·목재 등, 울릉도 토산물의 유통과 더불어 울릉도 도

해리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및 중앙권력과 유착되어 있었던 것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오야·무라카와 집안의 70년에 걸친 울릉도 도해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 바로 일본 막부의 제1차 울릉도도해금지령(1696)으로, 돗토리번과의 질의 응답이 바탕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안용복의 제1차 도일 때 울릉도 소속 문제로 조선 정부와 쓰시마번 사이에 전개된 교섭이 난항을 겪자, 막부는 울릉도 도해와 관련이 있는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문의하였다. 돗토리번의 답변은, 울릉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며, 울릉도와 함께 독도도 돗토리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질의응답으로 볼 때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 명령에는 묵시적이지만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19세기 중반에도 하마다번의 해상 운송업자인 하치에몬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건이 있었다. 하마다 번주와 가신 등이 개입된 사건으로, 막부(江戶評定所)의 조사 결과 관련자에 대한 판결과 함께,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제2차 울릉도도해금지령(1837)을 내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1차 울릉도도해금지령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근대 일본의 독도 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근거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사찬 지도로는, 먼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에 울릉도(竹島)·독도(松島) 표기 및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제도로 표기한 것, 또한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1785)에 울릉도(죽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유로 기재된 것을 들어, 독도가 최초로 명기된 일본 서적 『은주시청합기』(1667, 오키의 지리지)의 인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관찬 지도로는 「일본번계약도」(1809)와 같이 표기 오류는 있지만 울릉도(宛陵島)와 독도(千山島)를 조선 영역으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여 현실을 반영한 지도가 있는가 하면, 에도 막부 말기~메이지 시대에 제작된 지도는 관찬·사찬을 불문하고 울릉도·독도 표현에 오류가 지속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전근대 서양의 독도 인지)에서는, 제3국이라 할 수 있는 서양에서 동해에

위치한 독도가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즉 프랑스·영국·러시아가 동해를 탐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울릉도·독도에 대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래하게 된 명칭의 혼란과 유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서양의 동해 탐사 이전에는 한국 관련 중국 자료의 유럽 전달이 지리적 지식 증가의 경로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18세기 전반 청 강희제의 명에 따라 제작된 중국의 『황여전람도』의 「조선도」가 프랑스에 전해져, 울릉도가 ‘판링타오’, 독도가 ‘찬찬타오’로 표기된 경위, 이후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당빌이 이를 바탕으로 「조선왕국도」를 제작한 바, 19세기 전반까지 유럽에서 한국전도의 모범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18세기 말~19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프랑스·영국·러시아 등이 동해 탐사와 고래잡이를 실시하던 중 발견한 섬을 지도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소개하고 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라페루즈가 동해 탐사 시 서양인 최초로 울릉도를 발견하고 ‘다줄레’로 표기한 것을 비롯하여, 영국의 콜넷이 동해 탐사 때 발견한 의문의 섬이 지도 제작과정에서는 ‘아르고노트’로,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으로 「태평양전도」에 독도가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1854년 러시아 함정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을 계기로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에는 동도가 ‘메넬라이’, 서도가 ‘올리부차’로 표기된 것, 1855년 영국 해군성이 간행한 해도에 독도가 ‘호넷 섬’으로 표기된 경위를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학의 권위자였던 지볼트가 1840년에 완성한 「일본전도」에 울릉도를 ‘다케시마/아르고노트’, 독도를 ‘마쓰시마/다줄레’로 병기함으로써, 이후 간행된 서양 고지도 및 일본 고지도에 독도 명칭의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지적하였다.

제6장(근대 일본의 독도 인식과 침탈)에서는, 메이지 정부 초기에는 울릉도·독도가 일본과 상관없다는 구 정부(에도 막부)의 인식을 계승했었지만,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게 되는 경위, 즉 근대 일본의 독도 침탈 경위

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메이지 정부 초기 울릉도·독도가 일본과는 상관없다고 인식한 근거로는, 외무성의 조선 파견 조사단이 내탐해 온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시말」을, 그리고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의 결정인 「태정관지령」(1877)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령의 ‘울릉도(嶺島) 외 일도(一島)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성과 태정관이 지적 편찬 과정에서 구 정부(에도 막부)의 울릉도도해 금지령(1696)을 자체 조사한 결과 내린 결정으로, 울릉도 도해 금지에 목시적이지만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구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계승한 것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증거로 태정관지령의 참고자료로 첨부된 「기죽도약도」를 들었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침탈 경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 내무성과 외무성의 의견이 달랐음에도 러일전쟁 중인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무인도인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하였으며,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告示) 제40호를 통해 이 사실을 국내에 알린 경위를 소개하였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소속과 같은 영토 편입 문제를 중앙정부의 관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대한제국과 여러 외국에 한국 병탄의 야심과 의심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통고를 의무화한 국제관습법(베를린 일반의정서, 1885)을 어긴 조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편입 조치와는 대조적으로, 19세기 말 일본에서 간행된 관찬(내무성·육군참모국·해군수료부)·사찬의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1881년 내무성이 이노 다다타카의 지도를 저본으로 제작한 「대일본국전도」에는 울릉도·독도가 없으며, 1894년의 관찬 지도인 「신조 조선약지도」에는 강원도 삼척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독도가 표시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세기 말 일본에서 간행된 관찬·사찬의 문헌, 지리교과서, 지리부도·역사부도에 독도가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게 기술되어 있는 여러 자료를 풍부하게 소개함으로써, 태정관지령 이후부터 독도 침탈 이전까지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7장(근대 한국의 독도 인식과 대응)에서는, 조선 정부가 수토제를 폐지(1895)한 이후부터 울릉도 개척과 수호활동, 관제 개편을 통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독도가 한국령임을 국제법적으로 천명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조선 정부의 항의, 식민지 시대 독도가 민족 저항의 상징이 된 역사적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수토제 폐지의 배경으로는 1881년 일본인들의 울릉도 삼림 무단 벌채가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지목한 후,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수호활동으로 국왕 고종이 1895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울릉도 개척을 결정한 사실, 울릉도 초대 도감 배계주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목재 무단 반출을 항의하기 위해 일본 시마네현에 건너가 2차례(1898년 9월 및 12월)나 소송을 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한제국의 울릉도 수호활동으로는 2차례(1899·1900)에 걸친 울릉도 조사단 파견 및 일본에 대한 항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한제국이 관제 개편을 실시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도록 결정한 후, 이를 대한제국의 관보(제1716호)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근대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알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1906년 3월 시마네현의 독도시찰단 파견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침탈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즉각 부정 및 일제 통감부에 대해 항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제작된 관민의 지리교과서, 지도 등에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독도 인지의 실태를 개관하였다. 갑오개혁으로 근대교육체제가 마련된 시기 및 통감부의 관여로 친일적인 교과서가 편찬되던 시기에도 관·민에서 제작된 지리 교과서·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었으며, 비록 명칭이 ‘우산도’(于山島), ‘양고’라고 표기되기는 했지만 대한제국이

망해 가던 암울한 시기 저항적 민족주의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와 일본 육군이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기도 했지만 분명히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 독도(獨島)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저술로서 『조선일람』(송완식, 1939)에 수록된 지도(경상북도관내도)를 소개하고 있다.

제8장(현대 초기의 독도 이슈와 대응)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1945) 이후부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때까지 독도를 둘러싼 논쟁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함에 따라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1947년 일본인의 독도 침입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는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학술조사(1947·1952·1953)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일본이 설치한 표목 제거, 독도 측량 등, 독도에 대한 학술조사를 독도 수호의 첫걸음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독도가 현대에 들어와 새삼 영유권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함에 있어서 연합국의 독도 인식이 작용하는 등, 국제정치 속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약문은 미국과 영국 주도로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1951년 8월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독도의 소속과 관련된 것은 제2조로, “일본의 한국 독립 승인,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조약문(제2조)에 독도의 소속이 명기되지 않은 결과 영유권 논쟁의 불씨로 남게 되었으며, 미국 또한 독도 논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소위 ‘평화선’(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독도가 포함된 수역이 대한민국 관할임을 국내외적으로 명확히

선언하였으며, 일본의 항의가 있었지만 연합국이 한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었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방 이후 초·중등학교의 지리·사회과 과목에서의 독도 교육도 독도 수호를 위한 최선의 대응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선 선언 이후에도 일본의 독도 침입 내지는 도발이 계속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1953년 일본인의 독도 상륙 및 물리적 충돌,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 과정(1951~1965)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거론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의 동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들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소개하였다.

단, 한일회담의 중요 이슈였던 어업협정에서는 평화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다가 배타적 전관수역이 아닌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지정된 것까지를 언급하였다.

제9장(21세기 전후의 독도 이슈와 대응)에서는, 해양질서의 변화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도 해양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경위 및 독도 주변의 바다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 설정 및 수산자원의 공동관리에 대해, 독도 영유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음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경제적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독도 영유권의 지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이 2005년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과 교과서와 부교재 등 교육을 통해 독도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도 2011년 이후 독도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초·중등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명기 및 다양한 부교재 제작, 체험과 실천 위주의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까지도 독도 인식이 강화되는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지킴이학교 운영이나 독도탐방 등은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실천적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제10장(독도 영유권 쟁점)에서는,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에 대한 일본의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 논리적 관점, 역사적 경위,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모순되는 일방적 주장임을 지적한 후 향후 전망을 언급하고 있다.

다섯 가지 주장이란, 1905년 무주지인 독도의 일본 편입(선점)론을 비롯하여,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고유영토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확인했다는 것, 한국이 1952년 이래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논리적 모순 내지는 충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지만, 국제소송은 국가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 III. 절실해지는 독도 교육과 종합교과서의 필요

이 책은 저자가 후기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는 연구서는 아니다. 저자인 심정보 교수가 지리 연구자로서 동북아역사재단 재직 시 독도지킴이 거점학교 운영, 독도지킴이를 위한 독도 부교재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처음 동기였다고 한다. 이후 서원대학교로 직장을 옮겨 ‘독도의 역사’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적합한 단행본이 없었기에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차원에서 집필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책에는 독도와 관련된 모든 쟁점과 연구성과가 종합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 『동해바다 독도 톺아읽기』라는 제목처럼, 독도 이슈는

물론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독도 주변 수역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쟁점을 구석구석 찾아보아도 사전처럼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저자가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공들인 흔적이 느껴진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다음의 네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이 책은 저자가 독도의 역사에 비중을 두었다고 했듯이, 전근대에 서 21세기까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도 영유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술 하되 각 시기별로 한일 양국의 영유권 논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말미에 반세기 이상 축적되어 온 연구성과의 한계도 언급해 줌으로써 독도 연구에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둘째, 독도 영유와 관련해서는 개인보다도 중앙정부 또는 국가의 조치 내 지는 대응에 비중을 두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하여 신라에 병합한 것에 대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여러 섬(제도)에 신라의 행정적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17세기 말 일본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을 당시, 법령 발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안용복의 일본 도해에 대해서도, 개인적 일탈을 연상시키는 듯한 ‘안용복 사건’으로 칭하면서 사건 내용 자체보다는 조선 정부의 일도이명(一島二名, 울릉도=죽도) 전략, 그리고 일본의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의 울릉도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는지 법령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혹 안용복의 일본 도해를 지나치게 영웅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독도 영유의 주체로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나, 결정, 항의 등의 대응 전략을 소홀히 해 왔던 경향도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균형 잡힌 서술이라 보여진다.

셋째, 아직 충분히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는 19세기 말~대한제국기의 독

도 대응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논리에서 역사적 사실 및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

1881년 일본인들의 울릉도 삼림 무단 벌채에 대해 조선 정부가 2차례(1899·1900)에 걸쳐 울릉도 조사단을 파견했을 당시, 조사단 구성원으로 배계주·우용정과 일본인(부산 해관 및 주부산 영사관 근무) 이외에도, 프랑스인(라포르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대한제국의 관보(제1716호)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근대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공지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외교권을 상실해 가던 시기에도 대한제국의 항의 조치가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06년 3월 시마네현의 독도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 울도 군수(심홍택)가 강원도 관찰사 서리(이명래)와 대한제국 내부에 보고한 문서,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의정부 참정대신(박제순)에게 보낸 공문서, 그리고 이에 대한 참정대신의 조치(지령 3호, 1906.5.10)를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고 즉각 부정했음을 알게 해 주는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황성신문』(1906.7.13)에 실린 기사, 즉 일본 통감부가 대한제국 내부에 울도군 소속 도서와 군청 설치에 대해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외교권을 상실하고 외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가 일제 통감부에 항의한 근거로 보았다.

넷째, 저자의 전공인 지리학·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근대에서 현대 초기까지 각 시기마다 독도의 역사적 경위를 서술한 다음에 지도를 배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인지의 정도를 독자가 스스로 비교 내지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서양의 고지도에 울릉도·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를 통해 세계사 안에서의 독도 인지 실태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8세기 말~19세기 전반에 걸쳐 프랑스·영국·러시아 등이 동해 탐사와 고래잡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독도를 지도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칭의 오류 및 유통과정에서 생긴 혼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

이 밖에도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독도 연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각 장의 마지막에 보이는 Q&A, 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일본 측의 논리를 다섯 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제10장은, 독도 영유와 관련하여 한국이 극복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이는 「독도 연표」는 거의 이 책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자가 독도 연구에 들인 시간을 엿볼 수 있다.

향후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 논쟁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는 가운데 심정보 교수의 『동해바다 독도 톺아 읽기』는 독도에 대한 종합교과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단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려면, 독도와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역사적 고찰임에도 공백으로 남아 있는 시기가 있다. 임란 이후부터 안용복 사건 발생 때까지 전근대 정부인 조선의 울릉도·독도 인식이나 변경 관리는 어떠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안용복 사건 당시 쓰시마번과의 교섭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구사했던 ‘울릉도 고수 전략’은 임란 직후의 변경 관리 방침(1614)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독도 이슈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조치나 대응을 중시하는 저자의 관점으로 볼 때, 수도제 실시 이전의 언급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든다.

여기에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술한 만큼 선행연구의 부실함이 그대로 반영된 측면도 있다. 에도 막부의 제2차 울릉도도해금지령(1837)에 대해, 제1차 울릉도도해금지령(1696)과 마찬가지로 금령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근거로는 일본의 고문헌 및 고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표현된 문언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인 근거라면 일본 막부가 전국에 제2차 울릉도도해금지(1837)를 법령으로 선포할 당시, 울릉도·독도의 조선 소속을 쓰시마번에 확인한 이후 내려진 결정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 ‘인지’와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아쉽기도 했지만, 동해바다와 독도 이슈를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어 가듯이 서술해 낸 저자의 내공과 역량으로 볼 때, 다음 저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책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국의 섬-류큐·센카쿠에 대한 식민지주의와의 투쟁』

松島泰勝, 2020, 『帝国の島-琉球・尖閣  
に対する植民地主義と闘う』, 明石書店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국제질서 속 '국경의 섬'
- II. 『제국의 섬』을 둘러싼 투쟁과 유산
- III. 향후 연구를 향하여

## I. 국제질서 속 ‘국경의 섬’

최근 일본에서는 ‘국경낙도(国境離島)’로 불리는 섬들이 급변하는 해양질서 가운데 국가 전략의 요충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5년 단위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해양관할권을 강화했다. 2016년 4월에는 유인국경낙도법(유인국경낙도지역보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등 148개 섬을 유인국경낙도로 지정했다. 2021년 3월 ‘중요 토지 등 조사 규제법안’을 제정하고 국경낙도의 토지 매매를 감시하고 자위대 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국경낙도의 무인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함으로써 영해를 보전하고 영토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낙후된 섬의 개발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과 제국주의의 유산과 식민주의 착취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나가사키현(長崎県)은 국경낙도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오키나와현(沖縄県)과 주변 섬에서는 토지의 국유화와 자위대 시설 구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섬 고유의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섬 주민의 투쟁을 다룬 저서가 일본에서 출판되어 서평하고자 한다.

『제국의 섬-류큐·센카쿠에 대한 식민지주의와의 투쟁(帝国の島-琉球・尖閣に対する植民地主義と闘う)』은 일본에서 국경에 접해 있는 섬들에 대하여 제국주의적 착취와 영토 팽창이라는 시각에서 서술했다. 저자인 마쓰시마 야스카츠(松島泰勝)는 교토에 소재한 류코쿠대학(龍谷大学) 경제학부 교수로 전공은 도서경제론이다. 저자는 본인을 이시가키(石垣) 섬에서 자란 류큐인으로 섬에 대한 역사와 경제를 연구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본서는 섬 내부인의 시각에서 일본의 국경과 섬에 대한 분석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경 일본에서는 이른바 ‘국경 서적 출판 붐’이 나타났다. 국경 관련 서적은 일본의 영토분쟁을 소개하며 국익의 관점에서 국제법과 현실정치 문제를 다루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의 영토 주장에 대해 국경 내셔널리즘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 국민에게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저자는 이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내부자의 시각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시대적인 맥락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류큐 독립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서에서 저자는 섬과 영토권에 대한 몇 가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는 ‘섬은 누구의 것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단순히 국민국가의 소유권을 묻는 대신 제국의 시각에서 섬을 식민지화하고 지배하려는 문제에 주목했다. 저자는 당시 국경 섬에 거주하거나 왕래한 상인, 지방행정가, 선주민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섬을 특정 국가의 소유의 대상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전통과 역사인식, 경제적 착취와 식민지 구조, 교육과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저자는 사례로 센카쿠 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다오위다오’)와 오키나와(류큐), 주변 섬들에 주목했다. 저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할 수 있는 역사적,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둘째는 ‘고유의 영토가 존재하는가’하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제국의 약탈의 논리를 고려할 때 무주지 선점은 승자의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저자는 과거 제국이 국제법상 법리를 근거로 무수한 섬을 영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제국이 일방적으로 무주지 선점을 선언함에 따라 무수한 영토가 제국의 지배 아래 놓였다고 주장했다. 제국의 무차별적인 선점에서 탈피하기 위해 식민지 국가들과 피지배 민족들이 독립했으나 여전히 많은 영토가 구 제국의 지배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저자는 무주지 선점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나 해당 국가에서는 법적인 근거로 내세움으로써 스스로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현대 국가에서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채 영유권을 다룰 경우 갈등과 대립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 저자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을 세계 탈식민지화 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저자는 사례로서 센카쿠 열도와 류큐의 영유를 둘러싼 중일 관계의 변환을 논하고 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

서 여전히 제국주의 착취의 유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본서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섬에 대하여 내부자의 시각에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해양영토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이해를 제시한다. 그간 해양영토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국제관계나 국제법, 안보,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에 주목해 왔다. 저자는 섬의 주민과 역사, 관습, 생활 등에 주목하여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본서에는 18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아마미 제도(奄美諸島), 이시가키 섬 등 류큐와 주변 섬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오키나와 복귀, 중일 센카쿠 영토 분쟁까지 폭 넓은 시기와 사례를 다룬다. 다소 긴 흐름이나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돕는다. 국경 주변의 도서 지역의 주민생활, 외부인의 이동, 지역산업의 부흥과 경제적 착취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서 섬에 대한 문제를 자리매김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폭력과 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섬을 둘러싼 영유권과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주로 해양정책은 국가 전략의 일부로 정부가 주도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서에서는 섬 주민의 시각에서 국가로부터 가해진 폭력, 지역산업의 부흥과 개발, 착취에 주목했다. 본문에서는 이를 현(縣) 이익과 국가(國)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저자는 향토애와 애국심 사이의 갈등,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역사 교육, 자위대 기지 건설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각 장마다 논의를 풀어냈다. 이 같은 시각은 류큐인이면서 일본인으로서 저자가 내부자의 관점에서 일본의 영유권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며 1장과 2장에서는 류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3장은 경제식민지주의의 관점에서 센카쿠 열도와 류큐에 대한 일본인의 개발과 경제적 착취를 제시했다. 4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로부터 류큐의 주권문제와 아시아 독립투쟁을 연계하여 서술했으며, 5장은 현대 시기에 나타난 군사 기지 건설과 교과서 검정문제를 통해 섬의 군국주의화를 주장했다. 6장은 학문의 식민지주의 관점에서 류큐인 유골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를 다루

있으며 황민화교육이라는 식민지주의 정책에 대해 고찰했다. 7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류큐의 탈식민지화와 일본으로부터 독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각 장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평을 하고자 한다.

## II. 『제국의 섬』을 둘러싼 투쟁과 유산

### 1. 식민지와 ‘선점’의 논리

1장에서 저자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류큐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무주지 선점론’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했다. 저자는 류큐병탄의 사례를 통해 일본 정부가 섬을 정복하고 지배권을 갖는 국제법적인 근거로 무주지 선점을 들고 있다고 보았다. 저자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변방의 섬을 영토로 결정하거나 편입한 것은 국민들이 알 수 없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지받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1879년 일본 정부가 류큐국을 폭력적으로 병탄하고 청조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아서 1880년에 ‘분도(分島)계약’ 교섭이 실시되었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가 침략의 의도를 숨기기 위하여 ‘선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자는 “일본 정부가 ‘무주지선점’이라는 국제법 법리를 근거로 센카쿠 열도 영유화를 합법화했다”고 말하며 ‘무주지’라는 단어 자체가 제국주의적이라고 했다. ‘무주지’는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가운데 제국이 만들어 낸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섬이라는 것은 제국의 시각일 뿐, 이전부터 섬에 살고 있거나 또는 섬을 거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선점’하는 주장은 무효라고 보았다. 일본 영유를 주장하는 국제법학자 가운데 시효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센카쿠 열도가 청조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순이 있다고 보았다. 저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선점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국가의 영토권을 우선하면 기존에 섬에 거주한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선점은 구주제국이 식민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점 원칙은 발견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식민지 획득에 편승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게 법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선점이라는 국제법 법리론 자체가 구주제국의 식민지 지배 혹은 영토 분할 과정에서 생겨난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무주지 선점에 대해 ‘발견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먼저 발견한 국가에게 영유권을 인정하는 발견 우선의 원칙이 선점에 해당하는 것인 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지의 토지를 발견한 것만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게 영유권이 존속한다고 인정하고 이후에 영토를 차지한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반론도 제시하였다. 저자는 토지를 필요로 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의 책임을 지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발견은 단순하며 미성숙한 권리라고 보았다. 저자는 영토를 선점한 국가가 주권을 확립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식민지 경쟁에서 우위에 선 승자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선점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근대 국제법에 대한 부정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저자가 선점 이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질서와 기반이 실은 제국주의 질서와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저자는 구미 중심의 제국주의로 형성된 세계 질서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탈식민지화를 통해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2. 류큐·센카쿠 열도 ‘고유의 영토론’과 반박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제시하

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정부가 선점하여 영유화한 것으로 제국주의가 지속하는 상태로 보았다. 저자는 현재 일본 정부는 선점을 내세우며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영토 편입 조치, 토지 대장의 기재, 등기, 임대료 수취, 과세, 광업권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실효 지배를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중앙정부와 지방기관이 허가하여 학술조사와 시찰, 측량 등이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허가한 민간인이주와 사업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주권의 행사로 간주하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점이다. 저자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무주지로 인식했으며 스스로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를 영유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관을 통해 영유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자료는 공문서나 정부의 기록 등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의 실증 자료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인 미도리마 사카에(緑間栄)의 논의를 제시하고 비판했다. 미도리마 사카에는 오키나와국제대학(沖縄国際大学) 명예교수로 1984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출판하고 국제법적 관점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제시했다.<sup>1</sup> 미도리마 사카에는 센카쿠 열도를 남측 섬 사람들이 오랜 세월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으며 류큐와 중국이 책봉과 조공을 바치는 해상의 길목에서 센카쿠 열도에 해당하는 섬을 표식으로 왕래했다고 보았다. 그 후 해당 해역에서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사실이 공표된 후 대만, 중국, 일본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았다. 저자는 미도리마 사카에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중국이나 대만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지배

1 間栄, 1984, 『尖閣列島』, おきなわ文庫.

근거는 역사적으로 추측한 것이 아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관계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 다른 국제법학자인 오자키 시게요시(尾崎重義)의 주장을 소개하고 반박했다. 오자키 시게요시는 아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와의 관계를 통해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오자키 시게요시는 센카쿠 열도와 미야코 제도(宮古諸島), 아에야마 제도는 가까이 위치하여 강한 조류, 계절풍과 태풍이라는 자연조건을 고려할 때 같은 생태권이라고 보았다. 오자키 시게요시는 이를 근거로 센카쿠 열도와 주변 섬들이 공통의 생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저자는 류큐인 사람들뿐 아니라 대만 사람들도 센카쿠 열도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고 제시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지방 행정 기구 수립과 이를 통한 실효지배를 검토했다. 19세기 후반에 고유 영토론 가운데 지방정부의 수립과 행정, 권력의 행사가 영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이 되었다. 저자는 이를 실효지배(혹은 실효적 점유)의 요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무인도의 경우 행정기관 개설이나 경찰력, 병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거주 불가능한 섬으로 실효지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제국 팽창기에 일본은 도서를 총 9회 편입했으며 1895년 이후에 실시한 편입은 모두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일본 정부가 무주지 선점 또는 고유의 영토론을 내세워 섬들을 편입했으나 저자는 모두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할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자는 일본의 국제법학자 가운데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유론 근거로 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법상 판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하는 1928년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Case), 1931년 클리퍼톤 섬 사건(Clipper-ton Island Case), 1933년 동부 그린란드 사건(Case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등을 보면 센카쿠 열도나 독도와 같이 전쟁 중에 편입 또는 합병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선주민족의 권리 획득의 측면에서도 선점 논리가 부정된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국제법학자인 아베 고키(阿部浩己)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나 대만과의 사이에 영토분쟁의 대상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한

다고 말했으며 저자는 이에 동의했다. 나아가 저자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미야코 섬(宮古島)과 야에야마 제도 등 센카쿠 열도 주변 섬에 자위대 기지를 건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본서의 1부와 2부 등 전반부에서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권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저자가 주장하는 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과 고유영토론은 논리적으로 결합이 있으며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경제 식민지주의와 기류(寄留)상인

3장은 경제식민주의 관점에서 류큐와 센카쿠 열도의 개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본가와 관료에 의한 이윤의 독점과 착취 문제를 다루었다. 경제 식민주의에 대해 저자는 독점 자본가가 경제를 착취하거나 이익을 독점하고 국외 혹은 본토로 물자를 보내는 등 자원 수탈적인 개발로 보았다. 경제 식민주의로 센카쿠 열도의 자원 개발은 경제식민주의 관점에서 착취에 해당하며 류큐의 경제적 자립과 무관한 것이었다. 저자는 후쿠오카현 출신의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郎)라는 상인을 통해 류큐와 센카쿠 열도에서 이루어진 경제 침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고가 다쓰시로는 기류상인으로<sup>2</sup> 1879년 류큐로 이주하여 센카쿠 열도와 류큐, 본토를 오가며 센카쿠 열도의 경제개발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인물이다. 저자는 고가 다쓰시로의 사업을 통해 식민지적 경영에 대하여 밝혔다. 고가 다쓰시로는 1887년부터 야광패, 진주, 해상 등을 거래했으며 센카쿠 열도에 선박 제조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했다.

저자가 고가 다쓰시로에 주목한 것은 기류상인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기

2 기류상인(寄留商人)은 1882년경부터 오키나와에서 지내온 타 부현의 상인으로 오사카와 가고시마현 출신이 많았다. 쌀, 설탕 등 거래를 거의 독점하였으며 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어서 오키나와 경제, 정치의 커다란 세력이 되었다. 이들 상인을 보호하는 지사가 있어서 현민이 반발했다.

류상인을 통해 류큐의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들 집단에 주목했다. 기류상인은 류큐병탄 이후 일본 본토에서 류큐로 이주하여 상업 활동을 한 무리를 말한다. 당시 오키나와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기류상인들이 친족 네트워크와 기업인, 정부 관리와 연대하여 경제활동을 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을 개발하거나 독점할 수 있었으며 주로 본토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했다. 저자에 따르면 1888년 전후에 일본 본토에서 류큐로 이주한 사람들은 약 2천 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기류상인들은 상업, 무역업, 제조업, 금융업, 해운업, 광산개발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여 나하(那覇)를 거점으로 류큐 경제를 장악했다. 저자는 기류상인을 통한 경제적 착취는 야에야마 제도에서도 이어졌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인물로<sup>3)</sup>는 도쿠시마현 등에서 약 170명을 야에야마 제도로 이주시키고 정부로부터 제당기기, 농업도구, 말 등을 제공받아 본격적으로 설탕을 생산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감과 말라리아, 자본 부족 등으로 사업은 실패하고 이후 대만으로 이주하여 설탕을 생산했다. 이처럼 저자는 기류상인에 주목하여 야에야마와 이시가키 섬 주민에 대한 착취 구조와 경제 식민주의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센카쿠 열도를 영유화하는 과정에서 기류상인과 오키나와 현청의 상호 협력 관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 경제적 착취의 측면에서 류큐의 자원 내셔널리즘을 강조하였다. 자원 내셔널리즘은 센카쿠 열도 해역의 광업권에 관한 것으로 류큐와 주민, 일본 정부 간에 경쟁이 나타났다. 저자는 센카쿠 열도 해역의 광업권 사례를 제시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1969년 2월 오키나와 출신 직원이 류큐 정부 통상산업국 공업과에 센카쿠 열도 해역의 광업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광업권을 본토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요청에 대해 개발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광업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3 나가가와 도라노스케(中川虎之助, 1859~1926)는 도쿠모리현 출신 일본 정치가이자 중의원, 기업가이다. 1891년 전국 각지 농민 약 170~300명을 이끌고 이시가키 섬(石垣島) 나츠(名藏)지구 개간에 착수했다. 1895년에는 야에야마(八重山)제당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01년 대만으로 이주하여 제당소를 개설하는 등 일본 남쪽 섬 지역과 대만에서 활동했다.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복귀 후 광업법을 개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를 통산성이 지역 이익을 침탈한 것이라고 보았다. 국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자 센카쿠 유전개발을 둘러싸고 현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었다. 저자는 센카쿠 열도의 석유 자원개발에 관여한 이나미네 이치로(稲嶺一郎)<sup>4</sup>를 통해 전후에도 경제식민주의가 이어졌다고 서술했다. 이나미네 이치로는 오키나와에 ‘류큐석유(琉球石油)’를 설립하고 ‘센카쿠 열도 해역 석유자원개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센카쿠 열도 석유개발계획에 관여했다. 이나미네 이치로는 오키나와 복귀 후 오키나와현이 주체가 되어 센카쿠 열도 유전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저자는 전전과 전후, 오키나와 복귀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현민을 위한 자원개발에서 일본 정부로 이어지는 센카쿠 열도 개발에 대하여 자원착취형 경제라고 보았다.

####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4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섬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는가를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남쿠릴열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4장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와 이후 미국 주도로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주목했다. 저자는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에 기반한 일본·중국·미국·대만·오키나와의 관계가 재편되었다고 보았다. 2013년 중국 『인민일보』에서 센카쿠 열도의 영유화를 주

4 이나미네 이치로는 일본의 정치가, 군인, 기업가로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출신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군 무관부에 파견되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부임했다. 전후에는 오키나와인 연맹에 참가하여 대표가 되었으며 1950년 류큐수산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석유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와 교섭하여 민간 이관을 승인 받아 1950년 9월 류큐석유를 창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1970년 자민당 참의원원으로 당선되면서 오키나와현 보수 정치세력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장하며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류큐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고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제국이 중국과 대만을 침략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정부의 아시아 전략의 측면에서 대만과 일본의 남부 섬을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았다. 일본은 당시 덜레스(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의 구두 발표로 류큐에 대한 ‘잠재주권’을 인정받았다. 또한 동 강화조약은 해석에 유연성을 갖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중화민국은 전쟁 시기부터 류큐에 관심을 가졌으며 법적 지위를 모호하게 하여 중일 간 미래의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류큐에 대한 잠재주권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입장은 더욱 모호해졌다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센카쿠 열도연구회’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들은 “잠재주권이란 최종적인 영토 처분권으로 이것이 일본에 진정된 것은 류큐열도의 일부로 인식하여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성의 전 법무관인 찰스 슈미츠(Charles Schmitz)는 잠재주권에 대하여 “덜레스가 말한 잠재주권에는 법적인 의미가 없다. 태평양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것이 미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를 병합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인 코멘트로 법적인 코멘트는 아니다.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교섭한 우리에게 는 필요하지 않으며 역사적인 역할을 한 언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5. 지정학적 거점으로서 센카쿠 열도와 류큐

5장에서 저자는 변경의 외딴 섬에서 군사화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저자는 센카쿠 열도와 류큐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위한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사례로서 미야코(宮古) 섬, 아에야마(八重山) 섬, 아마미오 섬(奄美大島)에 자위대 기지가 신설되거나 증설되고 미사일 기지와 레

이더기지, 탄약고가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섬들은 ‘반상적국’으로 국  
 가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어 전장이 될 우레가 지금까지 없이 더 높아지  
 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따라 유사시 센카쿠 열  
 도를 안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미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했다. 저자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요나구니초, 이시가키  
 시, 미야코 섬의 자위대 배치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중국 위협론을 들고 있으나 그 이  
 면에는 미야코 섬과 야에야마 제도를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거점으로 하려  
 는 우파 세력의 활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우파  
 세력과 해양영토 관련한 논의는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 전후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해양기본법 입법과정에 ‘해양기본법연구회’가 관여  
 했으며 이들은 구 해상보안청 출신 관료 또는 우파계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사가와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과 해양정책연구소(OPRI, 海洋政策研究所)  
 는 해양정책과 해양영토문제에 적극 관여하며 보고서 발간, 정책 제언, 해  
 양과학조사를 추진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해양정책에 우파계열의  
 정치가 혹은 지식인, 구 관료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  
 면이 있다.

저자는 야에야마 제도에서 자위대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7년 요나구니초에서 요나구니방위협회가 발족하  
 여 2008년에는 자위대 유치 서명활동을 추진했다. 같은 해 9월 정의회에서  
 자위대 유치를 추진하는 결의가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2004년 일본 방  
 위청은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을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매김했다. 동 대강  
 에서는 도서부침공으로 대항조치를 강조했다. 동 대강에 이어 차기 중기방  
 위계획에서 오키나와 주변 섬에 대한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를 선도제도-미야코 섬, 야에야마 제도 등 낙도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  
 다. 2004년 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격태세를 명시  
 했다. 이 가운데 류큐를 ‘버린 돌’로 처리하는 방위계획을 세우고 센카쿠 열  
 도 방위와 자위대 기지 건설을 연계했다. 실제로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안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같은 해 12월 신방위대강과 신중기방위정비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요나구니 섬에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부대, 항공자위대 위협감시대를 배치하는 등 방위를 강화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 없이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2015년 11월 이시가키(石垣)시에 육상자위대 배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이시가키시 시장은 2016년 12월 기지건설을 위한 절차를 승인하고 2018년 7월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표명했다. 2019년 3월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은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 기반하여 직접 청구를 위해 2018년 10월 31일부터 1개월간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1만 4263명의 유효한 서명을 받아서 기지 건설 시행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이시가키시에 요구했다. 2020년 4월 현재, 이시가키 섬에서는 약 6천 명의 경비부대, 이동형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 16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전국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고 관광객 출입 자제 요청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하여 외출과 영업 자중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가키 이마코지마 섬에서 자위대 기지 건설 공사를 이어 갔다. 이는 본토와 다른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여 일본의 남서 제도는 중국 해군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민감한 지점이라고 보았다. 일본과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보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저자는 일본의 남서 제도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해상 경계를 감시하고 적본토 공격을 위한 거점과 적합선 침공 저지 등 군사전략상 요충지라고 보았다. 또한 국가 관할 해역의 기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6. 교과서 채택 문제와 도서 방위

5장에서는 군사화 문제와 함께 섬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고찰했다. 저자는 교육을 통해 섬의 영유권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았다. 사례로서 ‘야에야마 교과서 채택 문제’를 통해 교육과 도서 방위의 관계를 제시했다. 저자는 교육을 통해 군·관·민 공생 체제가 형성된다는 주장했다. 저자는 야에야마 교과서 채택 문제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2011년 8월 23일 이시가키(石垣)시 다케토미(竹富)정, 요나구니(与那国)정 채택지인 야에야마채택지구협의총회에서 역사수정주의 계열 출판사인 이쿠호샤(育鵬社)의 교과서가 중학 공민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같은 해 8월 26일 이시가키시 교육위원회와 요나구니정 교육위원회는 이쿠호샤 교과서를 채택했으며 다음 날 다케토미 교육위원회는 도교서적 교과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다케토미정을 교과서 무상급부 대상 외로 하고 자비 구입을 하도록 했다. 2013년 10월 문부과학성은 다케토미정의 교과서 채택이 교과서 무상조치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게 다케토미정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교육위원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4년 3월 문부성은 다케토미정 교과서 채택이 교과서 무상조치법에 반한다며 다케토미정 교육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동 교육위원회는 거부했다. 2014년 5월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다케토미정 교육위원회를 단독 채택지구로 하도록 결정했다.

저자는 야에야마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야에야마 교과서 채택 문제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정치가 교육에 개입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2013년 3월 1일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다케토미정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에게 교과서 무상조치법에 기반하여 이쿠호샤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지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일 채택지구 내에서 같은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정한 교과서 무상조치법과 교육위원회의 채택권을 인정한 지방교육행정법은 어디까지나 같은 입장이다. 야에야마채택지구협의회 답신 결과에 반하여 다른 교과서를 채택한 다

케토미정의 행위는 위법이다. 이에 대해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은 “교과서 채택권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말하며 지방교육행정법이 우위에 있음을 내세웠다. 아울러 교과서 조사위원의 문제점이 지적된 교과서의 채택을 무기명으로 정한 야에야마채택지구협의회에 대하여 비판했다. 저자는 교과서 무상조치법은 시정촌이 갖는 교과서 채택의 결정권과 교육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과서 무상조치법이 정치가가 주장하는 역사관, 안전보장 개념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수단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오키나와현과 다케토미정은 지방 자치의 자립적인 정신을 내세우며 국가와 정치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이의를 호소하고 불복종했다고 보았다.

야에야마 공민교과서 논쟁은 한국에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야에야마 지구는 지리적으로도 이시가키 섬, 이리오모테 섬(西表島), 요나구니 섬(与那国島)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만과 국경을 접하고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지역이다. 2011년 야에야마채택지구협의회가 무기명 투표로 이쿠호샤 공민 교과서를 채택했다. 2011년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교과서를 채택한 배경에는 2010년 이시가키시에서 16년 만에 보수 성향의 시장이 탄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 이시가키시 시장은 2010년 10월 실태조사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센카쿠 열도 상륙 허가를 신청했으나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14년 7월 이시가키시는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센카쿠 열도 상공에서 환경 조사를 추진했다. 이시가키시 시의회는 2010년 매년 1월 14일을 ‘센카쿠 열도 개척의 날’로 정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 시장은 “2012년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압박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영해경비지속, 어업환경정비, 자연환경 상륙 조사를 주장해 왔다.

저자는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나카야마 시장의 역할과 활동에 주목했다. 나카야마 시장은 우익 계열의 교과서 채택, 자위대 기지 건설을 주도했다. 나카야마 시장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키나와에 미군 전용시설이 있는 것을 공부하여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

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미군 전용시설 구축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군 전용시설과 오키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싶다. 낙도에 사는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본 국가를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이 사는 곳을 지키고 있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다. 센카쿠 열도는 대부분 국유화되었으나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바다의 도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구매는 아니다.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한 ‘국경낙도방위’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카야마 시장은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정치와 교육은 명목상 분리되어 있으나 시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래 교육위원회가 할 것이나 교육의 본질은 시장의 종합 조정 기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일본의 애국심과 이시가키 섬에 대한 애향심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나카야마 시장이야말로 스스로 시장의 의무를 방치하고 애국심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아에야마 교과서 문제와 나카야마 시장의 사례를 통해 내셔널리즘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것을 우려했다. 대안으로 저자는 평화교육을 제시하면서, 이시가키 섬의 오키나와현 교직원 조합에 소속하는 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교육 활동을 소개했다. 이시가키 섬 전역에는 미 군용기의 비행사가 처형된 장소,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가 매장된 장소가 있다. 이 지역을 포함하여 매년 6월을 평화 월간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을 통해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자는 미야코 섬, 아에야마 제도, 아미미오 섬 등에 자위대 기지가 신설되고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탄약고가 설치되는 등 섬이 전장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우파 세력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아이들에게 전전 회귀형 애국심을 교육하고 해당 지역을 군국주의 거점지로 구축한다고 보았다.

센카쿠 열도 문제를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류큐의 독립이다. 7장은 결론 부분으로 이 같은 주장이 담겨 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류큐독립과 센카쿠 열도 문제를 연계하여 설명했다. 저자는 “센카쿠 열

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류큐의 자립과 독립, 평화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영유화하는 것은 미일안보 체제를 용인하는 것이며 류큐에서 미군 기지와 자위대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이다.

### III. 향후 연구를 향하여

본서에서는 류큐와 센카쿠 열도를 사례로 제국주의와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우선 저자는 제국주의와 영토 확장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현대 일본 국가의 영유권 문제를 고찰하고 기존의 주장을 반박했다. 저자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의 영토론은 그 자체도 모순이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획일화된 언론과 경직된 연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과 류큐, 대만, 중국,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섬 영유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6장에서는 류큐인 유골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류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센카쿠 열도 문제와 연계하여 일본인과 류큐인, 중국인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학문의 식민주의적 관점에서는 류큐인, 조선인, 아이누, 대만 원주민에 대한 일본제국의 민족 차별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관점은 영토에서 민족으로 국가에서 지역사회로 해양영토에 관한 논의를 한층 구체화한다.

둘째, 식민주의와 투쟁하는 지역의 내러티브를 통해 저자는 외부로부터의 착취와 개발이라는 모순을 잘 드러냈다. 저자는 섬에 대한 인식을 국가의 안보와 전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람과 이동이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되돌렸다. ‘섬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시작한 저자의 질문은 본서의 중반에 이르러 ‘누구를 위한 섬인가’로 바뀌었다. 섬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에 대한 착취와 폭력, 외부세력에 의한 침탈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본문에서 “일본의 애국심과 이시가

키 섬의 애향심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하는 부분은 저자의 시각을 명확히 드러낸다. 역사의 굴곡을 지나 저자는 작은 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향했다. 국가의 목적은 착취와 위협,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 앞서 사람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셋째, 저자의 시각은 현 시점에서 오키나와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5월 15일 오키나와 본토 복귀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도쿄와 나하(那覇)에서 기념식전을 시행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현민들은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들은 “50년간 일본 정부에게 속았다. 절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오키나와 복귀 50주년과 관련한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지난 50년간 오키나와를 둘러싼 안보, 경제, 정치적 흐름을 다루며 ‘평화로운 섬’ 오키나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는 ‘본토화’, ‘자립’, ‘차별’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남아 있다. 저자는 류큐인으로서 연구자로서 그 원인을 고찰하였으며 해결책으로서 류큐의 독립을 제시했다.

본서에서 저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논의를 이끌어 갔다. 때로는 지나치게 강경한 주장에 비해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저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존하여 서술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로서 해양영토 확장과 섬 주민의 착취라는 구도 속에서 나름의 답을 구하려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류큐인으로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섬 문제를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의 이력이 매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2012년 『류큐 독립의 길-식민주의에 항거하는 류큐 내셔널리즘(琉球独立への道-植民地主義に抗う琉球ナショナリズム)』(法律文化社)을 출판한 이래 일본의 우익들로부터 혐오 범죄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일본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착취와 지역사회의 내러티브에 주목한 저자의 연구야말로 일본 해양영토에 관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토·해양일지



# 영토 · 해양 일지

염태일 한림성심대학교

2021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일: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li> <li>• 19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 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한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일: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동해를 '소동해'로 표기한 1730년판 고지도 공개</li> <li>• 7일: 일본 자위대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 다오(釣魚島)'] 방어를 위해 전투기 운용 거점 확충 방안 검토</li> <li>• 9일: 일본 항공자위대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미 공군 특수작전기와 수색구조훈련 실시</li> <li>• 17일: 일본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킴</li> <li>• 18일: 일본 외무상이 중국 외교부장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40분간 전화 통화</li> <li>• 19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독도 북동쪽 KADIZ에 진입</li> <li>• 20일: 러시아·중국 폭격기가 독도 인근 해역 및 센카쿠열도 인근 상공까지 비행</li> <li>• 24일: 일본 자민당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대응팀 설치 건의</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배치</li> <li>• 4일: 러시아가 쿠릴열도 인근에 미사일시스템 가동 등 군사력 증강</li> <li>• 8일: 일본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 조직이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li> <li>• 14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태평양을 왕복 비행함</li> <li>• 15일: 러시아 군용기 비행에 대응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li> </ul>

영토·해양 일지

2021년	국내	국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일: 한국군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li> <li>•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약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일: 동중국해 인근 일본 육상자위대 미사일 기지에 중국 경계심 표명</li> </ul>
2022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경상북도가 규탄 및 사과 촉구 성명서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li> <li>• 11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주변 항행</li> <li>• 16일: 일본 기상청이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li> <li>• 1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li> <li>• 25일: 미국 국방부 기관지인 『성조지(stars&amp;strips)』, '독도그림' 실선물 일본대사관 반송 관련 독도를 '분쟁 도서'로 규정하여 미국 국방부 입장과 배치</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일: 강원도교육청이 '강원 독도체험관' 개관</li> <li>•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일: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동부에 사격 연습을 위한 항해경보 발령</li> <li>• 3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쿠릴열도 일대 군사훈련 예고에 강력히 항의</li> <li>• 7일: 주일 미국대사가 쿠릴열도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한다고 표명</li> <li>• 12일: 러시아 국방부가 미 핵잠수함의 영해 침범 발표</li> <li>• 12일: 러시아의 미 핵잠수함 영해 침범 발표에 미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필요성 공감 표시</li> <li>• 22일: 북한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독도의 날'과 관련 비난</li> </ul>

2022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외교부가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독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강력 항의</li> <li>•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독도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 파견</li> <li>• 24일: 주일 미국대사가 쿠릴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 북한이 미·일 공조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에 해군이 경고사격 실시</li> <li>• 16일: 정부가 중국 불법 조업 어선 2척 나포</li> <li>•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해군 격려</li> <li>• 29일: 독도 문제 및 강제 동원의 문제가 실려 있는 일본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 교육부가 검정 결과 시정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일: 일본 총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고 주장</li> <li>•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북방한계선 침범</li> <li>• 9일: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에 면세 특구 창설 법안에 서명</li> <li>• 9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서해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를 강화</li> <li>• 10일: 일본 관방장관이 러시아의 쿠릴열도 면세 특구 지정에 유감 입장 전달</li> <li>• 11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 감행에 일본 외상은 군비 확충 항의</li> <li>• 11일: 러시아군이 쿠릴열도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감행</li> <li>• 15일: 미국이 한국 서해에서 항공모함이 참여한 공중 훈련 진행</li> <li>• 16일: 일본 정부가 중국 선박의 센카쿠열도 항행에 대해 용납 불가·항의</li> <li>• 16일: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열도 부근 항행</li> <li>• 20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 발사</li> <li>• 21일: 러시아 외교부가 쿠릴열도 관련 일본과의 평화조약교섭 중단 의사 표명</li> <li>• 25일: 러시아군이 분쟁 구역인 쿠릴열도에서 군 훈련 실시</li> <li>•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심의회를 열어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 통과</li> </ul>

영토·해양 일지

2022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일: 해군,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출몰 경고</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 제기</li> <li>11일: 해경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li> <li>22일: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li> <li>27일: 정부는 무인기를 활용해 독도 주변 지형과 해역에 대해 정밀 측량 예정</li> <li>2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불법 어구 철거 지원을 완료했다고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일: 북한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비난</li> <li>15일: 러시아가 동해에서 잠수함을 동원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훈련 실시</li> <li>22일: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들어 첫 외교청서 발간</li> <li>25일: 러시아가 쿠릴열도 전면 개발 계획 표명</li> <li>27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대해 항의</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을 해경이 나포</li> <li>12일: 해군·해경은 훈련장 및 평택군항 일대에서 합동 훈련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일본 방위성이 동해나 동중국해에 극초음속 무기 등을 탐지·추적하기 위해 다수의 무인기 배치 검토</li> <li>5일: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li> <li>14일: 미·일·EU가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순시선 파견</li> <li>16일: 중국 해군이 한반도 서해에서 해상 훈련 실시</li> <li>1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 포착</li> <li>19일: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이 포착되자 미국 정찰기 동해 출격</li> </ul>

2022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에 한국 관련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li> <li>• 29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30일 독도 인근에서 해양 조사 실시</li> <li>• 31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사이버독도체험관'을 확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li> <li>• 24일: 일본 총리가 중국의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시추구조물 설치에 대해 유감 표명</li> <li>• 24일: 중국이 일본과 분쟁 중인 해역인 동중국해의 중국 측 해역에서 새로운 천연가스전 시추구조물 설치</li> <li>• 26일: 러시아에서 쿠릴열도의 명칭을 러시아식 이름으로 바꾸자고 주장</li> <li>• 26일: 중국 전투기가 러시아와 합동 공중전력 순찰 훈련에 참가한 모습 포착</li> <li>• 30일 한국 해양조사에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반발</li> <li>• 30일: 미군이 공격용 드론을 일본 자위대 기지에 배치</li> </u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규정 및 규칙



- 편집위원회 규칙
- 발행 및 심사규정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 편집위원회 규칙 ]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4. 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발행 및 심사규정 )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10. 25.  
개정 2020. 07. 22.

### 제1장 발행규정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2장 심사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계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 투고 요령 )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 제2조(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 예) 林昱君(린위권),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臺北:中華經濟研究所.

-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 2) 저서

- (1) 저자 1인인 경우

-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제정 2019.11.11. 규칙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

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 4. 본조사 실시 여부
-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

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인)

---

편집위원장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병근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영 \_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한민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윤유숙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철호 \_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신정원 \_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영토해양연구 Vol. 23

---

초판 1쇄 인쇄 2022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6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